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성 평 등 가 족 부 소 관

2026. 9.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목 차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 1

Ⅱ. 심사경과 ····· 2

Ⅲ. 결산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 3

Ⅳ. 대체토론 요지 ····· 4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4

Ⅵ. 심사결과 ····· 7

Ⅶ. 소수의견의 요지 ····· 7

Ⅷ. 결산 시정요구 사항 ····· 9

※ 부대의견 ····· 51

※ [붙임] 결산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 53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6. 9.

성평등가족위원회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1. 성평등가족부 소관

가. 일반회계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다. 양성평등기금

라. 청소년육성기금

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6년 5월 29일

2. 회부일자 : 2026년 7월 30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38회 국회(임시회)

○ 제2차 성평등가족위원회(2026.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31.)

상정・심사・의결

□ 제439회 국회(정기회)

○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2026. 9. 1.)

상정・소위원회 심사보고・원안의결

(41건의 시정요구 첨부)

Ⅲ. 결산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정대영)

※ [붙임] 문서 참조

Ⅳ. 대체토론 요지

○ 생 략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2025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건, 주의 9건, 제도개선 31건 등 총 41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

먼저, 시정 사항으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인신매매등피해자 보호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및 피해자지원시설의 설치·지정을 적극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입법 및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 마련을 요구하였음.

다음, 주의 사항으로, 여성사전시관 사업과 관련하여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부지 변경에 따라 이미 집행된 설계비 등의 재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체부지 확보와 총사업비 조정 등에 관하여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건립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불용과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음.

또한,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협의와 공사·감리 계약을 조기에 이행하고, 2028년 준공 및 2029년 개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분기별 공정관리와 월별 집행·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불용의 반복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사비를 인건비로 전용하는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는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경우 사업 내용과 예산 비목을 면밀히 살피는 등 보조사업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해당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계상할 것을 요구하였음.

다음, 제도개선 사항 중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사업출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또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잔액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정확한 수요예측과 집행관리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며, 미반납 지자체에 대한 반납 촉구 등 보조금 정산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마지막 “부대의견”으로는

성평등가족부는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 1건을 채택하였음.

Ⅵ. 심사결과

○ 2025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건, 주의 9건, 제도개선 31건 등 총 41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기로 함.

Ⅶ.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Ⅷ. 결산 시정요구 사항

1.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41건(결산 합계)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성평등가족부	-	-	1	9	31	-	41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성평등가족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업의 반복적 불용·집행부진 방지를 위한 실집행 중심의 사업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출 및 기금지출에서 총 125억 6,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실집행률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사업 현장에서 집행되지 못한 예산 규모는 더 크게 나타남. ○ 건립사업, 보조사업 및 출연사업 등 사업 유형을 불문하고 집행부진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불용 사유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사업계획 지연’ 등 포괄적인 표현으로 제시되어 사업별 구체적인 집행부진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은 실집행률이 26.6%에 그쳤고,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사업은 성평등가족부의 집행률이 97.7%인 반면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은 84.0%에 그치는 등 부처 집행률과 사업 현장의 실집행률 사이에 차이가 나타남. ○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업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청소년 보호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집행부진이 반복될 경우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사업유형별 집행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까지 함께 관리하며, 집행부진이 반복되는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반영하여 예산 규모나 추진방식을 재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	**과징금 체납액 수납률 제고 및 징수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주의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2025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37억 1,200만원이나 수납액은 1억 7,700만원에 그쳐 수납률이 4.8%로 저조함. ○ 이 중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및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5억 7,200만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나 수납액은 없어 수납률이 0%이며, 미수납 사유는 체납자의 재력 부족과 파산 등임. ○ 과징금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므로 그 납부 회피를 방치할 경우 법령의 규범력이나 계약의 이행강제력이 약화될 수 있음.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추심 등 징수절차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조치의 활용이 충분하지 않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체납 과징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체계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재산현황 파악과 분할납부 관리 등 실효성 있는 징수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	**기타경상이전 수입 수납률 제고 및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주의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의 반납금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65.3%에 그치고 미수납액은 774억 6,900만원 발생하였음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세입 관리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보조사업 반환금의 발생 원인과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징수 노력을 강화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원구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2025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 결산 내역에서 양성평등기금은 총계 8,410억 2,200만원 중 92.4%에 해당하는 7,769억 2,600만원을, 청소년육성기금은 총계 1,713억 7,200만원 중 88.3%에 해당하는 1,512억 5,900만원을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바, 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복권기금에 의존하고 있음. 전입금 미사용분은 복권기금으로 반납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 기금 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은 복권기금 사업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부담금 등 자체수입 기반도 부족하여,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서 일반회계 등 일반재원의 활용과 정부출연금 등 자체재원 확충을 포함한 중·장기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하여 복권기금 의존에 따른 재원구조의 한계를 완화하고, 각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 기반을 확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5	**성인지 예·결산제도 성과관리 및 관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1231-32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성인지 결산과 관련하여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74.7%)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평균(80.8%)에 미치지 못하고, 2년 이상 연속 미달성지표가 다수 확인되고 있음 ○ 성인지 정책 총괄 부처와 예산·결산 주무 부처의 분리로 선정기준의 일관성과 환류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협의회를 통한 선정 구조에서 선정기준 투명화와 환류 제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투명화와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등 제도운영의 각 단계에서 성평등이라는 정책목적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6	**양성평등 정책의 통합 · 조정과 부처 협업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1231-320)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성평등정책 조정·협의와 관련하여 2025년도에 양성평등분과위원회는 전혀 개최되지 않았고, 양성평등위원회 및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회의가 서면으로만 운영되었는바,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성평등정책의 통합·조정과 부처 협업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성평등정책의 조정 및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회의로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통합·조정과 부처 협업 강화를 도모하고, 대면회의로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7	**특정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의 이행관리 강화 및 여성친화도시 추진 지자체에 대한 유인 제공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1231-32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특정성별영향평가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건수(2022년 19건, 2023년 14건, 2024년 10건)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지정 신청은 매년 충분히 접수되고 있으나 지정 요건을 충족할 만한 실적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제한적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에 상응하는 유인이 제공되지 아니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발표되는 지역성평등지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취약 영역에 대해 과제 발굴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성인지 관점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성과에 상응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8	**국립여성사 박물관 건립 사업의 지연 방지 및 예산편성 내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사전시관(1232-332)	주의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2025년도 집행률이 5.3%로 저조하고, 2022년부터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부지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성평등가족부는 국립여성사박물관 대체 부지 확보 및 사업 절차 진행 등에 있어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불용과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부지 변경에 따라 이미 집행된 설계비 등의 재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며, 대체부지 확보와 총사업비 조정 등에 관하여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편성 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불용과 이월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9	**일반인 대상의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확산**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1233-34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체 교육인원은 2023년 208,605명에서 2025년 349,804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반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2023년 27.8%에서 2025년 22.8%로 낮아졌고, 2025년 일반인 교육인원(79,792명)의 약 88%가 이러닝(사이버 폭력예방교육)에 집중되어 대면 교육과정의 일반인 참여는 저조한바, 성평등가족부는 공무원에 편중된 성인지 교육 대상을 민간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조사 범위를 일반 국민까지 포함하도록 설계하여 수요 기반의 재정 투입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증가하는 일반인의 성인지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0	**새일여성인턴의 장기 고용유지 성과관리 강화, 성과지표 개선 및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참여 센터 확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1234-31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새일센터 지정·운영 중 센터운영지원사업(내내역사업)과 관련하여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새일센터가 전체 159개소 중 절반 수준인 8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참여센터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여성이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직업교육훈련사업(내내역사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직종 과정 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유관취업률은 50%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새일여성인턴사업(내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인턴 종료 후 취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6개월 및 12개월 고용유지율과는 차이가 큼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대체로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큰 국가승인통계 또는 응답자의 주관적 만족도에 해당하여 개별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를 분리하여 측정하기 어려운바, 각 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의 유관 취업률을 제고하고, 새일여성인턴에 대한 고용유지장려금이 12개월 이상 장기 고용유지로 이어지는지 그 효과를 점검하는 등 취업 연계와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에 새일센터의 참여를 확대하여 더 많은 경력단절여성이 경력단절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 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1	**실질적인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1235-329)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대체로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큰 국가승인통계 또는 응답자의 주관적 만족도에 해당하여 개별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를 분리하여 측정하기 어려운바, 각 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2	**성과지표 개선 및 반복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여성채용 유도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1235-330)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나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공표된 240개사 중 62개사가 2회 이상, 5개사가 5회 이상 반복 공표되고, 관련 제재수단인 가족친화인증 배제도 13개사(5.4%)에만 적용되었으며 공공부문에 편중되는 등 반복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함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대체로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큰 국가승인통계 또는 응답자의 주관적 만족도에 해당하여 개별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를 분리하여 측정하기 어려운바, 각 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기준 미달 사업장에 대한 기존 제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반복 공표 사업주의 실질적 여성 채용을 유도할 방안을 강구하고, 동 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안)</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3</td><td rowspan="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2131-34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성평등가족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피해자 기념사업의 성과지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작품공모전 출품작 수 성과지표는 사업방식을 변경하면서 출품일정이 단축되어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저하된바, 성과목표 달성도가 60%대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피해자 지원사업의 성과지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만족도 조사는 피해자의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로 조사대상 표본 수가 5명에 불과하여 조사대상자의 개별적인 의견이 과다 대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바, 성과목표 달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성과지표
<table>
<tr><th>성과지표</th><th>구분</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h>2026</th><th>자료수집방법</th></tr>
<tr><td rowspan="3">청소년작품공모전
출품작 수
(단위: 건)</td><td>목표</td><td>1,000</td><td>1,000</td><td>1,000</td><td>887</td><td>764</td><td rowspan="3">사업결과보고서</td></tr>
<tr><td>실적</td><td>1,051</td><td>1,132</td><td>642</td><td>616</td><td>-</td></tr>
<tr><td>달성도</td><td>105.1</td><td>113.2</td><td>64.2</td><td>69.4</td><td>-</td></tr>
<tr><td rowspan="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점)</td><td>목표</td><td>74</td><td>74</td><td>74</td><td>78</td><td>81</td><td rowspan="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td></tr>
<tr><td>실적</td><td>74</td><td>84</td><td>82</td><td>76</td><td>-</td></tr>
<tr><td>달성도</td><td>100</td><td>113.5</td><td>110.8</td><td>92.7</td><td>-</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청소년작품공모전의 성과지표가 기림의날 기념식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청소년들의 참여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성과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체지표 개발을 검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업출연금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2136-318)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업출연금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12조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의 법적 근거인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6항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기관운영출연금 근거만 있고 사업출연금에 관한 근거가 미흡함 ※ 참고 규정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2조(출연금)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사업출연금을 지급하는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2136-318)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사업출연금 내역사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지원 내내역사업의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수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과 성평등가족부가 직접 수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2131-341)이 유사함에도 사업이 각각 편성·집행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사업의 통합 등 사업 추진체계를 개편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6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추진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2136-318)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사업출연금 내역사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 내내역사업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출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하위 법령에만 있어 그 근거가 다소 미흡함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7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센터의 예산 및 인력 지원 대책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2136-318)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사업출연금 내역사업의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내내역사업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업무의 업무공간 여력, 정규직 인력 확보 및 종사자 심리치유 지원 등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공간 확충 및 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종사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8	**법률상 설치의무가 있는 인신매매등 방지 관련 기관 미설치 문제의 해결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2136-319)	시정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비는 편성되어 있으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가 없고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결과, 법률 상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를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대행하고 있음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이 외의 자가 지정을 받는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은 현재까지 설치·지정된 곳이 없고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등피해자 보호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및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설치·지정을 적극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입법 및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9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의 예산 비목 일원화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2159-432)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의 2025년 법률구조기관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5개 기관 중 4개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민간경상보조(320-01)를 편성·집행하고, 2개 기관(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은 민간경상보조(320-01)와 민간위탁(320-02)이 동시에 편성·집행되었는바, 이는 동일한 사업의 예산 비목을 이원화하여 기관별 사업 지원금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의 정산 및 사후관리도 어려우므로 부적절한 예산 편성·집행임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의 예산 비목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무료 법률지원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예산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0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처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성폭력 피해자 지원(1136-303)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인력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부산 해바라기센터 심리지원팀 근무자 공백 상태가 4개월간 유지되는 등 인력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회에서도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적해 왔으나, 해결이 요원한 상황임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1	**청소년정책 연구용역의 계약 경쟁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2231-31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정책 연구개발 및 실태조사 사업은 2025년도 청소년정책 연구용역 8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7건이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는 등 경쟁계약의 활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금액에 관계없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시대 청소년정책 환경진단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경우 계약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유로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계약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쟁계약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실집행 부진 및 바우처 이용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2231-312)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2025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은 전액 집행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집행률은 2024년의 77.8%보다 하락한 76.4%에 그쳐 집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별 집행실적의 편차도 나타나고 있음 ○ 바우처 신청률(91.0%)에 비해 실제 이용률(83.1%)이 낮아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실제 이용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별 실집행률도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 간 약 11.1%p의 차이가 발생하여 동일한 국고보조사업임에도 지역별 사업운영과 집행성과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남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지역별 집행부진 원인과 신청률 대비 실제 이용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월별 집행·이용 추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실제 이용률을 반영해 바우처 지급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며, 성과지표를 신청률에서 이용률로 전환하는 한편, 집행률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하고 월 1회 바우처 생성액·사용액·잔액 안내, 미사용 대상자 재안내 및 카드사·유통점과의 협의를 통해 구매 접근성과 실제 이용률을 높여 지역별 편차를 완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3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서비스의 역할분담 및 연계·성과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2233-332)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서비스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과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의 피해 청소년 집중치유프로그램, 청소년육성기금의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등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별 목적과 대상은 다르지만 상담·치유·기숙형 프로그램 등 일부 기능이 유사함 ○ 2025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13,243명인 반면, 지역 치유캠프는 신청이 정원을 초과했음에도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고 기관별 모집·선정·참여 실적에도 차이가 있음. 특히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은 입소를 신청하고 선정된 인원(571명) 대비 실제 입소 인원(509명) 비율은 89.1%(2025년)에 불과하여 선정자의 10% 가량이 입소하지 않았음 ○ 기관 간 연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수료자 501명 중 47명이 사후연계를 거부하였고 이후 재개입 여부와 후속 성과도 관리되지 않았으며, 실제 수료자의 사후관리 참여율도 집계되지 않아 연계성과와 치유 지속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기관별 기능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치유캠프의 입소 신청부터 실제 입소까지의 연계 과정을 점검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실제 수료자의 사후관리 참여 여부와 치유·회복성과를 지속적으로 집계·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4	**미디어 과의존 대응 전담상담사 확대 배치 및 지역별 인력배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2233-332)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 중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 지원 내내역사업을 통해 미디어 과의존 대응 전담상담사가 배치된 센터는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운데 37개소이고, 배치 인원은 총 54명에 불과하여 전체 센터의 84.6%에는 미디어 과의존 대응 전담상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임 ○ 전담상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센터에서는 기존 상담인력이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상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전담상담사 1인당 상담 건수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남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미디어 과의존 대응 전담상담사 배치를 확대하고 필요한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한편, 지역별 수요·운영 현황과 업무부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미배치 지역에 상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운영을 내실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5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집행관리 미흡**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주의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 집행률 2.3%, 2023년 18.5%, 2025년 39.8%로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지속됨. 2025년도 예산현액은 13억 2,700만원 중 집행액은 5억 2,800만원에 그쳤으며 7억 9,900만원이 불용됨. 특히 공사비와 감리비는 집행되지 못하였고, 예산액의 67.0%에 해당하는 25억 100만원이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의 토지보상금 추가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용됨 ○ 총사업비 조정 결과 총사업비는 230억 5,000만원에서 248억 8,500만원으로 18억 3,500만원 증가하였고, 사업기간도 2028년까지 1년 연장되었으며, 관계기관의 설계 적정성 검토와 총사업비 조정협의 등에 예상보다 긴 기간이 소요된 점이 집행부진의 주요 사유임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의 설계 완료 이후 입찰·착공까지 공정·집행관리와 단계별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6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집행 저조**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주의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은 2025년도 예산현액 63억 4,400만원 중 57억 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9.9%로 나타났으나, 집행액 중 52억 2,200만원이 건설보상비로 집행되어 실제 공사 진척은 제한적이었음 ○ 실제 착공과 직접 관련되는 공사비와 감리비는 전혀 집행되지 못하였고, 공사비와 감리비 일부 및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의 공사비·감리비가 토지보상금 추가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건설보상비로 조정됨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설계·발주·착공을 연계한 단계별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총사업비 증가 사유 및 향후 관리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7	**국립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사업의 반복적 집행부진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2236-361)	주의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및 건축협의 지연 등으로 2025년도 집행률이 26.6%에 그쳤으며, 총사업비는 404억 8,400만원에서 528억 8,5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사업기간은 2021~2025년에서 2021~2028년으로 연장됨. 또한 2025년도 집행액 대부분이 건설보상비에 집중되었으며, 실시설계비·공사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집행되지 못함 ○ 동 사업은 2021년 이후 당초 편성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전용·이월·불용이 반복되었으며, 2022~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사업기간과 사업비 관리, 이월·전용·불용 최소화 및 분기별 공정관리 강화가 반복적으로 요구되었으나, 2025년에도 총사업비가 재증가하고 사업기간이 추가로 연장됨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건축협의와 공사·감리 계약을 조기에 이행하고, 2028년 준공 및 2029년 개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분기별 공정관리와 월별 집행·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불용의 반복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사비를 인건비로 전용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8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2254-432)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사업은 2025년도 성평등가족부의 집행률은 97.7%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84.0%에 그쳤으며, 실집행률은 2022년 90.1%, 2023년 89.9%, 2024년 83.0%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집행부진은 신규 배치 지연, 복무 연기, 중도 소집해제 및 복무기간 중 종료 등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실제 근무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짧아진 데 따른 것인데, 예산은 사회복무요원이 연간 12개월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고 있어 실제 배치시점과 실근무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사회복무요원의 실제 근무기간과 배치시점의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기준을 재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며, 지역별 집행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9	**적정 청소년부모 가구수 반영 및 지원금 인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가족역량강화 지원(2332-32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2025년 예산액 대비 57.7%로 저조하고, 매년 지원대상인 청소년부모 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이(2020년 3,760가구 → 2024년 1,688가구)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양육 · 취업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울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양육 외 학업과 주거 유지를 위한 실제 비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적정가구수를 반영하는 동시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대상 확대, 지원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0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의 명확한 근거 법령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이돌봄 지원(2334-34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서비스 지원 내역사업의 돌봄수당 내내역사업은 예산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지원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법령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법령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1	**아이돌보미의 공급 확대 방안 강구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이돌봄 지원(2334-34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으로 연계 대기일이 39.4일에 달하므로,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동수, 서비스 제공 난이도, 불규칙한 이용시간, 원거리 이동 등으로 실제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경우 많음 ○ 2026년 새일센터의 직업훈련과정이 확대(761개→964개)되기는 했으나 단순히 여성에게 일반적인 직업훈련을 별도로 공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훈련 참여자 자녀의 돌봄 문제를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영아종일제는 계획대비 이용률이 저조한 반면, 영아돌봄수당은 실집행률이 614%에 달하며, 아이돌봄사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은 매년 초과 집행되고 있어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사업수요에 맞추어 아이돌봄사를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등을 통한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여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새일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간 통합적 연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영아돌봄수당 등 서비스 유형별 이용실적 및 수요가 반영된 적정 규모의 예산을 추계하는 한편, 아이돌봄사 법정부담금을 돌봄수당 내역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2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운영기반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이돌봄 지원(2334-34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종전법(2026.4.7. 이전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던 아이돌봄사의 채용, 근로계약 및 복무관리 등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내 아이돌봄사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조정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됨 ○ 광역지원센터의 권장 정원 대비 충원율이 77.5%에 그치고 있어 인건비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운영비는 초과 집행되고 있는바, 현행 정원 기준과 인력·예산 운영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간의 집행불균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광역지원센터와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력·예산·운영 구조와 사업비 교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지역별 수급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및 서비스 품질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3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이돌봄 지원(2334-34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규로 수행된 정보화전략마스터계획 수립 사업은 연도중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를 위한 관련 비용의 전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정보화전략마스터 계획 수립에 따라 ‘민간아이돌봄 기관 등록시스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관리시스템’이 각각 연내 개통 예정인바, 정보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여 서비스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 서비스제공기관 간 상호보완적 역할 및 상생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4	**사업출연금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교부와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2335-352)	주의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적사항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의 사업출연금의 실집행률이 55.6%로 저조한데도 전액 교부한 것은 사업의 집행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교부한 것으로 보임 ○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2025년 신규 사업으로 관련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이 정원 대비 충원율이 86%(2026.3. 기준)로 저조한바, 향후 회수·징수 업무를 고려하면 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양육비선지급 신청 및 지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선지급의 신청 및 지급절차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정비하며, 양육비선지급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증가할 지급·회수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5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 및 비의도적 부정수급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한부모가족자녀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환수율은 연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고, 최근 환수 실적이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도별 환수 실적에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부정수급 환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 징수 노력을 제고하는 등 환수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급여수급자의 신고의무 안내 및 변동사항 신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비의도적인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6	**실집행 관리, 지자체 반납 촉구 등 정산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한부모가족자녀 복지급여는 2025년에 5,382억 원(97.4%)이 실제로 집행되었으며, 지원단가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신청수요 부족으로 145억 9,000만원(2.6%)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바, 지역별 대상자 추계와 신청 안내 및 발굴 체계가 실제 수요와 충분히 연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사업완료 다음해까지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잔액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정확한 수요예측과 집행관리를 통해 지원 필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미반납 지자체에 대한 반납 촉구 등 보조금 정산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7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의 목적을 고려, 타 사업으로 이관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사업의 경우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 발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등의 사업 대상이 한부모가족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도록 편성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동 내역사업을 양성평등기금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2331-431)에 편성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8	**아동양육비 적정 편성과 지원금액 상향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사업은 예산을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실집행률은 78.4%로 저조하였는데, 세대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지원금액은 청소년한부모의 상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사업 예산 및 지원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9	**가족전용상담 전화 운영 사업비의 적정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2356-432)	주의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가족전용상담전화 사업의 수행기관이 연초 사업계획에 없던 사업을 수행한 점, 인건비 잔액을 그 재원으로 한 점, 성평등가족부의 이러한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보조사업자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출연기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출연금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경우 사업 내용과 예산 비목이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 보조사업이 편성·집행될 수 있게 관리·감독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계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0	**집행부진 내역사업의 원인 점검과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2356-432)	제도개선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전체 집행률은 96.6%로 높으나 내역사업인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과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의 실집행률이 각각 70.5%와 92.7%로 다소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실집행이 저조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내역사업들에 대한 원인을 점검하고 수요조사와 집행관리를 강화해 가족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1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양성평등기금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2356-432)	주의	성평등가족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의 보조금이 교부된 일부 지자체(울산 등 4개)의 불용액은 4차 교부액보다 큰데, 이는 집행현황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자치단체(충남 등 6개)의 경우 2024년 집행잔액을 2025년 내에 반납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기한내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집행과 잔액 반납 등 관리를 강화할 것		

※ 부대의견

○ 성평등가족부는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 보고한다.

[붙임]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양 성 평 등 기 금
청 소 년 육 성 기 금
범 죄 피 해 자 보 호 기 금

2026. 8.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대 영

목 차

Ⅰ. 결산 개요 ····· 3

1. 결산 총괄 ····· 3

가.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 3

나.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 7

2. 재원별 결산 내역 ····· 9

가. 일반회계 ····· 9

1) 세 입 ····· 9

2) 세 출 ····· 10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4

1) 세 입 ····· 14

2) 세 출 ····· 14

다. 양성평등기금 ····· 16

1) 수 입 ····· 16

2) 지 출 ····· 17

라. 청소년육성기금 ····· 19

1) 수 입 ····· 19

2) 지 출 ····· 20

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 22

3. 재무제표 분석 ····· 24

가. 재정상태표 ····· 24

나. 재정운영표 ····· 26

다. 순자산변동표 ····· 28

Ⅱ. 총괄 검토 ····· 31

1. 세입 ····· 31

가. 과징금 ····· 31

나. 기타경상이전수입 ····· 35

2. 청소년육성기금 재원 검토 ····· 41

가. 개요 ····· 41

나. 청소년육성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43

3. 성인지 결산 ····· 49

가. 개요 ····· 49

나.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 64

다.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결산 ····· 81

Ⅲ. 사업별 검토 ····· 95

1. 성평등정책관 ····· 95

가. 일반회계 ····· 95

1)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1231-320) ····· 95

2)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1231-321) ····· 104
3) 여성사전시관(1232-332) ····· 117
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1233-341) ····· 125

2. 고용평등정책관 ····· 133

가. 일반회계 ····· 133
1) 공통사항 ····· 133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1235-330) ····· 143

3. 안전인권정책관 ····· 155

가. 일반회계 ····· 155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2131-341) ····· 155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2136-318) ····· 160
3)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2136-319) ····· 173
나. 양성평등기금 ····· 187
1)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2159-432) ····· 187

4. 청소년정책관 ····· 195

가. 일반회계 ····· 195
1)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2231-311) ····· 195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2231-312) ····· 202
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2233-332) ····· 211
4)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 220
5)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2236-361) ····· 232
나. 청소년육성기금 ····· 239
1)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2254-432) ····· 239

5. 가족정책관 ····· 247

가. 일반회계 ····· 247

1) 가족역량강화 지원(2332-321) ····· 247

2) 아이돌봄 지원(2334-341) ····· 251

3)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2335-352) ····· 263

나. 양성평등기금 ····· 268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 ····· 268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 278

3)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2356-432) ····· 283

Ⅳ.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99

1. 요약(7월말기준 업데이트) ····· 299

2. 2024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302

[참고자료] ····· 349

1. 지방자치단체별 누적 미수납액(2024년까지 발생한 집행 잔액) 현황(2026 7월말 기준) ····· 349

2. 2024 ~ 2025회계연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대상 결산 현황 ····· 353

3. 2025년도 부처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결산현황 ····· 354

4. 2025회계연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 360

5. 2025년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10개 이상 부처의 달성률 ··· 361

6. 2025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평가 결과 ····· 362

7.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세부현황 ·· 363

8. 2022년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교부·정산·반납현황 ····· 367
9. 2023년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교부·정산·반납현황 ····· 368

문 의 처	
가족정책관	02)6788 - 5649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성인지결산	02)6788 - 5650
안전인권정책관	02)6788 - 5644
총괄 청소년정책관	02)6788 - 5645

Ⅰ 결산 개요

Ⅰ. 결산 개요

1. 결산 총괄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그리고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가.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 예산액은 333억 2,200만원이며, 1,467억 7,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30억 400만원이 수납되고 537억 4,600만원이 미수납되어 2,5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 계획액은 1조 123억 9,400만원이며, 1조 5,321억 8,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5,011억 8,600만원이 수납되고 307억 7,600만원이 미수납되어 2억 2,4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 2025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계획액)
		예산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세입	일반회계	32,942	137,700	85,354	52,322	25	34,69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80	9,075	7,650	1,424	-	4,025
	소 계	33,322	146,775	93,004	53,746	25	38,722
기금 수입	양성평등기금	841,022	1,266,938	1,246,986	19,945	8	876,104
	청소년육성기금	171,372	265,246	254,200	10,831	216	150,355
	소 계	1,012,394	1,532,184	1,501,186	30,776	224	1,026,459
합 계		**1,045,716**	**1,678,959**	**1,594,190**	**84,522**	**248**	**1,065,181**

주)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회수 등을 포함한 총계 기준
자료: 성평등가족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329억 4,200만원보다 1,047억 5,800만원이 증가한 1,377억으로, 이 중 853억 5,400만원이 수납되고 523억 2,200만원이 미수납되어 2,5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 되었음.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반납액 및 이자발생액이 대부분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1,257억 5,500만원,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 47억 9,300만원, 가족역량강화 9억 3,700만원 등이며, 그 중 아이돌봄지원사업 762억 2,000만원,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 33억 1,500만원, 가족역량강화 7억 7,500만원 등에서 수납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3억 8,000만원보다 86억 9,500만원이 증가한 90억 7,500만원으로, 이 중 76억 5,000만원이 수납되고 14억 2,4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양성평등기금의 징수결정액은 계획액 8,410억 2,200만원보다 4,259억 1,600만원이 증가한 1조 2,669억 3,800만원으로, 이 중 1조 2,469억 8,600만원이 수납되고 199억 4,500만원이 미수납되어 8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청소년육성기금의 징수결정액은 계획액 1,713억 7,200만원보다 938억 7,400만원이 증가한 2,652억 4,600만원으로, 이 중 2,542억원이 수납되고 108억 3,100만원이 미수납되어 2억 1,6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최근 5년간 세입(수납) 결산 내역을 보면, 미수납액[1]은 2021년 231억 1,200만원에서 2025년 845억 2,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2]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2021년 110억 1,300만원에서 2022년 39억 5,3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 107억 9,800만원, 2024년 233억 3,600만원, 2025년 537억 4,6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1) 미수납액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고보조 정산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임.
2) 성평등가족부는 이에 대하여 주요 소관 기금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반납예산 편성시기가 상이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하여 최종 반납하는 데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함.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미수납액은 2021년 120억 9,900만원에서 2022년 167억 6,100만원, 2023년 377억 2,200만원으로 증가한 후 2024년에는 306억 2,7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에는 307억 7,600만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

【 최근 5년간 세입(수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구 분	예산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미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률 (B/A)
2025	일 반 회 계	32,942	137,700	85,354	52,322	25	38.0%
	지 특 회 계	380	9,075	7,650	1,424	-	15.7%
	양성평등기금	841,022	943,506	923,554	19,945	8	2.1%
	청소년육성기금	171,372	193,512	182,466	10,831	216	5.6%
	소 계	**1,045,716**	**1,283,793**	**1,199,024**	**84,522**	**248**	**6.6%**
2024	일 반 회 계	36,815	64,810	42,751	22,059	-	34.0%
	지 특 회 계	1,341	7,460	6,183	1,277	-	17.1%
	양성평등기금	820,868	862,238	839,895	22,343	-	2.6%
	청소년육성기금	170,707	185,971	177,687	8,284	-	4.5%
	소 계	**1,029,731**	**1,120,479**	**1,066,516**	**53,963**	**-**	**4.8%**
2023	일 반 회 계	26,776	21,038	11,753	9,285	-	44.1%
	지 특 회 계	-	2,538	1,026	1,513	-	59.6%
	양성평등기금	737,209	713,557	690,221	23,336	-	3.3%
	청소년육성기금	177,365	194,988	180,602	14,386	-	7.4%
	소 계	**941,350**	**932,121**	**883,602**	**48,520**	**-**	**5.2%**
2022	일 반 회 계	13,492	35,810	32,883	2,927	-	8.2%
	지 특 회 계	-	2,668	1,642	1,026	-	38.5%
	양성평등기금	668,169	647,900	637,085	10,815	-	1.7%
	청소년육성기금	175,091	172,798	166,852	5,946	-	3.4%
	소 계	**856,752**	**859,176**	**838,462**	**20,714**	**-**	**2.4%**
2021	일 반 회 계	10,717	54,237	44,599	9,638	-	17.8%
	지 특 회 계	-	3,044	1,669	1,375	-	45.2%
	양성평등기금	519,053	509,129	501,305	7,824	-	1.5%
	청소년육성기금	168,977	160,222	155,947	4,275	-	2.7%
	소 계	**698,747**	**726,632**	**703,520**	**23,112**	**-**	**3.2%**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총액은 1조 9,063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7,089억 3,3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13억 8,900만원, 양성평등기금 9,235억 5,4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824억 6,600만원임.

【 2025년도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계획)
	예산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715,338	2,761	±4,459	718,676 (고용부이체 577포함)	708,933	7	9,736	889,986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91,663	-	-	91,663	91,389	21	253	141,617
양성평등 기금	841,022	680	-	841,702	923,554	-	1,081	876,104
청소년 육성기금	171,372	-	-	171,372	182,466	-	1,497	150,355
계	**1,819,395**	**3,441**	**±4,459**	**1,823,413 (고용부이체 577포함)**	**1,906,342**	**28**	**12,567**	**2,058,062**

주1)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 순운용액 기준
자료: 성평등가족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186억 7,600만원으로, 이 중 7,089억 3,300만원이 집행되고 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97억 3,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16억 6,300만원으로, 이 중 913억 8,900만원이 집행되고 2,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2억 5,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양성평등기금의 지출 계획현액은 8,417억 200만원이며, 9,235억 5,400만원이 집행되고 10억 8,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출 계획현액은 1,713억 7,200만원이며, 1,824억 6,600만원이 집행되고 14억 9,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3)]

3)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5년도에 지자체로 하여금 미수납된 반납금을 반환하도록 독려하여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수납액이 증가하여 여유자금운용액(초과수입+지출잔액)이 계획 대비 증가됨에 따라 집행액이 계획현액보다 증가하였음.

2. 재원별 결산 내역

가. 일반회계

1) 세 입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1,377억원 중 853억 5,400만원이 수납되고 523억 2,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건물대여료	20	16	16	-	-
기타재산수입	2,922	8,914	7,089	1,825	-
기타경상이전수입	30,000	127,975	78,122	49,852	-
벌금 및 과료	-	6	-	6	-
과징금	-	760	126	609	25
가산금	-	30	-	30	-
기타잡수익	-	0.1	0.1	-	-
계	**32,942**	**137,700**	**85,354**	**52,322**	**25**

자료: 성평등가족부

미수납액 523억 2,200만원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아이돌봄지원(495억 3,500만원) 및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14억 7,800만원) 사업 등에서 발생함.

2) 세 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7,153억 3,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7억 6,100만원과 고용노동부 이체액 5억 7,700만원을 더한 7,186억 7,600만원으로, 이 중 7,089억 3,300만원이 집행되고 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97억 3,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전용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715,338	2,761	577	±4,459	718,676	708,933	7	9,736	98.6%

자료: 성평등가족부

주요 전용 사유를 살펴보면, 성평등가족부 조직개편('25.10.1)에 따른 정원증가 및 보수지급 현원과다 등에 따라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세부사업에서 1억 4,300만원이 전용되었고, 아이돌봄지원 세부사업에서 시스템구축 소요가 발생하여 2억 8,100만원이 전용되는 등 총 13개 세부사업에서 44억 5,900만원이 전용 감액되어 8개 세부사업으로 전용 증액되었음.

【 2025년 일반회계 주요 전용 사유 】

(단위: 백만원)

전용 감		전용 증		사유
사업명 (사업코드)	전용액	사업명 (사업코드)	전용액	
정보화추진 (관리용역비) (1138-511-210-15)	△10	정보화추진 (국내여비) (1138-511-220-01)	10	국내여비 소요 발생
아이돌봄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234-341-330-01)	△281	아이돌봄지원 (일반연구비) (2234-341-260-01)	281	국가자격제 및 민간등록제 등 신규 제도 시행 전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예산 필요
청소년치료재활센터건립 (감리비) (2233-335-420-04)	△172	청소년치료재활센터건립 (건설보상비) (2233-335-410-00)	3,901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수행을 위한 건설보상비 예산 필요
청소년치료재활센터건립 (공사비) (2233-335-420-03)	△3,729			
정보화추진 (관리용역비) (1138-511-210-15)	△40	정보화추진 (자산취득비) (1138-511-430-01)	40	성평등가족부 조직개편('25.10.1)에 따라 고용평등정책관 관련 업무용품 등 구입에 따른 예산 필요
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일반수용비) (7111-251-210-01)	△15	전산경비 (자산취득비) (7111-261-430-01)	66	성평등가족부 조직개편('25.10.1)에 따라 고용평등정책관 관련 업무용품 등 구입에 따른 예산 필요
기획조정기본경비(비총액) (국외업무여비) (7111-252-220-02)	△36			
권익증진기본경비 (일반용역비) (7111-256-210-14)	△15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 (7111-211-110-03)	△20	기관운영기본경비 (인건비) (7101-100-110-01)	143	성평등가족부 조직개편('25.10.1)에 따른 정원증가 및 보수지급 현원과다 등의 사유로 예산 필요
기획조정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 (7111-212-110-03)	△11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 (7111-218-110-03)	△20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총액) (일용임금) (7111-218-110-04)	△7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상용임금) (7133-331-110-03)	△16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복리후생비) (7111-211-210-12)	△9			
기획조정기본경비(총액) (직책수행경비) (7111-212-250-02)	△40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총액) (특근매식비) (7111-218-210-05)	△20			

자료: 성평등가족부

주요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구축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사업비 7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 2025년 일반회계 주요 이월 사유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
청소년정책 추진기반구축	7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계	**7**	

자료: 성평등가족부

주요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지연으로 인한 17억 3,200만원,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연으로 인한 29억 7,400만원 등 총 97억 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2025년 일반회계 주요 불용 사유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불용액	사 유
여성사전시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1,732	국립여성사박물관 중간설계 완료('22.12.) 후 조달청·기재부와의 총사업비협의(~'23.11.) 진행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시행('23.12.~)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사업 일시정지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2,974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5.6~8), 총사업비 조정협의(기재부, '25.10~12) 절차이행 및 토지보상 지연으로 건축협의 순연에 따라 공사 착수 이후 집행 가능한 공사비 및 감리비 등 불용
기타 47개 세부사업	5,031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계	**9,736**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 입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90억 7,500만원 중 76억 5,000만원이 수납되고 14억 2,4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기타경상이전수입	380	8,196	6,908	-	1,288
기타재산이자수입	-	879	742	-	137
계	380	9,075	7,650	-	1,424

자료: 성평등가족부

2) 세 출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916억 6,300만원으로, 이 중 913억 8,900만원이 집행되고 2,100만원이 이월되어 2억 5,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지역자율계정	3,950	-	-	3,950	3,950	-	-	8,682
지역지원계정	87,713	-	-	87,713	87,439	21	253	132,677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	-	-	233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	-	-	25
계	91,663	-	-	91,663	91,389	21	253	141,617

자료: 성평등가족부

주요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사업의 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사업비 2,1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 2025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주요 이월 사유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21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계	21	

자료: 성평등가족부

주요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2억 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2025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주요 불용 사유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불용액	사유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253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계	253	

자료: 성평등가족부

다. 양성평등기금

1) 수 입

2025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의 수입 결산액은 9,235억 5,400만원으로 계획액 8,410억 2,200만원보다 825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자체수입(재산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여유자금 회수액이 계획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임.

수입액 9,235억 5,4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자체수입은 603억 5,600만원으로 이자수입 33억 5,800만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회수액 등 569억 9,700만원, 융자원금회수 100만원이고,
- 정부내부수입은 복권기금 전입금 7,765억 8,900만원이며,
- 여유자금회수는 866억 900만원으로 한국은행예치금(전년도 이월금) 회수 48억 2,9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817억 8,000만원임.

【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의 수입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A)	결산액(B)	증 감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18,776	60,356	41,580	221.5
	정부내부수입	776,926	776,589	△337	△0.04
	여유자금회수	45,320	86,609	41,289	91.1
계		841,022	923,554	82,532	9.8

주) 여유자금 순운용액 기준
자료: 성평등가족부

2) 지 출

2025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의 지출 계획액은 8,410억 2,200만원이며, 지출 결산액은 9,235억 5,400만원으로 계획액보다 825억 3,200만원(9.8%) 증가하였음. 총 지출액 9,235억 5,400만원 중 여유자금 운용 잔액(1,158억 3,000만원)을 제외한 순수지출총액은 8,077억 2,400만원임.[4)]

지출액 9,235억 5,4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사업비가 7,765억 2,500만원, 기금운영비는 100만원이고,
- 정부내부지출은 복권기금 반납금 311억 9,800만원이며,
- 여유자금운용잔액은 1,158억 3,000만원으로, 한국은행예치금(세계잉여금) 27억 1,9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131억 1,100만원임.

【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의 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획 액(A)	결산액(B)	증 감	
				(B-A)	%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776,926	776,525	△401	△0.05
	기금운영비	1	1	-	-
	정부내부지출	31,198	31,198	-	-
	여유자금운용잔액	32,897	115,830	82,933	252.1
계		**841,022**	**923,554**	**82,532**	**9.8**

주) 여유자금 순운용액 기준
자료: 성평등가족부

4) 지출 결산액이 계획액보다 증가한 것은 실제 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닌 여유자금운용잔액이 계획보다 증가한 데 따른 것임.

주요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4억 6,6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4억 8,300만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2025년 양성평등기금 주요 불용 사유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불용액	사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6	낙찰차액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66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52	집행잔액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8	집행잔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12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44	사회복무요원 미배치 등 집행잔액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483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계	**1,081**	

자료: 성평등가족부

라. 청소년육성기금

1) 수 입

2025회계연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 결산액은 계획액 1,713억 7,200만원보다 110억 9,400만원이 증가한 1,824억 6,600만원임. 계획 대비 운용액이 증가한 것은 주로 자체수입(재산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여유자금회수(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액이 계획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임.

수입액 1,824억 6,6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자체수입은 142억 6,900만원으로 이자수입 10억 6,600만원, 경륜·경정 수익금 87억 5,400만원, 기타 3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정산잔액 회수액 등 44억 4,600만원이고,
- 정부내부수입은 복권기금 전입금 1,505억 700만원,
- 여유자금 회수는 176억 9,000만원으로, 한국은행예치금(전년도 이월금) 회수 22억 2,0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154억 7,000만원임.

【 2025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A)	결산액(B)	증 감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10,974	14,269	3,295	30.0
	정부내부수입	151,259	150,507	△752	△0.5
	여유자금회수	9,139	17,690	8,551	93.6
계		171,372	182,466	11,094	6.5

주) 여유자금 순운용액 기준
자료: 성평등가족부

2) 지 출

2025회계연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출 결산액은 계획액 1,713억 7,200만원보다 110억 9,400만원이 증가한 1,824억 6,600만원이며, 총 지출액 1,824억 6,600만원 중 여유자금 운용잔액(190억 7,400만원)을 제외한 순수지출총액은 1,633억 9,200만원임.

지출액 1,824억 6,6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사업비가 1,540억 5,200만원, 기금운영비는 4,200만원이고,
- 정부내부지출은 92억 9,800만원으로 복권기금 반납액 86억 3,8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이자상환액 6억 6,000만원이며,
- 여유자금운용잔액은 190억 7,400만원으로 한국은행예치금(세계잉여금) 6억 5,700만원,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184억 1,700만원임.

【 2025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A)	결산액(B)	증 감	
				(B-A)	%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155,448	154,052	△1,396	△0.9
	기금운영비	43	42	△1	△2.3
	정부내부지출	9,398	9,298	△100	△1.1
	여유자금운용잔액	6,483	19,074	12,591	194.2
계		**171,372**	**182,466**	**11,094**	**6.5**

주) 여유자금 순운용액 기준
자료: 성평등가족부

주요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등 7개 세부 사업에서 집행잔액 등 14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2025년 청소년육성기금 주요 불용 사유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불용액	사유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9	집행잔액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74	용역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747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539	집행잔액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27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기금관리비	1	집행잔액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00	이자상환 잔액
계	**1,497**	

자료: 성평등가족부

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으며,[5] 사업으로는 ①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②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③범죄피해구조금, ④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⑤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⑥성폭력 피해자 지원, ⑦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을 두고 있음.

이 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에서 수행하고 있음.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2025년 계획현액은 394억 1,300만원으로, 이 중 393억 6,700만원이 집행되었고(집행률 99.9%), 4,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2025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성평등가족부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9,413	39,367	-	46	40,394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14,980	14,980	-	-	16,060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20,035	20,035	-	-	20,622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3,540	3,540	-	-	3,540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172	140	-	32	172
·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686	672	-	14	-

주)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됨
자료: 성평등가족부

3. 재무제표 분석

성평등가족부의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2025년 기말 시점의 자산상태, 한 해 동안 발생한 재정운영 손익 및 순자산 변동상황을 나타내는 것임.

가. 재정상태표

2025회계연도 말 현재 성평등가족부의 자산은 4,121억 9,600만원, 부채는 549억 6,500만원으로 순자산은 3,572억 3,100만원임.

자산은 금융자산 2,175억 8,400만원, 유무형자산 1,891억 4,600만원, 기타자산 54억 6,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25억 5,900만원(17.9%)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타자산이 27억 5,100만원 감소하였으나 현금성 자산 및 미수채권 증가 등에 따른 금융자산이 609억 7,100만원, 유무형자산이 43억 3,7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차입부채 549억 6,400만원, 기타부채 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7억 2,400만원(△6.3%)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차입부채가 미지급금 상환으로 37억 2,400만원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 재정상태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A-B	비 율
자 산(a)	**412,196**	**349,637**	**62,559**	**17.9**
Ⅰ. 금융자산	217,584	156,613	60,971	38.9
Ⅱ. 유·무형자산	189,146	184,809	4,337	2.3
Ⅲ. 기타자산	5,465	8,216	△2,751	△33.5
부 채(b)	**54,965**	**58,689**	**△3,724**	**△6.3**
Ⅰ. 차입부채	54,964	58,688	△3,724	△6.3
Ⅱ. 충당부채	-	-	-	-
Ⅲ. 기타부채	1	1	-	-
순 자 산(a-b)	**357,231**	**290,948**	**66,283**	**22.8**
Ⅰ. 기본순자산	452,604	452,125	479	0.1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66,471	△228,997	62,526	△27.3
Ⅲ. 순자산 조정	71,099	67,821	3,278	4.8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재정운영표

성평등가족부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6,490억 8,700만원 발생하였는데,[6]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조 7,202억 2,600만원, 관리운영비 345억 8,900만원, 비배분비용 18억 9,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848억 1,900만원,[7] 비배분수익 1,355억 2,000만원, 비교환수익 등 8,872억 8,600만원으로 구성됨.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15억 8,800만원(0.8%) 증가한 1조 5,363억 7,300만원이며, 이는 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793억 4,100만원이, 대손상각비 등 비배분비용이 3억원 감소한 동시에 차감항목인 비배분수익이 전년도 대비 677억 7,300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함.

총 6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가족정책 및 돌봄지원 프로그램(1조 1,843억 7,500만원),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2,248억 2,700만원) 등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71억 6,100만원 등이며,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12억 3,400만원과 차입금 이자비용 6억 6,300만원으로 구성됨.

---

6)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순손실)과 달리 국가회계에서는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용된 자원(비용)이 중요하므로 원가정보를 앞에 표시하기 때문에 재정운영결과가 (+)이면 비용이 수익보다 많은 것으로서 손실을 의미하고, (-)이면 이익을 의미함. 정부의 목적이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경우와는 그 의미가 다름.

7) 프로그램 총원가(1조 7,202억 2,600만원) - 프로그램 순원가(1조 6,354억 700만원)

【 재정운영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A-B	비 율
Ⅰ. 프로그램총원가	1,720,226	1,617,072	103,154	6.4
Ⅱ. 프로그램수익	84,819	61,006	23,814	39.0
Ⅲ. 프로그램순원가	1,635,407	1,556,066	79,341	5.1
Ⅳ. 관리운영비	34,589	34,268	321	0.9
Ⅴ. 비배분비용	1,898	2,198	△300	△13.6
Ⅵ. 비배분수익	135,520	67,747	67,773	100.0
Ⅶ. 재정운영순원가(Ⅲ+Ⅳ+Ⅴ-Ⅵ)	1,536,373	1,524,785	11,588	0.8
Ⅷ. 비교환수익 등	887,286	865,130	22,156	2.6
Ⅸ. 재정운영결과(Ⅶ-Ⅷ)	649,087	659,655	△10,568	△1.6

주) 재정운영결과는 원가(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것으로 재정운영결과가 (+)이면 손실, (-)이면 이익을 의미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 2025년 프로그램순원가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프로그램순원가	비율
1.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일반	28,591	1.7
2.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102,057	6.2
3. 여성·아동인권보호	95,563	5.8
4.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224,827	13.7
5. 가족정책 및 돌봄지원	1,184,375	72.4
6. 여성·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7	0.0
계	**1,635,407**	**100.0**

자료: 성평등가족부

다. 순자산변동표

성평등가족부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909억 4,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572억 3,100만원으로 기초 대비 662억 8,300만원(22.8%)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105억 6,800만원 감소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72억 5,100만원 감소한 반면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32억 9,7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임.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 조달 8,043억 8,5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 이전 930억 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32억 7,800만원과 정부조직 개편등에 따른 순자산 증가 7억 1,000만원으로 구성됨.

【 순자산변동표 요약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A-B	비 율
Ⅰ. 기초순자산	290,948	231,280	59,668	25.8
Ⅱ. 재정운영결과	649,087	659,655	△10,568	△1.6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711,381[8]	718,632	△7,251	△1.0
Ⅳ. 조정항목	3,988	691	3,297	477.1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357,231	290,948	66,283	22.8

자료: 성평등가족부

8) 재원의 조달 8,043억 8,500만원과 재원의 이전 930억 400만원의 합
: 804,385+(-93,004)=711,381백만원

Ⅱ 총괄 검토

Ⅱ. 총괄 검토

1. 세입

가. 과징금

○ 과징금은 징수결정액 37억 1,200만원 중 35억 200만원을 미수납하여 수납률이 4.8%로 저조한바, 과징금 등의 납부 회피를 국가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법령 등의 규범력 또는 계약의 이행강제력이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납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 개요

2025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이하 '회계 및 기금'이라 함)의 세입(수입) 수납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2,436억 2,500만원 중 1,588억 5,500만원이 수납되고, 845억 2,200만원이 미수납되어 2억 4,8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미수납액 845억 2,200만원은 기타재산이자수입,[9] 벌금 및 과료,[10] 기타경상이전수입,[11] 과징금 및 가산금[12]에서 발생하였음.

9) 국고보조금 등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발생 회수액
10)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11)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등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

【 2025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 및 기금 세입(수입) 미수납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 및 기금	세입(수입)과목	예산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합 계	계	58,928	243,625	158,855	84,522	248
	기타재산이자수입	4,504	15,731	12,255	3,475	-
	벌금 및 과료	-	6	-	6	-
	과징금	-	3,712	177	3,502	32
	가산금	-	69	0.1	69	-
	기타경상이전수입	54,424	224,108	146,423	77,469	216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2,922	8,914	7,089	1,825	-
	벌금 및 과료	-	6	-	6	-
	과징금	-	760	126	609	25
	가산금	-	30	-	30	-
	기타경상이전수입	30,000	127,975	78,122	49,852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	879	742	137	-
	기타경상이전수입	380	8,196	6,908	1,288	-
양성평등 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1,128	3,980	3,358	622	-
	과징금	-	380	51	321	8
	가산금	-	2	0.1	2	-
	기타경상이전수입	17,647	75,945	56,946	18,999	-
청소년 육성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454	1,958	1,066	892	-
	과징금	-	2,572	-	2,572	-
	가산금	-	37	-	37	-
	기타경상이전수입	6,397	11,992	4,446	7,330	216

주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 및 지역지원계정의 합계임

2) 수납 완료된 세입(수입) 과목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2) 과징금 수납률 제고 필요

과징금[13]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2025년에는 일반회계,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어 과징금으로 징수 결정되었음.

2025년 결산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37억 1,200만원 중 1억 7,700만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4.8%로 저조한바, 그 사유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재력 부족 등의 사유로 수납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함.

과징금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인바, 과징금 등의 납부 회피를 국가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법령 등의 규범력 또는 계약의 이행강제력이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납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13)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ㆍ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 2025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 및 기금 과징금 미수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과징금 부과 사유 (세부사업명, 금액, 납부의무자)	미수납 사유
계	3,712	177	3,502	32		
일반회계	760	126	609	25	· 사유: 보조금 부정수급 · 가족정책추진기반구축/10백만원/사단법인서울인구포럼등(수납 1백만원) · 성범죄자신상공개및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150백만원/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불납결손 25백만원(사유:파산)/수납 126백만원) ·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600백만원/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체납자 재력부족, 파산 등
양성평등기금	380	51	321	8	· 사유: 보조금 부정수급 ·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284백만원/박00 ·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48백만원/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등(불납결손 8백만원(사유:파산)/수납 39백만원) · 가정폭력피해자지원/48백만원/사회복지법인필그림하우스등(수납 11백만원)	체납자 재력부족, 파산 등
청소년육성기금	2,572	0	2,572	0	· 사유: 보조금 부정수급 ·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1,834백만원/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舊 청소년쉼터운영지원)/738백만원/제주대안교육센타	체납자 재력부족 등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기타경상이전수입

○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65.3%로 수납 실적이 저조한 바,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 개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과년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기관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등을 수납하는 수입과목으로,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 및 기금 사업에서 기타경상이전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2,241억 800만원 중 1,464억 2,300만원이 수납되고 774억 6,900만원이 미수납되어 2억 1,6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이를 회계·기금별로 살펴보면, 2025년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279억 7,500만원 중 781억 2,2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61.0%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199억 8,400만원에서 498억 5,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81억 9,600만원 중 69억 8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84.3%로 가장 높았음.

양성평등기금은 수납률이 2023년 53.1%에서 2024년 68.6%, 2025년 75.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189억 9,9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반면 청소년육성기금은 수납률이 전년 63.0%에서 37.1%로 하락하여 회계 및 기금 중 가장 낮았고, 73억 3,000만원의 미수납액과 2억 1,600만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였음.

【 최근 3년간 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 및 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회계 연도	예산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일반회계	2023년	24,511	19,049	10,695	56.1	8,354	-
	2024년	33,873	57,460	37,476	65.2	19,984	-
	2025년	**30,000**	**127,975**	**78,122**	**61.0**	**49,852**	**-**
지역균형 특별회계	2023년	-	2,526	1,026	40.6	1,500	-
	2024년	1,255	7,003	5,830	83.3	1,173	-
	2025년	**380**	**8,196**	**6,908**	**84.3**	**1,288**	**-**
양성평등 기금	2023년	16,670	48,882	25,939	53.1	22,943	-
	2024년	15,347	68,200	46,813	68.6	21,387	-
	2025년	**17,647**	**75,945**	**56,946**	**75.0**	**18,999**	**-**
청소년육성 기금	2023년	4,500	11,761	4,966	42.2	6,795	-
	2024년	5,818	13,936	8,786	63.0	5,150	-
	2025년	**6,397**	**11,992**	**4,446**	**37.1**	**7,330**	**216**
합 계	2023년	45,681	82,218	42,626	51.8	39,592	-
	2024년	56,293	146,599	98,906	67.5	47,693	-
	2025년	**54,424**	**224,108**	**146,423**	**65.3**	**77,469**	**216**

자료: 성평등가족부

2)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필요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보조사업 불용액 반환금으로, 미수납액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개 세부사업에서 498억 5,200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2개 세부사업에서 12억 8,800만원, 양성평등기금은 8개 세부사업에서 189억 9,9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은 7개 세부사업에서 73억 3,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미수납 기관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임.

【 2025년도 세부사업별 보조사업 반환금 미수납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미수납 기관
일반회계	가족역량강화	909	756	83.1	154	서울 등 9개 지자체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67	-	0.0	67	경북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11	7	68.0	3	광주
	아이돌봄지원	117,240	69,412	59.2	47,828	서울 등 9개 지자체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	4,606	3,183	69.1	1,422	경기 등 5개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394	94	23.7	301	서울 등 8개 지자체, 민간사업자
	청소년활동지원	101	54	52.9	48	서울 등 6개 지자체
	기타	89	59	66.6	30	민간사업자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가족센터 건립	3,699	3,262	88.2	437	충남 등 2개 지자체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4,497	3,646	81.1	851	강원 등 2개 지자체
양성평등기금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	50	35	69.3	15	충남 등 2개 지자체
	가정폭력스토킹방지및피해자지원	3,838	2,775	72.3	1,063	서울 등 9개 지자체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19,282	13,926	72.2	5,356	서울 등 10개 지자체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854	580	68.0	274	강원 등 6개 지자체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844	731	86.6	113	서울 등 6개 지자체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509	337	66.2	172	서울 등 7개 지자체

구분	세부사업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 수납액	미수납 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588	436	74.2	152	서울 등 6개 지자체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49,975	38,121	76.3	11,854	서울 등 5개 지자체
청소년 육성기금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	97	93	96.3	4	경기 등 3개 지자체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3,370	1,528	45.3	1,842	서울 등 11개 지자체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1,238	668	53.9	570	경기 등 8개 지자체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4,790	1,772	37.0	3,018	서울 등 12개 지자체, 민간사업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486	215	44.3	271	서울 등 8개 지자체
	청소년참여지원	90	58	64.7	32	충북 등 4개 지자체
	기타	1,814	4	0.2	1,593	민간사업자 등
합 계					**77,469**	

주) 수납 완료된 세부사업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14]은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26조제4항[15]은 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4년도까지 발생한 집행잔액 중 80억 7,500만원은 2026년 7월말까지도 반납하지 않고 있음.[16]

1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별 누적 미수납액(2024년까지 발생한 집행잔액) 현황(2026년 7월말 기준)

【 지방자치단체별 누적 미수납(2024년까지 발생한 집행잔액) 현황 】

(2026년 7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지자체	미수납액	지자체	미수납액	지자체	미수납액
계					8,075
서울	816	경기	1,116	전북	225
인천	41	강원	1	전남	2,220
광주	319	충북	1	경북	296
울산	70	충남	1,427	경남	1,529
세종	15				

주) 2024년도까지 발생한 집행잔액 미반납액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용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가족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상 매월 미수납현황 점검 및 반납계획서 징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국별 지역담당제 지정 등 수납률 제고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나, 시·도별 징수결정액 반납을 위한 예산 편성(추경) 시기가 상이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곳도 있어 수납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미수납건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17]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교부를 일시정지하거나 상계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 등을 통해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기금 재원 검토

○ 2025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액 중 복권기금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2.5%로, 복권수익금 실적이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복권기금 전입금 사용잔액은 전액 반납하여야 하므로 기금의 재원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025년말 기금 조성누계액은 333억 8,200만원으로, 2018년(631억 2,900만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확대를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복권수익금 의무적 배분 대상에 청소년육성기금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안정적 재원 조성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53조[18]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경륜·경정 수익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및 운영수입 등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19]에 따른 복권기금

18) **「청소년 기본법」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 ④ (생 략)
제5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3.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u>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u>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

전입금으로 구성됨.

2025회계연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수입액은 1,676억 8,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48억 6,300만원으로, 순 조성액은 28억 2,600만원임.

【 2025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표 】

(단위 : 백만원)

수 입 액 (A)						지 출 액 (B)					순 조성액 (A-B)	조성 누계
정 부 출연금	경륜사업 수 익	복권기금 전 입 금	차입금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 등	계	사업비	기타 경비	복권기금 반납금	공자기금 이자상환	계		
-	8,754	150,507	-	8,428	167,689	154,380	1,185	8,638	660	164,863	2,826	33,382

자료 : 성평등가족부

2025년도 경륜·경정 수익금은 2024년 71억 4,000만원보다 16억 1,400만원 증가한 87억 5,400만원이 수납되었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휴장으로 경륜·경정 수익금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액 삭감됨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2022년에는 86억원, 2023년에는 85억원, 2024년에는 30억원을 빌려 부족분을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에는 7,800만원을, 2023년에는 3억 7,400만원을, 2024년에는 6억 500만원, 2025년에는 6억 6,000만원의 이자를 지출하였음.

2025년도 복권기금전입금은 2024년도 1,483억 8,300만원보다 21억 2,400만원 증가한 1,505억 700만원이 수납되었음.

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 11.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 2. (생 략)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 5. (생 략)
④ ~ ⑥ (생 략)

나. 청소년육성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재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제3호에 따른 복권기금 전입금과 「경륜·경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20]에 따라 경륜·경정 사업 수익금을 일정 비율(국민체육진흥공단인 경우 100분의 19.5)로 배분한 출연금으로,

2025년 청소년육성기금 사업(6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주로 복권기금 전입금 재원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1개 사업(청수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경륜·경정 사업 수익금을 재원으로 수행되었음.

---

20)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가. ~ 나. (생 략)
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0
라. ~ 마. (생 략)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가. (생 략)
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9.5
다. ~ 바. (생 략)

② (생 략)

【 2025년 청소년육성기금 중 복권기금 전입금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집행차액 (A-B)	계획현액 (C)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4,932	4,773	96.8	159	5,097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0,387	29,382	96.7	1,005	지특회계 이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71,820	68,790	95.8	3,030	74,419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33,079	31,594	95.6	1,485	36,755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11,041	11,014	99.7	27	12,741
계	151,259	145,553	96.2	5,706	129,012

자료: 성평등가족부

【 2025년 청소년육성기금 중 경륜·경정 수익금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현액
	계획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집행차액 (A-B)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4,189	3,890	92.8	299	1,017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결산 내역을 보면, 1,824억 6,600만원 중 1,505억 700만원을 복권기금으로부터 전입받았는바, 복권기금 전입금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2.5%로 복권기금 전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

【 2025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정 계획액(A)	결산액 (B)	증 감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10,974	14,269	3,295	30.0
	- 기타재산이자수입	454	1,066	612	134.8
	- 기타경상이전수입	6,397	4,446	△1,951	△30.5
	- 기타잡수입	4,123	8,757	4,634	112.4
	정부내부수입	151,259	150,507	△752	△0.5
	- 복권기금 전입금	**151,259**	**150,507**	**△752**	**△0.5**
	여유자금회수	9,139	17,690	8,551	93.6
	- 한국은행통화유치금회수	-	2,220	2,220	순증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139	15,470	6,331	69.3
계		**171,372**	**182,466**	11,094	6.5

자료: 성평등가족부

최근 5년간 복권기금 전입금 현황을 보면, 2021년 1,278억 5,700만원에서 2025년 1,505억 700만원으로, 복권기금 전입금이 증가하는 추세임.[21)]

【 최근 5년간 청소년육성기금 복권기금 전입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수입액(A)	155,947	166,852	180,602	177,687	182,466
복권기금 전입금(B)	127,857	135,750	149,473	148,383	150,507
비 율(C=B/A*100)	82.0	81.4	82.8	83.5	82.5

자료: 성평등가족부

21) 2026년 복권기금 전입금은 1,290억 12백만원으로 2025년 대비 14.3% 감소하였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22]은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따라 특정 기금 등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육성기금은 의무배분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의무배분대상 수익금 및 복권기금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일부 특정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복권기금을 전입받고 있음.

복권수익금 실적이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복권기금 전입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9조의2[23]에 따라 전액 반납하여야 하므로 기금의 재원구조를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 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 11.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 2. (생 략)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 5. (생 략)
④ ~ ⑥ (생 략)

2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①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2025년말 청소년육성기금 조성누계액은 333억 8,200만원으로, 2024년(305억 5,600만원) 대비 28억 2,600만원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2018년 631억 2,900만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확대를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복권수익금 의무적 배분 대상에 청소년육성기금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안정적 재원 조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표 】

(단위: 백만원)

구분	조성액 (A)							사용액 (B)					순 조성액 (A-B)	조성 누계
	정부 출연금	민간 출연금	경륜사업 수익	복권기금 전입금	차입금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 등	계	사업비	기타 경비	복권기금 반납금	공자기금 이자상환	계		
1989	-	5,000	-	-	-	206	5,206	132	-	-	-	132	5,074	5,074
1990	-	5,000	-	-	-	1,363	6,363	847	3	-	-	850	5,513	10,587
1991	-	5,010	-	-	-	2,299	7,309	1,031	9	-	-	1,040	6,269	16,856
1992	-	8,150	-	-	-	3,415	11,565	1,507	12	-	-	1,519	10,046	26,902
1993	10,000	5,000	-	-	-	3,965	18,965	1,613	6	-	-	1,619	17,346	44,248
1994	-	11,000	-	-	-	5,285	16,285	9,034	13	-	-	9,047	7,238	51,486
1995	10,000	10,000	-	-	-	7,749	27,749	4,484	15	-	-	4,499	23,250	74,736
1996	10,000	10,000	-	-	-	8,739	28,739	5,415	8	-	-	5,423	23,316	98,052
1997	5,000	10,000	111	-	-	11,598	26,709	8,209	6	-	-	8,215	18,494	116,546
1998	-	4,400	5,888	-	-	15,453	25,741	6,245	6	-	-	6,251	19,490	136,036
1999	-	3,000	6,251	-	-	13,271	22,522	12,547	7	-	-	12,554	9,968	146,004
2000	-	-	11,836	-	-	11,201	23,037	9,905	7	-	-	9,912	13,125	159,129
2001	-	-	32,320	-	-	13,160	45,480	7,284	84	-	-	7,368	38,112	197,241
2002	-	-	46,920	-	-	10,094	57,014	9,443	21	-	-	9,464	47,550	244,791

구분	조 성 액 (A)							사 용 액 (B)					순 조성액 (A-B)	조성 누계
	정 부 출연금	민 간 출연금	경륜사업 수 익	복권기금 전 입 금	차입금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 등	계	사업비	기타 경비	복권기금 반납금	공자기금 이자상환	계		
2003	-	-	70,805	-	-	14,725	85,530	14,363	31	-	-	14,394	71,136	315,927
2004	-	-	40,786	-	-	14,686	55,472	40,670	72	-	-	40,742	14,730	330,657
2005	-	-	24,623	-	-	19,710	44,333	48,721	57	-	-	48,778	△4,445	326,212
2006	-	-	14,330	-	-	16,878	31,208	68,857	48	-	-	68,905	△37,697	288,515
2007	-	-	2,846	735	-	17,634	21,215	74,750	62	-	-	74,812	△53,597	234,918
2008	-	-	17,489	255	-	8,141	25,885	75,138	45	-	-	75,183	△49,298	185,620
2009	-	-	15,672	860	-	11,085	27,617	61,060	262	22	-	61,344	△33,727	151,893
2010	-	-	19,312	2,964	-	5,947	28,223	69,473	113	213	-	69,799	△41,576	110,317
2011	-	-	20,266	4,318	-	2,841	27,425	70,247	3,286	306	-	73,839	△46,414	63,903
2012	-	-	22,235	34,417	-	1,955	58,607	58,650	3,207	30	-	61,887	△3,280	60,623
2013	-	-	16,933	43,403	-	2,074	62,410	68,238	49	622	-	68,909	△6,499	54,124
2014	-	-	12,744	46,694	-	4,707	64,145	70,096	1,088	1,408	-	72,592	△8,447	45,677
2015	-	-	9,566	76,412	-	1,744	87,722	85,568	38	1,118	-	86,724	998	46,675
2016	-	-	16,441	85,230	-	3,236	104,907	95,499	41	1,179	-	96,719	8,188	54,863
2017	-	-	17,285	91,235	-	3,897	112,417	101,548	320	3,527	-	105,395	7,022	61,885
2018	-	-	13,352	97,450	-	1,663	112,465	108,389	390	2,442	-	111,221	1,244	63,129
2019	-	-	8,511	107,598	-	3,631	119,740	119,390	40	1,211	-	120,641	△901	62,228
2020	-	-	6,900	119,418	-	5,511	131,829	131,751	36	2,308	-	134,095	△2,266	59,962
2021	-	-	-	127,857	-	8,919	136,776	163,718	42	3,699	-	167,459	△30,683	29,279
2022	-	-	-	135,750	8,600	8,227	152,577	147,385	49	3,035	78	150,547	2,030	31,309
2023		50	-	149,473	8,500	9,059	167,082	160,372	2,778	11,045	374	174,569	△7,487	23,822
2024	-	-	7,140	148,383	3,000	9,183	167,706	155,071	784	4,512	605	160,972	6,734	30,556
2025	**-**	**-**	**8,754**	**150,507**	**-**	**8,428**	**167,689**	**154,380**	**1,185**	**8,638**	**660**	**164,863**	**2,826**	**33,382**
계	35,000	76,610	469,316	1,422,959	20,100	291,679	2,315,664	2,221,030	14,220	45,315	1,717	2,282,282	33,382	

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손실로 2021년 경륜경정기금의 수익금 전입액이 전액 삭감되었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3. 성인지 결산

○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성과지표 달성률(74.7%)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80.8%)보다 낮으며, 2년 이상 연속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도 내역사업 기준 13개(3년 이상 연속 3개, 2년 이상 연속 10개)에 달하고 있으므로,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성과지표 달성률을 제고하는 등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임에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달성률이 평균 달성률(80.8%)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성과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해당사업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환류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와 예산 편성·결산 절차를 관장하는 부처가 분리되어 성평등이라는 정책 목적이 각 단계를 충분히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바, 성격이 유사한 사업임에도 부처에 따라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선정 여부가 달리 결정되는 등 선정기준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점, 성과평가 결과가 대상사업의 계획·예산에 충실히 환류되지 못하는 점에서 그 한계가 드러남.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제도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가 협의회를 통한 선정 구조 하에서 선정기준의 투명화와 성과평가 환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성인지 결산서(기금 포함, 이하 같음)는 「국가재정법」 제57조 및 제73조의2[24]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기금)의

24) **「국가재정법」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혜를 받고 예산(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며,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들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음.

성인지 결산서는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이 있는 부처가 스스로 결산서를 작성하고 재정경제부가 이를 취합한 후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됨.[25)]

【 2025회계연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정부 내 결산 절차 】

절 차	소관 기관	일정
성인지결산서 작성지침 및 양식 논의	기획재정부· 성평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5.10.
성인지결산서 작성지침 송부	기획재정부	2025.11.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배포	기획재정부 · 성평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5.12.
성인지결산서 작성 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5.12.
해당 부처 성인지결산서 작성·취합	해당 부처 · 재정경제부	2026.1~2.
성인지결산 검사	감사원	2026. 4.
국회 제출	재정경제부	2026. 5. 31.

자료: 기획재정부·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예산센터), 「202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2025. 12.)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는 35개 중앙관서의 총 266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중 예산사업은 191개, 기금사업은 75개임.

---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5) 성인지 결산서는 2010회계연도(기금은 2011회계연도)부터 작성하여, 금번 2025회계연도까지 16번째(기금은 15번째) 제출되었음.

분석대상 사업 수 266개는 2025년 총 세부사업 수 8,382개[26]의 3.2%에 해당하며, 분석대상 사업의 총 지출규모는 2025년 정부 총지출 684.1조[27]의 3.9%인 26조 6,074억원(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9.0%)임.

【 2025회계연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현황 】

(단위: 억원, 개)

구 분		2023년 지출액	2024년 지출액 (A)	2025년			2024년 대비	
				예산현액 (B)	지출액 (C)	집행률 (C/B)	(C-A)	((C-A)/A)
합계	지출규모	315,375	237,453	268,720	266,074	99.0	28,621	12.1
	기관 수	38	40	-	35	-	△5	△12.5
	사업 수	302	283	-	266	-	△17	△6.0
예산	지출규모	88,876	94,582	104,056	102,777	98.8	8,195	8.7
	기관 수	38	40	-	35	-	△5	△12.5
	사업 수	214	206	-	191	-	△15	△7.3
기금	지출규모	226,500	142,871	164,664	163,297	99.2	20,426	14.3
	기관 수	14	14	-	11	-	△3	△21.4
	기금 수	28	27	-	24	-	△3	△11.1
	사업 수	88	77	-	75	-	△2	△2.6

자료: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한 이래로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195개로 시작하여 2018년 345개까지 늘어났으나, 2019년에는 261개 사업[28]으로 감소하였음.

26) 한국재정정보원, **「2025 주요 재정통계 Ⅱ」**, 2면.
27)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14면.
28) 2019년에는 사업종료, 사업통·폐합, 부적절한 대상정리를 통해 104개의 사업이 제외되고 20개의 사업이 추가되어 2018년 대상사업 수 대비 총 84개가 줄어들었음.

2019년 성인지 분석대상 사업 수가 감소한 것은 정부가 대상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이를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으로 구분[29]하여 관리하기 시작한 데 기인하며, 이후 성인지 분석 대상 사업 수는 2021년 304개, 2022년 341개로 증가하다가 2023년 302개, 2024년 283개로 감소하였음. 2025년의 분석대상 사업 수는 266개[30] 이며, 대상사업의 적절성 검토 강화 및 사업종료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지출액 및 총 지출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성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이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지출액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성인지 분석 대상 사업 수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지출액이 2018년 대비 8조 702억원(△23%)이 감소하였음.

---

29) **<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유형별 구분 기준 >**

구분	직접목적 사업	간접목적 사업
정의	○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내용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추진 사업 등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 2023년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은 별도 표기하여 제출 * 중앙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중앙정부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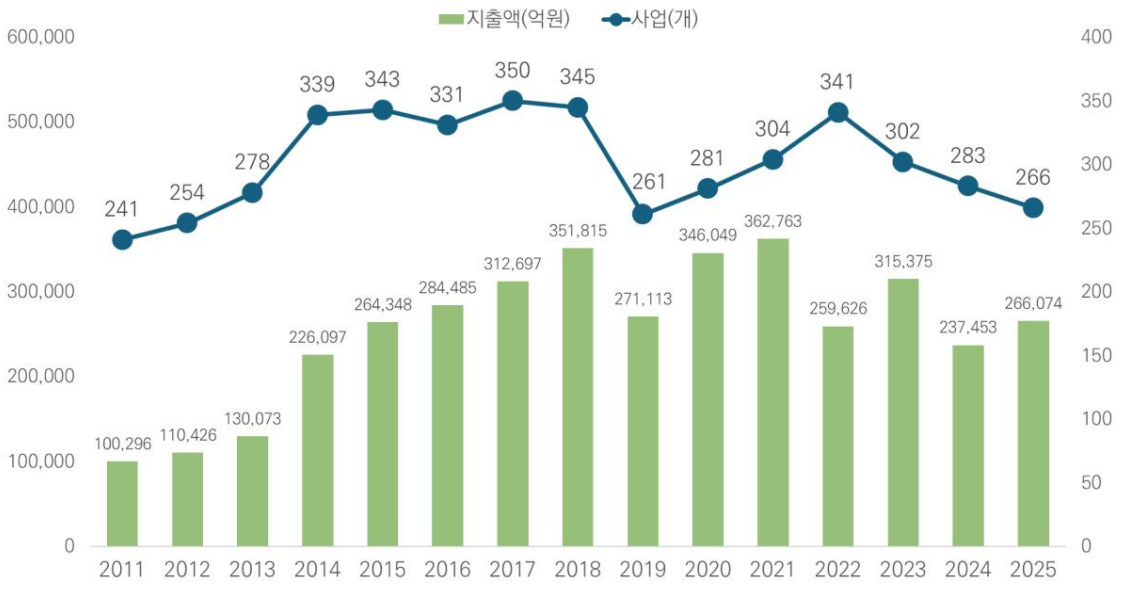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예산센터), 「2023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2022. 5.)

30) 2025. 10. 정부조직 개편 및 사업 이관으로 성인지예산서 상의 대상사업 수와 성인지결산서 상의 대상사업 수에 차이가 발생함
- 「2025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수 : 총 264개(예산 189개, 기금 75개)
- 「2025 성인지**결산**서」 대상사업 수 : 총 266개(예산 191개, 기금 75개)
* 산업통상부 증1(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 촉진), 고용노동부 감1(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성평등가족부 증2(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이후 2020년 및 2021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지출액은 34조 6,049억원('20년), 36조 2,763억원('21년)으로 다소 증가하다가, 2022년 25조 9,626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31조 5,375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24년에는 23조 7,453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였고, 2025년에는 26조 6,074억원으로 2024년 대비 2조 8,621억원(12.1%) 증가하였음.

【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추이(그래프) 】

(단위: 억원, 개)



주) 2010년도는 제외(기금사업 없음)
자료: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추이(표) 】

(단위: 개, 억원)

연도	정부 총지출 (조원)	예산(일반·특별회계)			기금			합계		
		기관	사업	지출액 (총지출 대비)	기관	사업	지출액 (총지출 대비)	기관	사업	지출액 (총지출 대비)
2011	304.4	32	197	83,896 (2.8%)	10	44	16,400 (0.5%)	34	241	100,296 (3.3%)
2012	323.3	33	208	93,185 (2.9%)	9	46	17,241 (0.5%)	34	254	110,426 (3.4%)
2013	337.7	34	227	110,399 (3.3%)	11	51	19,674 (0.6%)	35	278	130,073 (3.9%)
2014	347.9	41	257	147,873 (4.3%)	14	82	78,224 (2.2%)	42	339	226,097 (6.5%)
2015	372.0	41	253	173,871 (4.7%)	15	90	90,477 (2.4%)	42	343	264,348 (7.1%)
2016	384.9	42	244	180,694 (4.7%)	15	87	103,791 (2.7%)	43	331	284,485 (7.4%)
2017	406.6	42	263	201,835 (5%)	16	87	110,862 (2.7%)	42	350	312,697 (7.7%)
2018	434.1	41	260	231,111 (5.3%)	16	85	120,704 (2.8%)	41	345	351,815 (8.1%)
2019	485.1	32	192	140,091 (2.9%)	14	69	131,022 (2.7%)	33	261	271,113 (5.6%)
2020	549.9	36	207	180,033 (3.3%)	14	74	166,016 (3.0%)	36	281	346,049 (6.3%)
2021	601.0	38	225	178,942 (3.0%)	14	79	183,821 (3.1%)	38	304	362,763 (6.0%)
2022	682.4	39	244	101,051 (1.5%)	13	97	158,575 (2.3%)	39	341	259,626 (3.8%)
2023	610.7	38	214	88,876 (1.5%)	14	88	226,500 (3.7%)	38	302	315,375 (5.2%)
2024	638.0	40	206	94,582 (1.5%)	14	77	142,871 (2.2%)	40	283	237,453 (3.7%)
2025	684.1	35	191	102,777 (1.5%)	11	75	163,297 (2.4%)	35	266	266,074 (3.9%)

자료: 각 년도 「성인지 결산서」 및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2025년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은 총 35개 부처의 26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이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33개(전체 대상사업의 12.4%), 성평등가족부 33개(전체 대상사업의 12.4%), 보건복지부 25개(전체 대상사업의 9.4%), 문화체육관광부 25개(전체 대상사업의 9.4%) 순으로 많게 나타남.

이를 예산의 집행규모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 9조 4,916억원(전체 지출액의 35.7%), 고용노동부 8조 2,999억원(전체 지출액의 31.2%), 보건복지부 5조 3,138억원(전체 지출액의 20.0%), 성평등가족부 1조 5,051억원(전체 지출액의 5.7%) 순으로 나타남.

【 2025년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현황 】

(단위: 개, 억원, %)

부처	대상사업수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B/A)
합 계	**266**	**268,720**	**266,074**	**99.0**
고용노동부	33	84,696	82,999	98.0
성평등가족부	33	15,113	15,051	99.6
보건복지부	25	53,189	53,138	99.9
문화체육관광부	25	3,847	3,801	98.8
중소벤처기업부	23	95,278	94,916	9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3,031	3,031	100.0
농림축산식품부	11	3,138	3,075	98.0
해양수산부	11	240	229	95.4
교육부	10	2,597	2,514	96.8
법무부	9	1,406	1,383	98.3
외교부	6	1,258	1,230	97.8
국방부	6	870	822	94.4
통일부	6	468	452	96.5

부처	대상사업수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B/A)
경찰청	6	406	397	97.7
산업통상부	6	96	96	100.0
지식재산처	5	196	196	100.0
농촌진흥청	4	116	115	99.2
행정안전부	4	33	33	98.1
국토교통부	3	2,253	2,124	94.3
기후에너지환경부	3	147	140	95.4
산림청	2	74	71	95.7
인사혁신처	2	42	41	98.3
소방청	2	11	11	96.4
국가인권위원회	2	2	2	92.5
대법원	1	75	75	100.0
새만금개발청	1	32	32	100.0
해양경찰청	1	29	28	98.8
질병관리청	1	20	20	99.6
국가유산청	1	15	15	100.0
법제처	1	14	13	97.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3	13	95.2
기획재정부	1	6	6	97.5
국세청	1	4	4	100.0
국회	1	2	2	86.7
국민권익위원회	1	0	0	100.0

자료: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재구성

2025년도 성인지 결산에서 나타난 주요 부처별 특징을 살펴보면,[31] 고용노동부의 사업 수 및 지출액은 각 33개, 8조 2,999억원으로 2024년 대비 사업 수는 2개(△5.7%) 감소, 지출액은 2조 2,412억원(37.0%) 증가함. 사업 수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회계), 청년내일채움

31) [참고자료] 2. 2024 ~ 2025회계연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대상 결산 현황

공제(고용보험기금) 등이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것과, 지출액의 경우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및 모성보호육아지원(고용보험기금) 등이 증가한 데 기인함.

성평등가족부의 사업 수 및 지출액은 각 33개, 1조 5,051억원으로 2024년 대비 사업수는 3개(10.0%), 지출액은 893억원(6.3%) 증가함. 이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등이 대상사업에 추가되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및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이 증액된 데 기인함.

보건복지부의 경우 사업 수는 25개로 전년과 동일하며, 지출액은 5조 3,138억원으로 2024년 대비 6,806억원(14.7%)이 증가함. 지출액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인일자리지원 등의 사업 예산이 증액된 데 기인함.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지출액이 가장 큰 부처로서 사업 수는 23개로 전년과 동일하고, 지출액은 9조 4,916억원으로 2024년 대비 5,424억원(6.1%)이 증가함. 지출액의 증가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재도약지원자금(융자) 및 소상공인지원(융자) 등의 사업이 증액된 데 기인함.

한편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3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33]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성평등이 취약한 분야를 제시하며, 성평등정책 개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가성평등지수는 3개의 양성평등 목표를 중심으로 총 7개의 영역, 23개의 세부지표로 이루어져 있고, 목표·영역·세부지표는 다음과 같음.

---

32)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5조(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공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지수에 관한 전문성, 조사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장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국가성평등지수 목표 및 영역, 지표 】

목표	영역	지표	통계적 정의	자료원
동등한 권한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25세 이상 인구 대비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 성비(여성/남성)	국제의원연맹(IPU)
		장관 비율	장관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국제의원연맹(IPU)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공무원 인원 비율로 조정된 4급 이상 공무원 성비(여성/남성)	인사혁신처,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판사(법관), 검사,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율 성비(여성/남성)	인사혁신처, 「인사혁신통계연보」
		관리자 비율	15세 이상 취업자 중 관리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성비(여성/남성)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성비(여성/남성)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정규직 비율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비율 성비(여성/남성)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시장 직종분리	던컨의 성별 상이성 지수(Index of Dissimilarity)[34]로 측정된 값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비율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가족 돌봄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 비율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소득	임금 격차	시간당 임금에 대한 성비(여성/남성)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빈곤위험 (비빈곤율)	시장소득 중위 50% 이하 소득자 비율 성비(여성/남성)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국민연금 수급률	60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수급자 비율의 성비(여성/남성)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교육	평균 교육년수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평균 교육년수 성비(여성/남성)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분석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만 18~21세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에 재적학생 비율 성비(여성/남성)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목표	영역	지표	통계적 정의	자료원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19세 이상 인구 대상 조사 결과, 자신의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음'이라 응답한 비율 성비(여성/남성)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수명	기대여명에서 유병기간을 뺀 수명 성비(여성/남성)	국가데이터처, 「생명표」
		스트레스 비인지율	만 19세 이상 인구의 스트레스 비인지율 성비(여성/남성)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평등한 관계	돌봄	가사노동 시간	15세 이상 인구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을 취업자 비율로 조정한 가사노동 시간 역성비(남성/여성)	국가데이터처, 「생활시간조사」
		육아휴직 참여	당해 연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역성비(남성/여성)	국가데이터처, 「육아휴직통계」
		노인돌봄 분단	일상생활 수행이 불편한 노인들의 비공식 돌봄자의 역성비(남성/여성)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양성평등 의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여성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성차별 경험률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 경험 비율 성비(여성/남성)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12세 이상 인구의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비동의 비율	성평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 국가성평등보고서」(2025.12.)

34) '던컨지수'라고도 불리우며, 성별직종분리(특정 직업이나 직종에 한 성이 과잉 혹은 과소대표되는 현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지수임. 이는 각 직종의 성별 분포가 전체 근로자의 성별 분포와 동일하려면 여성 혹은 남성근로자의 몇 %가 직종 간에 이동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며, 지수 값이 0이 되면 직종 분리현상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100이 되면 완벽하게 성별로 직종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 정책 환경 진단 및 정책 추진 방향 연구」, 2023, 231면).

【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추이 】 [1)]

(단위: 점)

영역 및 지표		성비	2022	2023	2024	'23 vs '24
국가성평등지수			66.0	65.0	67.1	2.1
동등한 권한	의사결정		30.7	32.5	37.4	4.9
	국회의원 비율	F/M	22.3	23.0	24.4	1.4
	장관 비율	F/M	20.0	20.0	38.5	18.5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F/M	46.7	50.3	52.7	2.4
	관리자 비율	F/M	22.5	25.1	26.7	1.6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	F/M	41.8	44.0	44.9	0.9
자원의 동등한 접근	고용		73.1	73.5	73.5	0.0
	고용률	F/M	78.0	79.8	80.9	1.1
	정규직 비율	F/M	77.8	77.6	75.7	-1.9
	노동시장 직종분리	지수	53.9	53.4	53.4	0.0
	경력단절여성 비율	지수	82.8	83.0	84.1	1.1
	소득		78.3	79.4	80.1	0.7
	임금 격차	F/M	70.0	71.0	70.9	-0.1
	빈곤위험	F/M	94.9	94.8	94.6	-0.2
	국민연금 수급률	F/M	70.0	72.4	74.8	2.4
	교육		95.4	95.6	95.7	0.1
	평균 교육년수	F/M	90.9	91.1	91.4	0.3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F/M	100.0	100.0	100.0	0.0
	건강		94.2	91.5	91.5	0.0
	주관적 건강상태	F/M	88.3	81.3	81.3	0.0
	건강수명	F/M	100.0	100.0	100.0	0.0
	스트레스 비인지율	F/M	94.3	93.1	93.1	0.0
평등한 관계	돌봄		33.0	32.9	37.2	4.3
	가사노동시간	M/F	30.7	30.7	36.9	6.2
	육아휴직 참여	M/F	37.0	34.5	41.1	6.6
	노인돌봄 분담	M/F	31.4	33.4	33.4	0.0
	양성평등의식		80.0	73.2	76.3	3.1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	84.6	81.3	89.0	7.7
	성차별 경험률	F/M	95.4	94.7	96.1	1.4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	60.1	43.7	43.7	0.0

주) 각 연도 통계 기준.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비인지율은 미발표. 노인돌봄 분담과 가족 내 성역할 고정 관념은 통계 생산 주기가 2년 이상으로 2024년 기준 신규 통계가 생산되지 않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 국가성평등보고서」(2025.12.)

2025년도 성인지 결산 현황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로 재분류하여 살펴보면, ‘의사결정’ 및 ‘가족’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지출액이 각각 56.3%, 7.2% 증가하였고, 이는 각각 전체 성인지 결산 사업 지출액의 0.01%, 4.7%를 차지하고 있음.

【 성평등 분야별 2023년 ~ 2025년 성인지 결산 】

(단위: 억원)

국가성평등 지수 분야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2025년 결산	증감	
	지출액	지출액(A)	지출액(B)	B-A	(B-A)/A
전체	315,375 (100%)	237,453 (100%)	266,074 (100.0%)	28,621	12.1%
경제활동	139,051 (44.1%)	149,433 (62.9%)	175,774 (66.1%)	26,341	17.6%
의사결정	107 (0.03%)	16 (0.01%)	25 (0.01%)	9	56.3%
교육·직업 훈련	31,515 (10.0%)	28,385 (12.0%)	27,930 (10.5%)	△455	△1.6%
복지	127,200 (40.3%)	39,606 (16.7%)	43,247 (16.3%)	3,641	9.2%
보건	3,065 (1.0%)	3,118 (1.3%)	3,114 (1.2%)	△4	△0.1%
안전	2,597 (0.8%)	4,042 (1.7%)	2,658 (1.0%)	△1,384	△34.2%
가족	9,567 (3.0%)	11,721 (4.9%)	12,560 (4.7%)	839	7.2%
문화·정보	2,273 (0.7%)	1,131 (0.5%)	766 (0.3%)	△365	△32.3%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또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성평등 분야별 성인지 결산 사업 수를 살펴보면, ‘의사결정’ 및 ‘가족’ 분야의 경우 각 분야의 전년 대비 사업 수는 전년과 동일하며, ‘의사결정’·‘가족’·‘보건’ 분야의 경우 각각 전체 성인지 결산 사업 수의 3.9%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 2025년 성평등 분야별 성인지 결산 사업 수 】

(단위: 개)

국가성평등 지수 분야	2023년	2024년(A)	2025년(B)	증감	
				B-A	(B-A)/A
전체	351 (100%)	329 (100%)	304 (100.0%)	△25	(△7.6%)
경제활동	104 (29.6%)	104 (31.6%)	86 (28.3%)	△18	(△17.3%)
의사결정	11 (3.1%)	12 (3.6%)	12 (3.9%)	-	-
교육·직업 훈련	108 (30.8%)	96 (29.2%)	98 (32.2%)	2	(2.1%)
복지	48 (13.7%)	37 (11.2%)	37 (12.2%)	-	-
보건	16 (4.6%)	15 (4.6%)	12 (3.9%)	△3	(△20.0%)
안전	28 (8.0%)	33 (10.0%)	31 (10.2%)	△2	(△6.1%)
가족	14 (4.0%)	12 (3.6%)	12 (3.9%)	-	-
문화·정보	22 (6.3%)	20 (6.1%)	16 (5.3%)	△4	(△20.0%)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사업 수는 내역사업 기준임

나.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1)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정부는 성인지적 재정운용의 중점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0 회계연도 성인지 예·결산서부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35]의 논의를 통해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성인지 예·결산서에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음.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성인지 예산서는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취업취약계층인 여성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출사업’을 선정하였음.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성인지 예산서는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3～’27)」의 5대 정책과제 중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35)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기획처 훈령)」** 제정(2020.10.)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를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로 강화하였고, 성인지 대상사업의 사전 심의·평가 등을 위해‘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를 두고 있음.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2021년부터 운영)
·구성: 기획예산처, 성평등가족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민간위원 등
·기능: 지침 개정 협의, 대상사업 선정 및 적절성 검토, 성과평가,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등

– 전문평가위원회(2021년부터 운영)
·구성: 3개 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별로 평가위원 2인 및 실무위원 6인으로 구성
·기능: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 검토 및 성과평가 사전 심의

2025년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중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36]은 72개로, 예산현액 9조 943억원의 98.2%인 8조 9,284억원을 지출하였음.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37] 91개 성과지표 중 68개가 달성되고 23개가 미달성되어 성과지표 달성률은 74.7%로, 전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339개) 달성률 80.8%에 미치지 못하였음.

【 2025년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예산 집행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억원)

구 분	예산 집행 현황				성과관리		
	사업[1)]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지표	달성	달성률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72	90,943	89,284	98.2%	91	68	74.7%

주1) 세부사업 수 기준
자료: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중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내역사업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12개, 해양수산부 3개, 통일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이 각 1개로 총 22개임.

---

36) [참고자료] 3. 2025년도 부처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결산현황

37)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통해 목표 대비 실적으로 달성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성인지 결산의 성과지표 역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성과 관리 체계 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통됨. 다만 일반인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는 「1프로그램 1성과지표」를 원칙으로 하여 프로그램 단위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반면 성인지 결산의 성과지표는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설정되고,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성별 수혜나 성평등효과를 측정하는 복수의 지표가 부여되기도 함. 예산정책처,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상)』, 2010. 8., 8면; 기획예산처,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주요내용", 2026. 1., 7면 참조.

【 2025년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 】

부처	세부사업(내역사업)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비고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여성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비율(%)	51	50.4	2년 연속 미달성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된 청년 중 여성 비율(%)	48.7	45.5	-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	여성 해외취업자 비율(%)	51	48.9	-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취업촉진	성별 수혜율(%)	0.91	0.83	3년 연속 미달성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과정평가형자격제도운영)	여성수혜비율(%)	33.8	31.7	3년 연속 미달성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고보)	일반직종훈련 여성 참여비율(%)	69.2	65.6	2년 연속 미달성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여성 참여비율(%)	36.3	33.6	2년 연속 미달성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소규모사업장훈련)	여성 교육훈련생 양성률 <소규모사업장훈련> (%)	19.3	18.1	2년 연속 미달성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여성 교육훈련생 양성률 <신중년특화과정>(%)	20.6	20.2	-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전문기술과정)	여성 교육훈련생 양성률 <전문기술과정>(%)	9.5	8.8	-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하이테크과정)	여성 교육훈련생 양성률 <하이테크과정>(%)	28.5	20.8	2년 연속 미달성
고용노동부	장애인취업지원	여성장애인 취업률(%)	40.2	39.7	3년 연속 미달성
고용노동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여성장애인 참여율(%)	40.7	38.7	2년 연속 미달성
해양수산부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국적부원 양성 프로젝트)	여성 수혜자 비율(%)	5.9	5.7	-
해양수산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	여성어업인 채용 성사율(퍼센트)	30	25.7	-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지원)	여성어업인 가입자 수(명)	10,927	10,159	2년 연속 미달성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취업장려금)	여성 수혜율(%)	75.5	67.8	2년 연속 미달성

부처	세부사업(내역사업)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비고
산업통상부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교육생(수혜자)의 여성비율(%)	24.9	14.5	2년 연속 미달성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	자활근로 여성 참여자 비율(%)	50	47.1	2년 연속 미달성
기후에너지 환경부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여성수혜비율(%)	71.3	60	-
국토교통부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 (공간정보융복합핵심인재양성)	여성 장학생 비율(%)	40	31	-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여성인력 채용지원비율 (%)	33.2	28.1	2년 연속 미달성
산림청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지원조사단))	여성 참여자 비율(%)	32.8	31.1	-

자료: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내역사업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 운영(일반회계)(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취약계층취업촉진’,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과정평가형자격제도운영)’, ‘내일배움카드(고용보험기금)’,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소규모사업장훈련)’,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하이테크과정)’, ‘장애인취업지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보험료 지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취업장려금)’, 산업통상부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으로 총 13개 사업임.

이 중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년 연속하여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취업촉진’,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과정평가형자격제도운영)’, ‘장애인취업지원’으로 총 3개 사업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지표(91개) 달성률(74.7%)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80.8%) 보다 낮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성과지표(44개) 달성률(79.5%) 보다 낮으며, 3년 연속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3개에 달하고 있음.

- 2024년에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73.7%)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79.9%) 보다 낮게 나타났음.

이처럼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성과지표 달성률을 제고하는 등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부처의 성과지표 달성률 제고 노력 필요

2025년 성과지표 수는 339개[38]로 2024년도 368개 대비 29개(△7.9%) 감소하였음. 이는 2024년 대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수의 감소(17개, △6.0%)와 관련이 있음.

2025회계연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80.8%로 2024년 대비 0.9%p 증가하였음. 이를 예산과 기금으로 나누어 보면 2024년 대비 예산사업은 1.1%p, 기금사업은 0.4%p 성과지표 달성률이 증가하였음.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도입된 2011년부터의 달성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최하점에 도달한 달성률(67.3%)이 2018년(71.9%) 및 2019년(72.2%)에 걸쳐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69.4%)에 다시 하락하고, 2021년(77.6%) 및 2022년(81.5%)에 다시 개선되었으나, 2023년(79.4%)에 다소 감소하였고, 2024년(79.9%), 2025년(80.8%)에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8) [참고자료] 4. 2025회계연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 2022 ~ 2025회계연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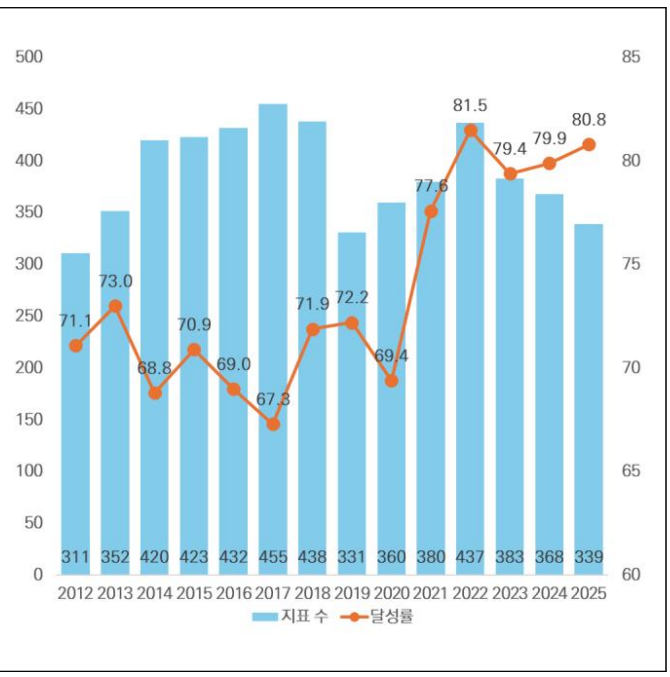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1]			
	성과지표(A)	성과지표 달성여부			성과지표(A)	성과지표 달성여부			성과지표(A)	성과지표 달성여부			성과지표(A)	성과지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합계	437	356	81	81.5	383	304	79	79.4	368	294	74	79.9	339	274	65	80.8
예산사업	303	244	59	80.5	260	209	51	80.4	256	204	52	79.7	240	194	46	80.8
기금사업	134	112	22	83.6	123	95	28	77.2	112	90	22	80.4	99	80	19	80.8

주1) 2025회계연도 세부사업 수 266개 기준으로 작성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수 및 성과지표 달성률 추이 】

(단위: 개, %)

구분	성과지표			
	지표 수	달성	미달성	달성률
2012	311	221	90	71.1
2013	352	257	95	73.0
2014	420	289	131	68.8
2015	423	300	123	70.9
2016	432	298	134	69.0
2017	455	306	149	67.3
2018	438	315	123	71.9
2019	331	239	92	72.2
2020	360	250	110	69.4
2021	380	295	85	77.6
2022	437	356	81	81.5
2023	383	304	79	79.4
2024	368	294	74	79.9
2025[1]	339	274	65	80.8



주1) 2025회계연도 세부사업 수 266개 기준으로 작성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2025년도 성인지 결산서에 작성된 35개 중앙관서별 성과지표 수는 최소 1개(국회 등)에서 최대 46개(성평등가족부)까지 다양한데,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을 합쳐 10개 이상의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는 부처는 13개 기관으로, 이 중 6개 기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이 전년 대비 성과지표 달성률 증가를 보이고 있음.

【 2025년 10개 이상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부처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 %p)

구 분[1)]	사업 수	성과지표	달성	미달성	달성률 (전년대비)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협의체
법무부	9	12	12	0	100.0 (8.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21	20	1	95.2 (11.2)	
경찰청	6	13	12	1	92.3 (△7.7)	○
농림축산식품부	11	11	10	1	90.9 (5.2)	○
기후에너지환경부	3	10	9	1	90.0 (90.0)	-
성평등가족부	33	46	41	5	87.0 (△3.6)	-
중소벤처기업부	23	28	23	5	82.1 (△0.7)	-
문화체육관광부	25	31	25	6	80.6 (△15.8)	○
교육부	10	11	8	3	72.7 (11.2)	○
보건복지부	25	30	21	9	70.0 (△0.4)	○
해양수산부	11	13	9	4	69.2 (△14.1)	-
고용노동부	33	45	31	14	68.9 (12.9)	○
국방부	6	11	7	4	63.6 (△9.7)	○

주1) 전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평균 달성률 80.8%를 기준으로 달성률의 값에 따라 배열
자료: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바탕으로 작성

2025년 정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평균 달성률 80.8%보다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80.6%)·교육부(72.7%)·보건복지부(70.0%)·해양수산부(69.2%)·고용노동부(68.9%) 및 국방부(63.6%)로 6개임.[39]

한편 2019년도부터 각 분야의 성폭력 방지 정책과 성차별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개 부처[40]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신설되었으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와 9개 부처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함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부처 내 컨트롤타워로서 성평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총괄을 주요 업무로 전담하는 조직임. 그런데 고용노동부·교육부·보건복지부·국방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임에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성과지표 평균 달성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성과지표 달성률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성과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또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2조[41]에 따라

39) [참고자료] 5. 2025년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10개 이상 부처의 달성률
40)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대검찰청, 경찰청.
41)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성평등가족부훈령 제4호 2025. 12. 1. 개정 및 시행) **제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는 성인지 예·결산 등 성주류화[42] 제도 운영 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므로 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성과관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환류를 강화하는 등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같이 대상사업과 성과지표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면서도 조직 내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없는 부처의 경우 성평등 관련 정책 수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성주류화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42) '성 주류화'란 정책에서 성평등관점을 반영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의미함.

3) 성평등가족부의 성인지 예·결산 제도에 대한 관여도 제고 및 성과 관리 필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는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사전 심의·평가 등을 위해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부처별·사업별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에는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2년부터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음.

2025년에 실시된 성과평가[43]의 대상은 2024~2026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3년 연속 작성하고, 2024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까지 모두 작성한 총 250개 내역사업이고, 전문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44] 후 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하여 평가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함.

- 2026년 전문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는 2026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임.

43) **< 2025년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개최 현황 >**

일자	회의	안건
2025.01.13.~01.15.	1차 협의회	ㅇ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 결과 심의
2025.03.18.~03.20.	2차 협의회	ㅇ 2026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안) ㅇ 2026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지침
2025.03.20.	1차 전문평가위원회	ㅇ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개요 및 추진계획 보고 ㅇ 적절성 검토 지침 보고 및 확정
2025.05.07.	2차 전문평가위원회	ㅇ 2026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결과 종합논의
2025.05.13.	3차 협의회	ㅇ 2026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결과 심의
2025.08.22.~08.26.	4차 협의회	ㅇ 2026년도 성인지 예산서 개요(안) 심의 ㅇ 2025년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 지침(안) 보고
2025.09.04.	3차 전문평가위원회	ㅇ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 개선 사항 보고 및 지침 확정
2025.12.04.	4차 전문평가위원회	ㅇ 2025년도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 결과 심의

44) 성과평가는 계획·성과·환류로 항목을 나누어 실시됨.

전체 250개 사업 중 ‘매우 우수’ 사업은 8개, ‘우수’ 사업은 58개였으며, ‘보통’ 사업은 170개, ‘미흡’ 사업은 14개, ‘매우 미흡’ 사업은 없음.[45]

【 2025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평가 등급별 현황 】

구 분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결과(개)
매우 우수(90점 이상)	8
우수(89~80점)	58
보통(79~60점)	170
미흡(59~40점)	14
매우 미흡(40점 미만)	0
전체(사업수)	250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와 2025년도 2년 연속 미흡 사업으로 교육부의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경찰청의 경무인사지원(성평등위원회 운영) 등 3개 사업이 있음.

45) [참고자료] 6. 2025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평가 결과

【 2024·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미흡' 사업내역 】

부처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성과 관리			
			연도	성과지표	목표	실적
교육부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	2023	평생교육바우처 여성수혜율(%)	71.5	71.6
			2024	평생교육바우처 등록 사용 기관 수 (누적)(%)	65	69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2023	직전 3년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여성 대상자 비율 대비 여성 수혜자 비율의 격차 (하향지표)(%)	9.3	27
			2024	직전 3년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여성 대상자 비율 대비 여성 수혜자 비율의 격차 (하향지표)(%)	18.15	26
경찰청	경무인사 지원	성평등 위원회 운영	2023	성평등위원회 운영(회)	4	4
			2024	성평등위원회 운영(회)	4	4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2년 연속 '미흡' 사업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의 의견서[46]를 살펴보면, 2023~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 3년 연속 '미흡' 사업으로는 경찰청의 경무인사지원(성평등위원회 운영)이 있음.

46)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성과평가 의견서

【 2023 ~ 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 3년 연속 '미흡' 사업내역 】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성과 관리			
			연도	성과지표	목표	실적
경찰청	경무인사지원	성평등위원회 운영	2022	성평등위원회 운영(회)	4	4
			2023	성평등위원회 운영(회)	4	4
			2024	성평등위원회 운영(회)	4	4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따라서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해당 사업에 충실히 반영되어 계획 및 성과 등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상술하면, 성인지 예·결산 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가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가 취합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의 재정 제도임. 아울러 성평등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성주류화 정책 총괄,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국가성평등지수 산출 등의 기능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소관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처럼 성인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와 예산 편성·결산 관련 절차를 관장하는 부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정책 목적이 이들 절차의 각 단계를 충분히 견인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구체적인 한계점은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선정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과 성과평가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환류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드러남.

우선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기준[47]은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가 매년 결정하고, 2025년도에는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자 3인(평가위원 1인, 실무위원 2인)이 모두 선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음. 성인지 예·결산이 전(全) 부처에 걸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협의회를 통한 합의제 방식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성평등가족부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48]

다만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선정에 있어 성격이 유사한 사업임에도 부처에 따라 선정 여부가 달리 결정된 사례가 확인됨.

일례로 동일한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에 해당하고 여성 인력양성이라는 성격이 유사한 사업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상사업은 중점사업에서 제외된 반면,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의 유사 사업은 중점사업으로 선정되었음. 특히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여성 인력

47) 2024년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선정기준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5대 정책 과제 중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해당함.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예산센터), 「2024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2023. 5., 10면.

48)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및 2026년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 지속 참여하였고, 특히 대상사업을 선정·논의하는 제3차 회의에서 사업 선정기준 및 성과환류 방안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고 밝힘.

양성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은 제외되고 해양수산부의 사업은 선정되는 등 동일 분야·동일 성격의 사업 간에도 선정 결과가 달리 나타났으나 그 사유에 대하여는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음.

【 2025년도 국가성평등지수 분야별 유사사업 비교 】

국가 성평등 지수 분야	부처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성평등 목표	성평등 추진중점 사업
교육 · 직업훈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 (과기정통부) (R&D)	중견연구 (최초신규) (R&D)	여성과학기술인의 기초연구 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 경력 유지·개발 지원 도모	×
교육 · 직업훈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역디지털 인재양성	ICT 이노베이션스 퀘어조성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형 여성 전문 인력 양성 및 진출 확대 및 3D프린팅 분야의 차등 없는 전문교육 제공	×
교육 · 직업훈련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지원	해운항만 물류전문 인력양성 지원	남성 편중도가 높은 해운물류 분야에서 여성들의 해운물류 분야에 대한 진출의욕을 고취시켜 우수한 여성전문인력을 양성	○
경제활동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부장분야 전문인력 양성(R&D)	나노소재분야 전문인력 양성(R&D)	나노기술분야 전문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나노전문성 제고	×
경제활동	중소 벤처기업부	산학협력 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지원과 청년여성층의 산업 분야로의 조기 사회진출 도모	○

자료: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이와 같이 유사한 성격의 사업임에도 부처에 따라 선정 여부가 달리 결정되는 등 기준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다음으로 협의회의 성과평가 결과가 해당 사업의 계획·예산에 실질적으로 환류되지 못하여 사업이 성인지 예·결산의 분석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그치고 성평등 목적의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49)]

한편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50)]된 이래 약 1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도의 목적이 예산 배분과 성과에 반영되는 실질적 성과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서 살펴본 구조적 한계가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실제로 성인지 예·결산의 편성·집행은 경제활동 영역에 편중되는 반면 의사결정 등 성평등 취약 영역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51)]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투명화와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등 제도 운영의 각 단계에서 성평등이라는 정책 목적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관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49)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동일 취지의 지적이 제기되었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검토보고서”, 2025. 9., 79-83면.
50) 성인지 예·결산 제도는 2006년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2010회계연도부터 정부가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51) 60면 표(성평등 분야별 2023년 ~ 2025년 성인지 결산) 참조.

다.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결산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의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은 예산사업 24개, 기금사업 9개 등 총 33개로 2025년도 성평등가족부 총 세부사업 수 46개의 71.7%에 해당하고,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예산액은 1조 5,095억 1,200만원으로, 성평등가족부 예산 1조 7,096억 3,000만원의 88.3%에 해당함.[52]

【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분(사업 수)	예산액(A)	지출액(B)	집행률(B/A)[1]
계(33)	**1,509,512**	**1,505,110**	**99.7**
예산(24)	670,034	666,537	99.5
기금(9)	839,478	838,573	99.9

주1) 추경 등이 반영된 최종 본예산 대비 집행 실적임
자료: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성평등가족부 소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을 사업목적별로 살펴보면,[53] 성별영향평가사업 수는 2개(6.0%)이며, 지출액은 9억 9,100만원으로 전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지출액의 0.07%에 해당함. 성평등 추진

52) 행정지원, 내부거래, 보전지출을 제외한 사업 수 및 예산액임.

53) **< 2025년도 성평등가족부 사업목적별 대상사업 결산 총괄표 >**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성별영향평가 사업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전체 대상사업
사업 수	2	4	33
지출액	991	101,635	1,505,110

자료: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중점사업 수는 4개(12.1%), 지출액은 1,016억 3,500만원(6.8%)으로, 성평등가족부 소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사업과 성평등추진중점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는 총 46개이며,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등이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이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등 성과지표 증감이 있어 목표수는 2024년 대비 5개가 증가하였음.[54)]

성과지표 46개 중 달성 41개, 미달성 5개로 성과지표 달성률은 89.1%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 사업은 성과지표 32개 중 28개를 달성하여 87.5%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기금 사업은 14개의 성과지표 중 13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92.9%임.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미달성 성과지표 수는 5개로 2024년도 3개 보다 2개(66.7%) 증가하였고, 2025년도의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89.1%로 2024년도의 성과지표 달성률(92.7%) 보다 3.6%p 감소하였음.

54) [참고자료] 7. 2025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세부현황

【 연도별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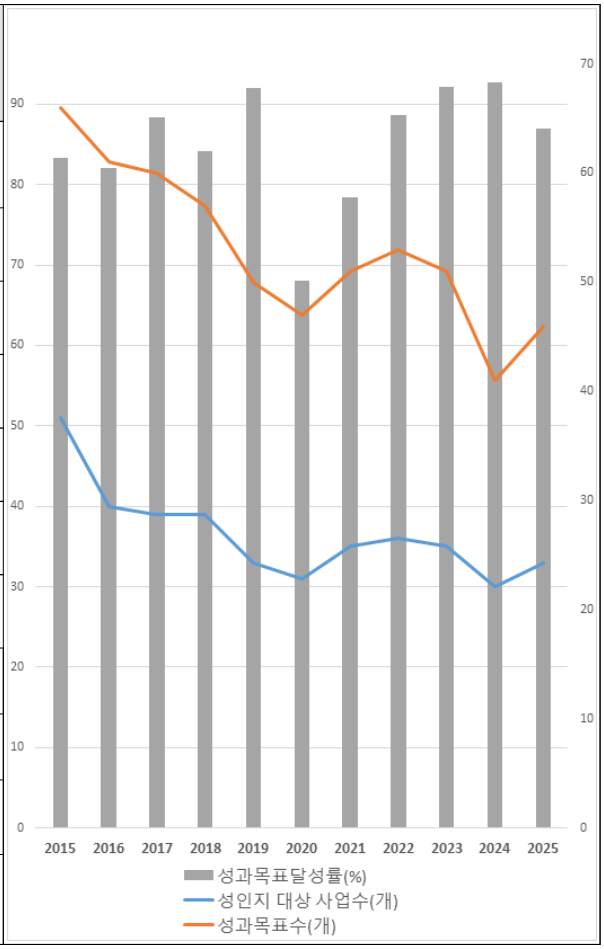
구분	2022				2023				2024				2025			
	대상 사업 수	성과 지표 (A)	성과지표		대상 사업 수	성과 지표 (A)	성과지표		대상 사업 수	성과 지표 (A)	성과지표		대상 사업 수	성과 지표 (A)	성과지표	
			달성 (B)	달성률 (B/A)			달성 (B)	달성률 (B/A)			달성 (B)	달성률 (B/A)			달성 (B)	달성률 (B/A)
합계	36	53	47	88.7	35	51	47	92.2	30	41	38	92.7	33	46	41	89.1
예산 사업	23	33	30	90.9	22	29	27	93.1	19	26	24	92.3	24	32	28	87.5
기금 사업	13	20	17	85.0	13	22	20	90.9	11	15	14	93.3	9	14	13	92.9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변화 추이 】

(단위: 개, %, 백만원)

구분	사업 수	성과지표		지출액
		목표 수	달성률	
2015	51	66	83.3	487,248
2016	40	61	82.0	519,655
2017	39	60	88.3	552,933
2018	39	57	84.2	611,299
2019	33	50	92.0	806,554
2020	31	47	68.1	834,249
2021	35	51	78.4	940,853
2022	36	53	88.7	1,113,007
2023	35	51	92.2	1,207,611
2024	30	41	92.7	1,415,825
2025	33	46	89.1	1,505,044



자료: 각 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1)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2025년 성과지표가 미달성된 사업은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국제개발협력(ODA),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친화지원사업),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5개 사업임.

【 2025년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 】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지표		
			지표	목표치	달성치
일반회계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체감도(점)	88.2	78.5
	국제개발협력(ODA)	국제개발협력(ODA)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수혜자 수(명)	231	226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양육비 이행률(%)	48	47.9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가족친화지원사업	가족친화직장교육 지원기업, 기관 수(개)	360	269
양성평등기금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실적(천건)	998	906

자료: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일부 2025년 성과지표가 미달성된 사업의 원인 및 향후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의 경우 성과지표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체감도(점)'로 목표치 88.2점에 비해 실적치는 78.5점으로 미달성 되었음. 2023년도와 2024년도 동일한 성과지표[55]에 대한 실적치가 각각 88점, 86.59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체감도로 집계되었음.

55)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결과보고서 통계를 활용하였음.

성인지결산서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동 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국외 한인 국내외 글로벌 리더 포럼, 분야별 네트워킹, 해외참가자 네트워킹, 각종 다양한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참가자들간 우의증진 및 연대 강화”라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나, 성평등가족부는 전년도 대비 활성화 체감도가 낮게 집계된 원인을 더 명확하게 분석하여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의 경우, 성과지표가 ‘1366센터 이용자 만족도(점)’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실적(천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실적’의 목표치가 99만 8천건인데, 실적치는 90만 6천건으로 미달성 되었음.[56)]

성평등가족부는 성과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 미지원 시설을 포함하여 실적을 산정하던 기존의 방식을 수정하여 국비 지원 시설로 한정하여 실적을 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였음.

동 사업의 성과관리 대상을 한정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목표치와 실적치의 차이가 약 9만 건으로 나타나는바, 이 간극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의 목표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56) 성과지표 중 ‘1366센터 이용자 만족도(점)’는 목표치가 94.2점인데, 97점으로 달성되었음.

한편 2025년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 중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가족친화 지원사업)’은 2년 연속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성평등가족부 2년 연속 성과지표 미달성 대상 사업 】

회계/기금	세부사업	내역사업	성과			
			지표	년도	목표	실적
일반회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가족친화 지원사업	가족친화직장교육 지원기업, 기관 수(개)	2024년	210	206
				2025년	360	269

자료: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가족친화 지원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는 ‘가족친화직장교육 지원기업, 기관 수(개)’로 목표치 360개에 비해 실적치는 269개로 미달성 되었음. 성평등가족부는 전년 대비 교육 예산이 동결[57]된 상황에서 성과지표가 상향 설정되었기 때문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원인을 진단하였음. 이어서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방문형 직장 교육을 확대하고, 임원급 이상 경영자 중심으로 가족친화교육 콘텐츠 신규개발로 경영진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5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사업(가족친화지원사업) 관련 예산액과 온라인교육 등 이수 근로자 수 비교

2024년도에도 성평등가족부는 성과지표 미달성의 사유를 예산의 한계를 원인으로 삼았으나, 성과지표는 오프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직장교육 참여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추진 계획 및 성과지표 목표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온라인교육 이수 근로자 수 】

(단위: 명)

회계연도	온라인교육 등 이수 근로자 수1)
2023	102,079
2024	121,786
2025	137,176

주1) 2024년도, 2025년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온라인교육 이수 근로자 수로 기재되어 있으나, 성평등가족부는 방문교육 이수 근로자 수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함.

자료: 「202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성평등가족부는 2년 연속 성과지표를 미달성한 사업을 비롯하여 성과지표를 미달성한 사업에 대하여 성과지표 및 목표를 점검하고, 서비스 개선 및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임.

2) 대상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 검토 및 성과관리 필요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중 일부는 성과지표가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지향적 지표로 개선하거나 객관적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25년도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사업 】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구분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 여부
일반회계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	2023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체감도(점)	81.6	88	달성
			202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체감도(점)	86.2	86.59	달성
			2025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체감도(점)	88.2	78.5	미달성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ODA)		2023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집행률(%)	100	100	달성
			2024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집행률(%)	100	100	달성
			2025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집행률(%)	100	100	달성
	국제개발 협력(ODA)		2023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수혜자 수(명)	2,964	3,779	달성
			2024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수혜자 수(명)	927	1,930	달성
			2025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수혜자 수(명)	231	226	미달성
	양성평등 문화확산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2023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추진단체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95	99.29	달성
			2024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참여기관 수(개)	135	206	달성
			2025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참여기관 수(개)	160	188	달성

자료: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의 성과지표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체감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과지표는 사업의 수혜자인 참가자가 ‘인적 네트워크 형성’, ‘자부심 고양’ 등 자신의 주관적·정서적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응답자가 참된 선호와 무관하게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순응 편향[58]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결과중심적인 보조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유엔여성기구 기금(ODA)’의 경우 성과지표는 ‘기여금 집행률’로 기여금을 출연하는 것 자체로 목표가 100% 달성되기 때문에, 사업 성과의 도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고, 동 사업의 목적(국제사회 성평등 달성, 여성 역량강화,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국제개발협력(ODA)’ 역시 ‘수혜자 수’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데, 이 지표는 산출지표에 해당하여 동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양성평등문화확산(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의 경우, 성과지표가 2024년도를 기점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추진단체사업 성과목표 달성률(%)’에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58) ‘순응 편향’이란 응답자가 자신의 참된 선호와 관계 없이 ‘동의’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성을 의미함(이현우, “설문조사에서 순응 편향에 관한 실증연구”, 「연구방법논총」, 2025,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192면).

참여기관 수(개)'로 변경되었는데,

참여기관 수는 사업에 참여한 기관의 규모만을 나타내는 산출지표에 불과하여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조직문화가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를 측정하지 못하므로, 조직문화 진단·개선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결과지향적 지표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성평등가족부 소관 대상사업 중 일부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향후 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여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25년도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관리 필요 사업 】

회계	세부사업	내역사업	구분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여부
일반회계	여성·가족 정책의식 확산		2023	여성가족정책 온라인 관심도(명)	186,490	194,696	달성
			2024	여성가족정책 온라인 관심도(명)	199,544	202,103	달성
			2025	여성가족정책 온라인 확산(건)	570	675	달성
	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2023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건수(회)	4	4	달성
			2024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과제 이행률 (퍼센트)	80	83.7	달성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과제 이행률 (퍼센트)	80	83.2	달성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023	생리용품 지원 신청률(%)	88	80.1	미달성
			2024	생리용품 지원 신청률(%)	80	87.4	달성
			2025	생리용품 지원 신청률(%)	88	91	달성

자료: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의 경우 성과지표가 정량 지표에서 시행계획 과제 이행률로 개선되고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 조정에 일부 반영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성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원인 분석이 특정 회의 실적에 치우쳐 있고, 향후 개선사항에 대하여서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자체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동 사업의 성과와 원인을 연계한 분석을 강화하고 예산과 성과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의 경우 비교적 도전적으로 설정된 목표치를 콘텐츠 제작·활용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는 직전 연도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이나 개선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동 사업의 목표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성과평가 결과가 차년도 사업 계획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성과지표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률’로서, 지원 대상 청소년이 전자바우처를 신청하여 실제 지원에 이르렀는지를 나타내는 수혜율 성격의 지표에 해당하고, 2025년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음.

다만 전자바우처가 지급됨에도 신청률이 100%에 못 미치게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 성과 향상을 위하여 신청률 제고 방안과 연계한 목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지원 대상 청소년이 실제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사업 추진에 연계·반영할 필요가 있음.

Ⅲ 사업별 검토

Ⅲ. 사업별 검토

1. 성평등정책관

가. 일반회계

1)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1231-320)

○ 성평등정책 조정·협의와 관련하여 2025년도에 양성평등분과위원회는 전혀 개최되지 않았고, 양성평등위원회 및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회의가 서면으로만 운영되었는바,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성평등정책의 통합·조정과 부처 협업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성평등정책의 조정 및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회의로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 사업은 성평등정책 의제 개발·평가와 성평등지수 분석,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 협의·조정 및 각종 회의체 운영 등을 통한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성평등정책기반 강화, ② 성평등정책 조정·협의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억 1,800만원 중 2억 8,600만원이 집행되고 3,200만원은 불용되어 집행률은 예산현액의 89.9%임.

【 2025년도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성평등정책전략 기반 구축	318	318	-	-	318	286	-	32	732
· 성평등정책기반 강화	270	270	-	-	270	243	-	27	187
· 성평등정책 조정·협의	48	48	-	-	48	43	-	5	35
· 양성평등실태조사	-	-	-	-	-	-	-	-	510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양성평등분과위원회 활성화 및 대면회의 개최 전환 필요

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은 양성평등위원회 및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운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성평등은 모든 사회 이슈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일부 부처가 아닌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성평등정책이 '대상'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능'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는 각 부처의 정책과 통합·조정절차를 거쳐야만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가능하게 됨.

이에 정부는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전담전문인력, 그리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등 범부처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양성평등위원회[59]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 포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60]에 따라 산하에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와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실무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며, 분과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 소관사항을

---

59)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0)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1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
③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방법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기준 ‘성인지 정책 및 양성평등 문화 분과’와 ‘경제 및 의사결정 영역의 여성참여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양성평등위원회는 2026. 6. 1.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개편하였음.

2025년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양성평등위원회는 1회, 실무위원회는 4회 개최되었음.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실시되었으며, 분과위원회는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양성평등위원회는 2015년 7월에 처음으로 개최한 이후 양성평등위원회는 통상 연 2회, 실무위원회는 연 5회, 분과위원회는 통상 연 1~3회 운영하고 있음.

【 연도별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

(단위: 회)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양성평등 위원회	2	2	2	2	1	2	2	1	2	1	1
실무 위원회	3	5	5	5	4	4	5	5	6	2	4
분과 위원회	1	2	3	3	-	1	2	-	-	1	-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2년 이후 양성평등분과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2024년에 1회 개최되었을 뿐 2022년, 2023년 및 2025년에는 전혀 개최되지 않았는바,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전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음.

이처럼 2025년 심의 안건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4차, '25~'29)(안),[61]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62] 중 '24년 추진실적 및 '25년 시행계획(안) 등 법률에 따라 당연히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 그리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이행 점검 결과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 이행 점검 결과 등에 그치고 있음.

---

6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생 략)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 략)

62)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⑥ (생 략)

【 2025년도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

회의	일자	참석 위원[1)]	심의안건(심의 결과)	방법
양성평등위원회	3.19 ~ 3.28	당연직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0명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4차, '25-'29)(안)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중 '24년 추진실적 및 '25년 시행계획(안)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심의 권고 이행계획(안) - '23년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안)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 '24년 이행점검 결과(안)	서면
실무위원회	3.5.~ 3.7.	당연직 정부위원 14명 관계기관 정부위원 19명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4차, '25-'29)(안)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24년 추진실적 및 '25년 시행계획(안)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심의 권고 이행계획(안) - '23년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안)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 '24년 이행점검 결과(안)	서면
	5.15.~ 5.19.	당연직 정부위원 14명 관계기관 정부위원 30명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24년 추진실적 및 '25년 추진계획 - 2024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조사결과	서면
	9.19.~ 9.23.	당연직 정부위원 14명 관계기관 정부위원 17명	2024년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이행점검 결과	서면
	11.27.~ 12.1.	당연직 정부위원 14명 관계기관 정부위원 30명	-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25년 상반기 추진실적 이행점검(안) - '25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이행점검 결과(안)	서면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3회계연도 및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양성평등위원회 등의 회의가 서면으로만 실시되어 실질적인 논의·조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면회의를 활성화하도록 시정요구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회계연도에도 양성평등위원회 1회, 실무위원회 4회를 개최하는데 그쳤고,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음.

【 2025년도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

(2025. 6. 30. 기준)

회의	일자	참석 위원	심의안건(심의 결과)	방법
양성평등 위원회	2025.03.19. ~ 03.28.	위원장 등 총 25명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4차, '25-'29)(안)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24년 추진실적 및 '25년 시행계획(안)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심의 권고 이행계획(안) - '23년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안)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 '24년 이행점검 결과(안)	서면
실무 위원회	2025.03.05. ~ 03.07.	위원장 등 총 34명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4차, '25-'29)(안)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24년 추진실적 및 '25년 시행계획(안)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심의 권고 이행계획(안) - '23년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 결과(안) -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행동계획('24-'27) '24년 이행점검 결과(안)	서면
	2025.05.15. ~ 05.19.	위원장 등 총 45명	- 「제3차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 '24년 추진실적 및 '25년 추진계획 - 2024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조사결과	서면

자료: 성평등가족부

종합하면 양성평등위원회 및 양성평등분과위원회가 여전히 소극적·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국무총리 주재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 개최(4월)하였으며, 양성평등 분과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개편하여 대면회의를 3회 개최하였으므로 운영의 실질화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2025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 성평등지수[63]에서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101위로 나타났음. 이는 경제참여 및 기회, 정치적 권한 부여 영역에서 남녀 간의 격차가 큰 것에 기인함.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는 29.0%로, 38개 OECD 회원국(평균 10.3%) 중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64]

따라서 우리사회가 실질적인 성평등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남녀 간의 격차가 큰 영역에서 적극적인 성평등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성평등정책은 여러 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으므로,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양성평등정책의 통합·조정과 부처 협업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63)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이나 개인의 삶의 질이 아닌 남성과 여성 간의 상대적 격차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선진국이라도 남녀 간의 격차가 크면 순위가 낮게 나올 수 있음.

64) **< 2024년 기준 주요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격차 >**

(단위: %)

한국	OECD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핀란드	호주	프랑스	덴마크
29.0	10.3	20.7	17.3	16.5	13.5	13.1	13.1	10.7	6.6	3.3

주) 2024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의 중위임금 차이를 분석한 것임.
자료: OECD Data(2026. 4월 조회)

또한 성평등정책의 조정 및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회의로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65]

65)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서면으로만 진행되었던 이유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회의 진행이 권고되었기 때문임.

2)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1231-321)

○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발표되는 지역성평등지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체별 성평등 취약 영역에 대하여 과제 발굴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자체 정책의 성인지관점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지정 신청은 매년 충분히 접수되고 있으나 지정 요건을 충족할 만한 실적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제한적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에 상응하는 유인이 제공되지 아니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성평등가족부는 동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에 성과에 상응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사업은 정책 및 예산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인 여성과 남성의 정책 만족도 및 공공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성별영향평가 운영,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③ 성인지 예·결산 운영, ④ 성인지 통계 운영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9억 4,000만원 중 38억 3,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1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7.4%임.

【 2025년도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3,940	3,940	-	-	3,940	3,839 (3818)	-	101	3,580
- 성별영향평가 운영	3,529	3,529	-	-	3,529	3,542 (3,431)	-	77	3,580
- 여성친화도시 조성	131	131	-	-	131	126	-	5	131
- 성인지 예·결산 운영	240	240	-	-	240	225	-	15	110
- 성인지 통계 운영	40	40	-	-	40	36	-	4	-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발굴 시 지역 성평등지수 등을 활용한 과제 발굴 컨설팅 등 연계 방안 마련 필요

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 중 특정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성평등가족부가 성별 격차가 크고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개선 권고를 하여 성평등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관리와 특정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으로 세분되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되고 있음.

특정성별영향평가 사업의 2025년도 실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2억 4,400만원 중 2억 2,100만원이 집행되고 2,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5년도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2025년							2026년
	수행 기관	수행방식 (계약방식)	예산 현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244	-	221	-	23	244
-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관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경쟁→ 수의	204	-	182	-	22	204
- 특정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수의	40	-	39	-	1	40

자료: 성평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시행 중인 법령,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등을 특정하여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임(「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제10조의2[66]).

---

66)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 ④ (생 략)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성별영향평가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67] 및 「성별영향평가법」[68]에 따라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67)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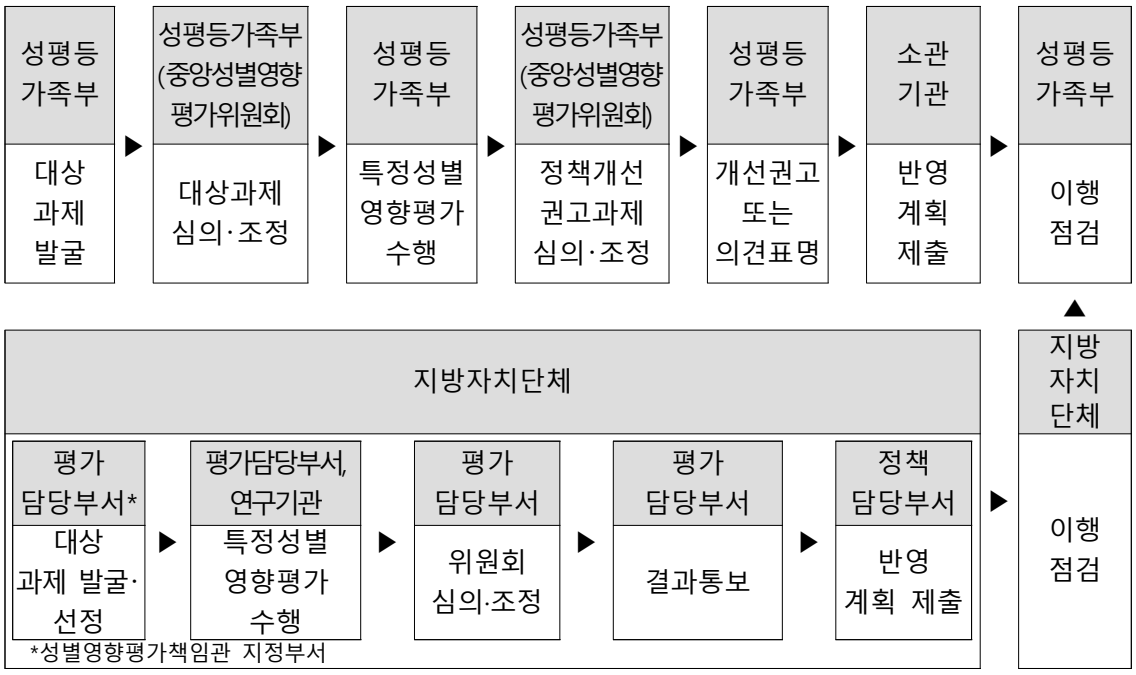
68)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생 략)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특정성별영향평가는 평가의 수행주체(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따라 운영 절차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절차 】



우선 「성별영향평가법」 제11조[69]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평가 실시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행기한을 정하여 법령·정책 및 사업

69) **「성별영향평가법」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개선 계획(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는 조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5년간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권고의 수가 최근 3년간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최근 5년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 현황 】 [1)]

(단위: 건)

대상연도 (개선권고 연도)	소관별 개선권고 과제 수			개선권고 총 과제 수 [A+B]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2020년 (2021년 권고)	95	8	1	104
2021년 (2022년 권고)	69	1	3	73
2022년 (2023년 권고)	57	-	-	57
2023년 (2024년 권고)	47	-	-	47
2024년 (2025년 권고)	32	1	-	33

주1) 2025년 8월 기준
자료: 성평등가족부

다음으로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1항[70]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 중인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2항[71]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70)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71)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전체 건수도 2022년 총 19건에서 2024년 총 10건으로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 현황 】 [1)]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전 체	**19**	**14**	**10**
광역자치단체	12	10	8
기초자치단체	2	2	1
시·도교육청	5	2	1

주1)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집계된 건수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25. 8., 334면.

성평등가족부는 동 사업의 내용이 형식화·형해화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자체 심의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성평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로 성평등지수가 취약한 영역을 의사결정 영역, 돌봄 영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른 취약 영역을 연계하여 과제를 선정하는 등 충분히 연계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 그럼에도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맡기게 된다면 현재와 같이 동 사업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역성평등지수의 관리에 있어서 성평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때에 성 불평등이 높은 영역이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72)]

  또한 「지방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성평등 하위권으로 분류되었고,[73)] 모든 영역 중 의사결정 영역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52.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경상북도(29.9점)가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음.[74)] 이러한 통계지수를 고려하면 성평등가족부가 동 사업의 모니터링을 일률적으로 강화하는 것보다는 지수 하위권 지자체에 대한 과제 선정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72) 성평등가족부, 「2025년 지역성평등보고서」, 2025. 12., ⅹⅹⅶ 면 참조.
73) 성평등가족부, 「2025년 지역성평등보고서」, 2025. 12., ⅳ면 참조.
74) 성평등가족부, 「2025년 지역성평등보고서」, 2025. 12., 32면.

따라서 성평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동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성평등지수 등을 고려하여 과제 발굴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연계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75]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및 운영하여 해당 지자체의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내역사업임.

---

75)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서[76]를 제출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가 추천하면, 성평등가족부 내 여성친화도시 지정심사위원회[77]가 그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78]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부를 결정함.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간인 5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전문가 컨설팅, 정책형성 교육, 이행점검, 유공자 포상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동 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9년 2개 도시(전남 여수, 전북 익산)가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0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79]되었으며(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의 47.3%), 지정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제2항[8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76) 지정신청서에는 5대 조성목표별 사업추진 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5대 조성목표란 ①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④ 가족친화 환경조성, 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이름.

77) 여성친화도시 지정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연 1회 개최되며, 당해 연도에 지정심사계획이 수립되면 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함. 심사위원회는 내부 위원과, 양성평등정책·지역개발·행정·일과 생활의 균형 등 관련 분야의 관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됨.

78) 심사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체계 및 관련 조례 마련 여부, 사업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예산 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게 됨.

79) 각 연도에 신규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와 지정(협약) 기간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가 합산된 것임.

80)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 사업은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사업의 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일·가정 양립 지원과 가족친화적 돌봄 환경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사업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례 】

분야	지역	사례 내용
일자리	대구 수성구	지역 주민의 관심을 반영한 도예·직물 제품 제작 등 교육과정 운영, 창작자 양성, 도서관 등 상설 판매장 입점 및 해외 수출 지원
	전남 강진군	농촌 민박 및 영농체험으로 구성된 농촌형 관광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여성 농업인 경제 소득 향상
	경기 안양시	관내 기업 중 여성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을 선정·지원하고, 노동인권센터를 통해 여성 이동노동자 휴식권 지원
돌봄	전남 순천시	돌봄활동가를 양성해 방과후 돌봄 일자리와 연계하고 주민 주도의 야간 틈새 공동 돌봄 운영
	인천 부평구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을 육아활동가로 양성해 초보 부모육아코칭 서비스 제공해 육아부담 완화하고, '진짜 쉬운 아빠육아 프로젝트', 돌봄 활동가 소진예방 워크숍 등 함께하는 돌봄 환경 구축
	충북 음성군	마을교사와 마을활동가 참여를 통한 방과후 학습, 문화, 예술, 독서 등 맞벌이·한부모·다문화 가정을 위한 돌봄 운영
안전	경남 합천군	고령 인구가 많은 군 특성을 고려해 경찰서, 소방서, 상담센터 등과 협력해 노인생활 안전,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보이스피싱 예방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경기 수원시	시민참여단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마을 주차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주민 아이디어를 담은 마을안전지도(책자) 제작
	강원 태백시	안전대학 운영하여 시민 대상 재난·폭력 대비 교육 실시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의 경우 34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하였고, 그중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되었음. 이처럼 매년 30건 이상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이 접수되고 있어 신청 단계의 유인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할 만한 실적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에 상응하는 유인이 제공되지 아니하여 실무상 사업 추진의 동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므로 성평등 가족부는 동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에 성과에 상응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여성사전시관(1232-332)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의 2025년도 집행률은 5.3%로 저조하고, 2022년부터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부지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박물관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8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바, 국립여성사박물관 대체 부지 확보 및 사업 절차 진행 등에 있어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불용과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여성사전시관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81]에 따라 한국의 역사발전에 기여한 여성인물 및 성평등 문화의 전형을 발굴하고 재조명함으로써 양성평등의식을 고양하고 한국 여성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① 여성사전시관 운영, ② 간담회 등 사업추진, ③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81)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지역여성·여성운동·여성단체·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보존·연구·교육
5. 미술·음악·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5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4억 1,100만원 중 6억 7,900만원이 집행되고 17억 3,2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28.2%에 불과함. 이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의 집행이 저조하였기 때문임.

【 2025년도 여성사전시관 결산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여성사전시관	2,411	-	-	2,411	679 [675]	-	1,732	9,317
· 여성사전시관 운영	578	-	-	578	578 [574]	-	-	1,061
· 간담회 등 사업추진	5	-	-	5	5 [5]	-	-	-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1,828	-	-	1,828	96	-	1,732	8,256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국립여성사박물관 집행률 저조 및 건립 지연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면적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낮은 기존 여성사전시관[82]을 확대·이전하여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재조명하고 다양한 역사 인식의 확산을 위한 복합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 집행실적은 예산현행의 5.3%에 불과한 9,600만원임.

【 2025년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비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1,828	-	-	1,828	96	-	1,732
▪ 기본조사 설계비(420-01)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공사비(420-03)	1,701	-	-	1,701	92	-	1,609
▪ 감리비(420-04)	123	-	-	123	-	-	123
▪ 시설부대비(420-05)	4	-	-	4	4	-	-

자료: 성평등가족부

최근 연도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예산현액 13억 3,300만원의 34.4%인 4억 5,900만원, 2023년의 경우 예산현액 46억 4,400만원의 0.04%인 200만원, 2024년도의 경우 예산현액

82) 여성사전시관은 2002년 우리나라 여성사가 비교적 저평가되고 있고, 여성(학)계 및 여성단체에서 여성사에 대한 재조명을 위하여 여성사 전문전시관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서울시 여성플라자건물을 임차하여 설립되었고, 2014년 9월 경기도 고양시의 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하여 개관하였음.

37억 7,800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는 등 연례적으로 저조한데,[83] 이는 동 사업이 현행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된 데 따른 것임.[84]

---

83) 2025년도의 경우에도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가 12월에 완료되어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연내에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였음. 이는 「국가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사업단계별 적정성 검토 및 심의·협의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한 채 사업기간을 최소한으로 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2022년도부터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84)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건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 다. (생 략)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② ~ ⑤ (생 략)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3. (생 략)
② ~ ⑧ (생 략)

【 2022~2025회계연도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의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연도별 결산					구체적인 예산의 이월·불용 사유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2022	1,333	1,333	459 (34.4%)	866	8	조달청·기재부의 심의·협의기간 소요에 따른 설계기간 순연
2023	4,644	4,644	2 (0.04%)	-	4,642	중간설계 이후 조달청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사업이 일시 정지됨
2024	3,778	3,778	0 (0%)	-	3,778	2024.10.까지 기재부(KDI)가 주관하는 '사업계획 정적성 재검토' 진행됨
2025	1,828	1,828	96 (5.3%)	-	1,732	조달청 적정성 검토기간 소요에 따라 시공사 선정 등 후속절차 지연

주) 2025회계연도의 경우 2025년 10월을 기준으로 집행액과 불용액을 작성한 것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즉 당초 2021년도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기본설계를 거쳐 2022년 공사 추진, 2023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 기재부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함에 따라 건립 계획이 변경되었음.

- 성평등가족부의 중간설계[85] 실시 이후, 조달청이 2023년 중간설계의 사업규모와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는바, 공사비가 약 105억 6,600만원이 증가[86]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및 협의 후 기재부(KDI) 주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추가로 거치면서 동 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87] 변경된

85) 건축설계 3단계(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중 하나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임.
86) 증가된 공사비 약 105억 6,600만원 중 주요하게 상승된 부분으로 물가상승분(44억 9,600만원)과 토목공사비(37억 4,100만원)가 나타났음.
87) 이에 따라 설계용역계약은 2022년 12월 이후 일시정지 상태로 실시설계 및 전시설계 등이 완료되지 않아 2022년도 이월 예산인 실시설계비 8억 6,600만원과 2023년에 편성된 공사비와 감리비 37억 7,200만원이 불용된 바 있음.

계획[88]에 따르면 사업규모는 608㎡ 감소하였고, 총 사업비는 43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28년에 준공 및 개관할 예정이었음.

동 사업의 총 공사비는 273억 4,600만원으로, 이 중 건축공사비는 250억 1,700만원이며, 전시공사비는 23억 2,900만원(전시설계비 1억 8,400만원 포함)임. 성평등가족부는 전시공사와 전시설계가 규격·가격 동시입찰제[89]에 따라 한 건의 계약으로 2022년도 입찰 및 발주가 완료되었고, 계약에 따라 전시설계비 1억 8,400만원의 5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함.

한편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부지가 정부가 2026년 1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 국립여성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2026년 6월말 현재 2026년도 예산 93억 1,700만원도 거의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88)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총사업비 변경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A)	중간설계 내역	중간설계 적정성검토 (조달청)	'23 조정요구 (성평등 가족부)	'24 총사업비 조정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최종(B)	당초 대비 증감 (B-A)	
총사업비	26,777	42,028	40,327	36,269	31,103	4,326	16.2%
공사비	23,446	35,773	34,012	31,442	27,346	3,900	16.6%
설계비	1,575	2,193	2,249	1,775	1,421	△154	△9.8%
감리비	1,703	3,987	3,988	2,979	2,274	571	33.5%
시설부대비	53	75	78	73	62	9	17.0%
사업규모(㎡)	7,000	7,948	7,545	7,245	6,392	△608	8.7%
사업기간	'21~'23	-	-	'21~'26	'21~'28	-	-

자료: 성평등가족부

8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3조(정의) 22. **"규격·가격동시입찰"이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 제출**토록 하여 먼저 규격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정부는 2026년 1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이전[90]하면서 연구원이 사용하던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공동주택 단지로 개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91][92]

【 2026년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2025	2026.1.~2026.6.
합 계	**31,103**	**809**	**597**
공사비	27,346	92	-
시설부대경비	3,757	717	597
▪ 설계비	1,421	709	597
▪ 감리비	2,274	-	-
▪ 시설부대비(관리비)	62	8	-

주) 2026년도 6월말 기준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세종특별시에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가능한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 중이며, 국립여성사박물관의 개관은 2031년도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립여성사박물관 대체 부지 확보 및 사업 절차 진행 등에 있어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불용과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90) 2026년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가 이전 부지의 위치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함.
91)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2026. 1. 29., 10면 참조.
92)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2025년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조기 공급에 뒤따르는 계획임. 이하 국토교통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2025. 9. 7. 참조.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 및 계획 】

기 간		추진 현황 및 계획
추진 경과	2020. 6.	문체부의 국립여성사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2020. 12.	2021년도 예산안(설계비) 반영
	2021. 1.	기획재정부와 협의, 총사업비 확정, 사업내역의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등록
	2021. 4.	국립여성사박물관 기본계획 수립·고시
	2021. 4. ~ 9.	설계공모지침 마련, 공공건축심의
	2021. 9. ~ 12.	설계(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공모
	2021. 12.	설계 계약 체결
	2022. 2. ~ 4.	경계복원측량, 부지 현안 검토 및 변경안 검토
	2022. 3. ~ 5.	건립부지 관련 관계기관(은평구청, 국무조정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협의
	2022. 6. ~ 9.	서울시 경관심의(7월),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2022. 9. ~ 11.	중간설계 추진
	2023. 1. ~ 5.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3. 6. ~ 11.	총사업비 조정(기재부) 협의
	2023. 12. ~ 2024.10.	기재부(KDI) 주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
	2024. 11.	총사업비 조정(기재부) 재협의 완료
	2024. 12.~2025. 5.	건축계획 조정, 건축심의(5.22)
	2025. 6.	건축물 성능 예비인증 신청
	2025. 7. ~ 12.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9.15. 합동토론회 개최)
	2025. 11.	공용건축물 건축협의(허가) 신청(성평등가족부→은평구)
	2026. 1.29.	1·29 주택공급방안(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건립 예정부지가 공공주택 부지로 편입, 대체부지 마련 필요
향후 일정	2026.12.	총사업비 조정(보상비 반영) 및 부지매입
	2027	계획설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
	2028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인허가, 총사업비 조정
	2029 ~2031	시설공사, 준공 및 개관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6. 4. 30. 기준)

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1233-341)

○ 성평등가족부는 양평원의 공무원에 편중된 성인지 교육 대상을 민간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조사 범위를 일반 국민까지 포함하도록 설계하여 수요 기반의 재정 투입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93]에 따라 설립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은 ①기관운영 출연금, ②사업출연금, ③민간위탁사업비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93)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동 사업의 2025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17억 9,600만원 중 116억 9,3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3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약 99.1%로 나타남.

【 2025년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지원	11,796	11,796	-	-	-	11,796	11,693 [11,618]	-	103	12,642
· 기관운영출연금	6,310	6,310	-	-	-	6,310	6,310 [6,235]	-	-	6,635
· 사업출연금	4,581	4,581	-	-	-	4,581	4,581 [4,581]	-	-	6,007
· 민간위탁사업비	905	905				905	802 [802]		103	-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의 대상을 민간기업 등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포함하도록 수요를 발굴할 필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이라 함)이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제5항[94] 및 양평원 정관 제4조[95]에 따라 공무원 외 일반국민, 전문강사, 고충상담원, 교원 등에 대하여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교육과정별로 성인지정책교육, 전문인력(전문강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양성교육, 이러닝(사이버 폭력예방교육, 원격교육연수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원격교육연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제공되고 있음.

---

94)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④ (생 략)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5) **「정관」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 공무원 및 일반인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공무원 및 공공단체 등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6. 양성평등 의식확산을 위한 원격교육 연수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연구, 관련자료 발간 및 보급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10. 기타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과정별 대상 】

구 분		대 상
성인지정책교육		국가 및 지자체 전직급 공무원 및 공직유관기관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문강사	유관분야 교육, 연구 등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이러닝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공공기관 종사자 및 일반 성인
	원격교육연수원	교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최근 3년간(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양평원의 교육인원 현황에 따르면, 성인지정책교육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사이버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는 일반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3년도 교육인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합 계	공무원	일반인
합 계		208,605 (100.0%)	150,687 (72.2%)	57,918 (27.8%)
성인지정책교육		8,462	8,024	438
전문인력 양성교육	소 계	8,721	3,145	5,576
	전문강사	3,103	752	2,351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5,618	2,393	3,225
이러닝	소 계	191,422	139,518	51,904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183,736	131,832	51,904
	원격교육연수원	7,686	7,686	-

자료: 성평등가족부

【 2024년도 교육인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합 계	공무원	일반인
합 계		256,262 (100.0%)	181,292 (70.7%)	74,970 (29.3%)
성인지정책교육		8,818	8,034	784
전문인력 양성교육	소 계	8,307	3,168	5,139
	전문강사	3,182	988	2,194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5,125	2,180	2,945
이러닝	소 계	239,137	170,090	69,047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231,083	162,036	69,047
	원격교육연수원	8,054	8,054	-

자료: 성평등가족부

【 2025년도 교육인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합 계	공무원	일반인
합 계		349,804 (100.0%)	270,012 (77.2%)	79,792 (22.8%)
성인지정책교육		8,515	7,543	972
전문인력 양성교육	소 계	13,678	4,959	8,719
	전문강사	3,158	1,068	2,090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10,520	3,891	6,629
이러닝	소 계	327,611	257,510	70,101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314,696	244,595	70,101
	원격교육연수원	12,915	12,915	-

자료: 성평등가족부

전체 교육인원은 2023년 208,605명에서 2025년 349,80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강생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일반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2023년 27.8%에서 2025년 22.8%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되었음. 또한 2025년 일반인 교육인원(79,792명) 중 약 88%(70,101명)가 이러닝(사이버 폭력예방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대면 교육과정인 성인지정책교육의 일반인 교육인원은 972명에 그치고 있음. 이는 일반인 수강이 온라인 과정에 의존하고 있고, 일반인의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공무원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성평등가족부와 양평원은 일반인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우리 사회 전반의 성평등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교육현황에서 집계되는 일반인은 대부분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에 해당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96]에 따른 성 주류화 조치·

96)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성인지 통계·성인지와 관련된 교육은 법률 규정상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 편성 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덧붙여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정책교육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소속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대부분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의 여성친화도시 주민리더, 공공기관의 관리자 등으로부터 교육 요청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양성평등기본법」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양평원이 교육을 제공하는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양성평등기본법」제36조 및 제46조제5항[97]에 따르면 성평등교육이 양평원의 주요 기능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데이터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④ (생 략)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규정되어 있는데, 교육 대상에 일반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양평원이 일반인 대상 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 ⑦ (생 략)

2. 고용평등정책관

가. 일반회계

1) 공통사항

○ 현재 고용평등정책관의 예산사업과 성평등정책관과 예산사업이 단일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재정운영의 효과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정책적으로 업무의 목표와 내용이 구별되어 성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고용평등정책관 소관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는 대체로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큰 국가승인통계 또는 응답자의 주관적 만족도에 해당하여 개별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를 분리하여 측정하기 어려운바, 각 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2025 회계연도 고용평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사업은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888억 3,700만원 중 881억 9,1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2,500만원은 불용되어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9.3%임.

【 2025년도 고용평등정책관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계	88,319	88,319	-	518	88,837	88,191	21	625	102,158
【일반회계】									
여성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606	606	-	-	606	550	-	56	1,006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	-	-	256	256	8	-	248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	-	-	262	262	194	-	68	94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87,713	87,713	-	-	87,713	87,439	21	253	100,203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고용평등정책관 사업의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

우리나라의 예산 사업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왔음.[98] 여기서 프로그램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위사업을 묶은 것을 의미함.[99] 예산정책처는 프로그램의 기본 요소로 ① 정책적으로 독립성을 지닌 최소단위, ② 동일 유형의 그룹 조직 단위, ③ 정부의 기능·정책 및 성과와의 관계구조를 제시한 바 있음.[100]

98) 예산정책처,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상)』, 2010. 8., 8면.
99) 예산정책처,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상)』, 2010. 8., 4면.

그런데 고용평등정책관의 예산사업과 성평등정책관의 예산사업이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1200)’이라는 단일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상이한 성격의 사업들을 단일 프로그램으로 편성함에 따라 사업성과목표 달성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100) 국회 예산정책처, 『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상)』, 2010. 8., 4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프로그램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첫째, 정책적으로 독립성을 지닌 최소단위이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기능/프로그램/활동의 수직적 위계구조 속에서 단일관리자에 의해 책임이 부여되고 분명한 구별이 가능한 목표를 갖는 독립성을 지닌 최소단위이어야 한다. 둘째, 동일 유형의 그룹조직 단위이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기능·정책 및 성과와의 관계구조를 가져야 한다. 프로그램은 정책의 산출·투입비용, 운영목표가 관리되고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본단위이다.”

【 성평등정책관과 고용평등정책관의 프로그램 총괄표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A)		
[1200]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92,793	107,455	107,455	105,293	129,909
	[1231] 정책협의및평가			4,272	4,258	4,258	4,125	4,553
		[11] 일반회계	[320]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	308	318	318	286	732
		[11] 일반회계	[321]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3,964	3,940	3,940	3,839	3,821
	[1232] 성평등문화확산 및 국내협력네트워크 강화			1,309	3,082	3,082	1,284	10,556
		[11] 일반회계	[331] 성평등문화확산	735	671	671	605	1,239
		[11] 일반회계	[332] 여성사전시관	574	2,411	2,411	679	9,317
	[123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예산)			12,100	11,796	11,796	11,693	12,642
		[11] 일반회계	[34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12,100	11,796	11,796	11,693	12,642
	[1234]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74,756	87,713	87,713	87,447	100,203
		[39]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329]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74,756	87,713	87,713	87,439	100,203
	이체	[11] 일반회계	[31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	-	-	8	-
	[1235]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예산)			356	606	606	744	1,955
		[11] 일반회계	[329]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356	606	606	550	1,006
	이체	[11] 일반회계	[33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	-	-	194	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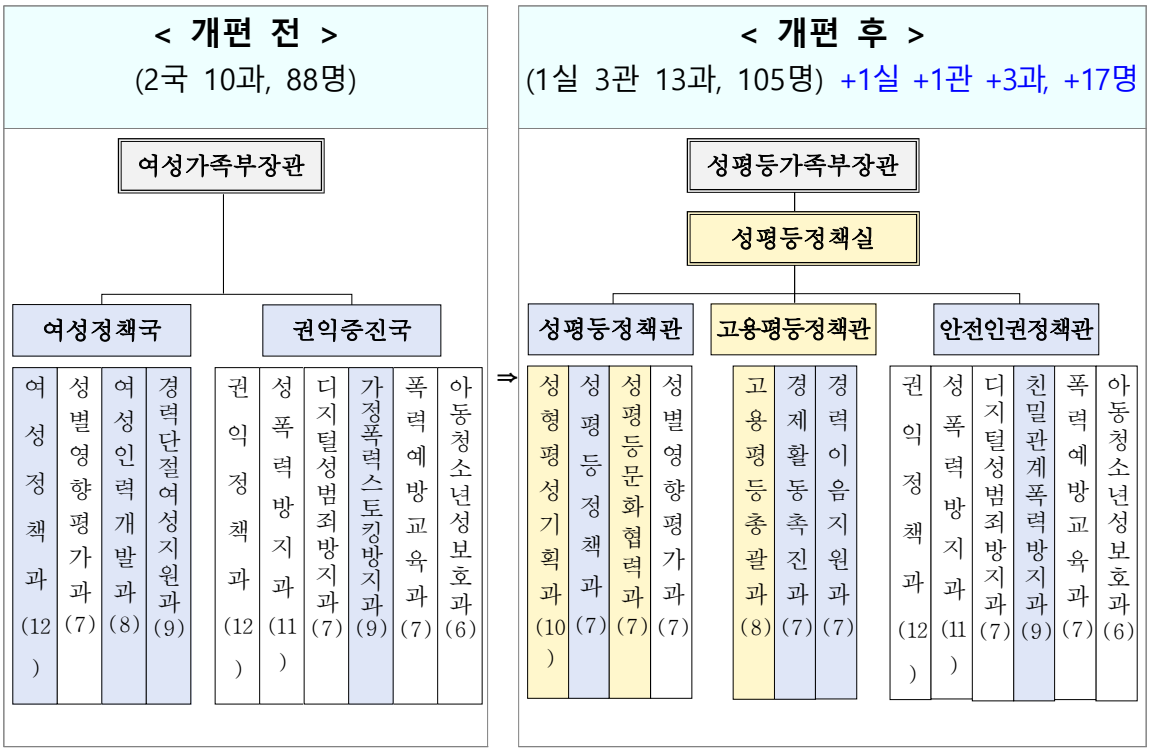
자료: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5개의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연혁을 살펴보면, 2025. 10.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되어 있음. 당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고용노동부 소관의 여성고용정책 부문[101]이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되었음.

성평등가족부는 그에 따라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평등과 폭력대응 기능을 연계하기 위하여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였고, 성평등정책실에는 기존 여성정책국과 권익증진국을 각각 개편한 성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과 신설된 고용평등정책관을 소속으로 두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상이한 성격의 세부사업들을 동일한 프로그램하에 편성한 것임.

【 성평등정책실 개편 전후 조직도 】



(신설 : , 개편 :)
자료: 성평등가족부

1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일부만 소관을 변경함

이러한 예산 편성은 성평등정책관과 고용평등정책관의 업무 목표와 내용이 정책적으로 구별되어 성과를 달리 평가해야 하는 점, 안전인권정책관은 같은 성평등정책실에 소속된 조직임에도 소관 예산이 여성·아동인권보호 프로그램(2100)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청소년가족정책실 소속의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 역시 각각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2200)’와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2300)’의 프로그램 사업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정책관 소관의 예산사업을 성평등정책관 소관의 예산사업과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다) 고용평등정책관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고용평등정책관의 예산사업 성과지표는 2025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도 고용평등정책관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현황 】

(단위: 건, 점, %)

세부사업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일반회계)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타 취업지원서비스 연계건	10,843	16,913
	새일센터 집단상담 수료자 만족도	86.9	88.2
	15~64세 고용률	69.5	69.8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세)	60.8	64.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30~40대 여성고용률	69.0	70.7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율	76.8	77.0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	168,600	171,439

자료: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고용평등정책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첫째,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일반회계)(1234-311)은 2025. 10.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타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건수'와 '새일센터 집단상담 수료자 만족도', '15~64세 고용률'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성과지표 중 ‘새일센터 집단상담 수료자 만족도’는 수료자의 주관적인 체감도를 기초로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응 편향[102]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15~64세 고용률’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기적으로 생산하는 통계지표로서 동 사업 외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변하는 지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 사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둘째,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1235-329)은 4개의 내역사업(미래 여성인력양성 기반 마련,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여성인재풀 확충,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으로 이루어진 세부사업인데, ‘15~64세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여성경제활동참여율도 여성고용률과 마찬가지로 동 사업 외의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결과값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봄.

셋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1235-330)은 2025. 10. 고용노동부 세부사업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의 내역사업이었다가 성평등가족부의 세부사업으로 이체·편성된 것이고, ‘30~40대 여성 고용률’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

102) ‘순응 편향’이란 응답자가 자신의 참된 선호와 관계 없이 ‘동의’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성을 의미함(이현우, “설문조사에서 순응 편향에 관한 실증연구”, 「연구방법논총」, 2025,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192면).

그런데 ‘30～40대 여성고용률’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기적으로 생산하는 통계지표에 해당하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을 높이려는 동 사업의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의 일·가정 양립지원과 고용 부문의 성별격차 해소라는 세부사업의 목표를 고려할 때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이라는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에 ‘30～40대 여성고용률’이 성과지표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20대 여성과 50대 여성의 고용률도 성과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매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근로자 현황 분석보고서’에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변화 추이를 포함하여 발간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여성고용률이 상승하여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더라도 동 사업의 시행 효과만으로 여성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될 수는 없음. 또한 분석보고서에 포함된 여성 고용 관련 변화율 추이는 적용대상 사업장 전체의 여성고용 수준을 제시하는 것에 그칠 뿐 여성고용기준 미달 사업장이 시행계획을 이행하여 실제로 여성고용을 개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어서 동 사업의 시행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직접적으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적극적고용개선 조치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므로, 고용평등공시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동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규 성과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1235-330)

○ 동 사업은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고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명단공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나,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명단 공표된 사업주 240개사 중 62개사가 2회 이상, 5개사가 5회 이상 반복 공표되는 등 그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음. ○ 명단공표 외의 제재 중 가족친화인증 배제도 같은 기간 240개사 중 13개사(5.4%)에만 적용되고 공공부문에 편중(13개사 중 9개사)되는 등 사업주의 인증 취득 의사에 따라 작동하여 반복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한바,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제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반복 공표 사업주의 실질적 여성 채용을 유도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은 기업의 여성 고용 수준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을 지도하며, 고용평등에 대한 연구·조사·교육·홍보 등을 통해 여성고용의 양적·질적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도의 내역사업을 두고 있지는 않음.[103]

2025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억 6,200만원 중 1억 9,400만원이 집행되고 6,800만원은 불용되어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74.0%임.

- 동 사업에 2025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총 10억 200만원인데, 2025. 10. 1.자로 고용노동부에서 이체된 예산현액이 2억 6,200만원이며, 총 집행률은 총 예산액 대비 93.2%임.

103)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에서 내역사업으로 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원, ② 성별근로공시제 운영으로 나뉘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원 결산 명세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원	-	-	-	262	262	194	-	68	949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동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AA) 지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여성고용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남녀임금격차의 개선을 유도하여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직장 내 고용평등을 촉진하려는 목적의 사업임.

- 동 사업의 적용대상 기업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민간기업임.

동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사회로 돌입함에 따라 여성 인력의 적극적 활용 필요성이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0일 구「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104)]

동 사업은 ① 대상 사업장이 매년 4월 30일까지 남녀 근로자 및

104)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7822호로 2005. 12. 30. 일부개정되고, 2026. 3. 1. 시행된 것)의 개정이유 참조.

임금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단계, ② 해당 산업별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의 각 업종 평균 70%(이하 “여성고용기준”이라 함)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이하 “시행계획서”라 함)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시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서류의 내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단계, ③ 시행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면, 이를 평가하여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되면서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의 사업주 명단을 공표하는 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음.[105]

---

1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① 제1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이라 한다)에 표창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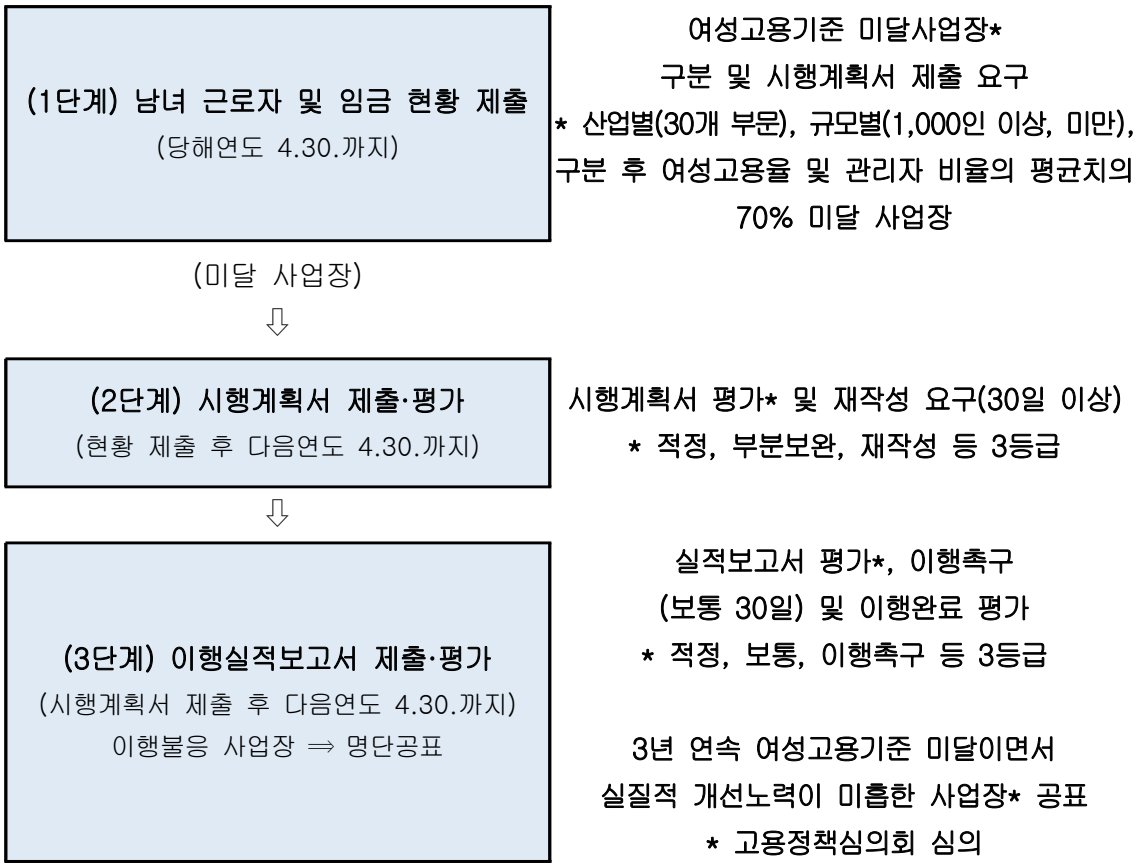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및 제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사업 절차 】



자료: 성평등가족부

적용대상 사업장은 2025년 기준으로 총 2,711개사로 전년 대비 59개사(2.2%)가 증가하였으며, 여성고용률은 39.0%, 여성관리자율은 22.8%로서 각각 전년 대비 0.5%p, 0.3%p 증가하였음.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내용 및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최근 5년(2021~2025)간 적용대상 사업장 현황 】

(단위: 개사)

구분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민간 기업	계
2021	352	154	2,047	2,553
2022	353	156	2,038	2,547
2023	351	158	2,089	2,598
2024	331	160	2,161	2,652
2025	335	164	2,212	2,711

자료: 성평등가족부

【 최근 5년(2021~2025)간 여성근로자(관리자) 고용 현황 】

(단위: 명, %)

구분	전체 근로자	여성근로자 (평균 비율)	전체 관리자	여성관리자 (평균 비율)
2021	3,860,781	1,439,906(37.8)	330,788	70,736(21.3)
2022	3,954,949	1,489,403(38.1)	339,591	75,119(21.8)
2023	4,097,891	1,546,245(38.3)	346,032	77,332(22.1)
2024	4,206,044	1,608,145(38.5)	346,529	79,988(22.5)
2025	4,282,552	1,655,918(39.0)	360,486	88,196(22.8)

자료: 성평등가족부

【 연도별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추이 】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기준 미이행 사업장 수를 살펴보면, 여성근로자 비율이 미달된 사업장 수는 3개사, 여성관리자 비율이 미달된 사업장 수는 18개사,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모두 미달된 사업장 수는 20개사였으며, 총 미이행 사업장 수는 41개사로 나타났음.[106]

한편 동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4[107]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관 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표창을 할 수 있고, 우수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성평등가족부는 동 사업을 통하여 이행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과 명단공표 후보 중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 컨설팅을 제공하고, 2년 연속 선정된 미이행 사업주로서 명단공표된 대상으로 통합지원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음.[108]

106) **<최근 4년(2022~2025)간 미이행 사업장 지표 내역>**

(단위: 개사, %)

구분	미이행 사업장 수	요건별 미달된 사업장 수		
		여성근로자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	모두 미달
2022	33	3	12	18
2023	43	2	13	28
2024	32	4	10	18
2025	41	3	18	20

자료: 성평등가족부

1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① 제1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이라 한다)에 표창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사업주의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단은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임.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09]에 따르면,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 미달이면서 실질적 개선의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부처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08) <202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지원 사업>

구분	지원 사항	사업 대상	수행실적
기초 컨설팅	여성고용기준 미달 유형에 따른 문제점 진단 및 CEO인터뷰 의무 실시	(자율)AA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8개사
		(의무)이행보완계획서 평가결과 '이행노력미흡' 등급 사업장	74개사 (29개사 불참)
		(의무)명단공표 후보 사업장 중 신규 사업장	3개사 (3개사 불참)
통합 지원 서비스	내부 현황을 바탕으로 맞춤형 여성고용환경 개선과제 선정 및 도입을 지원	(자율)여성친화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사업장	30개사
		(의무)2년 연속 AA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선정 사업장	8개사

자료: 성평등가족부

1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내용 및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명단 공표의 내용·방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려는 경우 명단 공표 대상 사업주에게 공표 결정 사실, 공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주의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 이 경우 해당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해당 연도의 전체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 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해당 업종의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

④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성평등가족부의 홈페이지에 6개월 간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명단공표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과되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명단공표된 사업주가 여성 채용을 늘리지 않는 이상 동 사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강제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2017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명단공표된 사업주 총 240개사 중 2회 이상 공표된 사업주가 62개사로 나타났으며, 3회 이상 공표된 사업주는 27개사로 나타났음. 더욱이 4회 이상 공표된 사업주는 10개사, 5회 이상 공표된 사업주는 5개사, 6회 이상 공표된 사업주는 3개사, 7회 이상 공표된 사업주도 2개사로 집계되었음.

【 2017~2025년도 기간 동안 5회 이상 명단공표된 사업주 】

법인명 (업종)	공표 년도	총 횟수	미이행 부분
○○산업(주) (화학 공업2)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5	7회	총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0%였고, 동 기간 내에 여성 관리자 채용은 늘지 않았음.
㈜한국○○○ (사업시설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2018 2019 2020 2022 2023 2024 2025	7회	총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0%였고, 동 기간 내에 여성 관리자 채용은 늘지 않았음.
㈜디○○씨 (중공업1)	2018 2019 2020 2022 2023 2024	6회	총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0%였고, 동 기간 내에 여성 관리자 채용은 늘지 않았음.
○○전기㈜ (중공업1)	2019 2020 2022 2024 2025	5회	총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0%였고, 동 기간 내에 여성 관리자 채용은 늘지 않았음.
대한○○㈜ (화학공업2)	2017 2019 2022 2023 2024	5회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기준율에 미치지 못하였고, 여성 관리자의 비율도 0%였으며, 동 기간 내에 여성 채용 비율에 변동이 없었음.

자료: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17년도부터 2025년도의 기간 동안 5회 이상 명단공표된 사업주는 공통적으로 총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가 전혀 없었고, 명단이 공표된 이후로도 여성 관리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명단공표된 사업주에 대하여 실질적인 여성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는 명단공표된 사업주에 대하여 국가계약의 경쟁입찰 자격심사에서 2점을 감점하고,[110] 명단공표된 사업주를 가족친화인증 대상에서 배제하며,[111]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기준 미달 사업주에 대하여도 가족친화인증 심사 시 2점을 감점[112]하고 있으므로 충분하다고 설명함.

- 가족친화인증제 배제는 ① 인증을 신청한 사업주에 대한 인증 거부와 ② 인증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인증 취소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감점과 배제는 명단공표된 사업주 또는 미달 사업주가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하거나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여성 채용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데 그치고, 그러한 유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강제수단으로서 한계가 있음.

---

1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7호로 2026. 1. 2. 개정 및 시행된 것) 제6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사업자(사업주)에 대하여 2점 정도를 감점하는 것으로 나타남.

111) 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제2026-59호) 참조.

112)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6-5호로 2026. 3. 5. 개정 및 시행된 것) 참조.

아울러 2017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명단공표된 240개사 중 가족친화인증제에서 배제된 사업주는 13개사(5.4%)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5회 이상 반복하여 명단 공표된 사업주는 가족친화인증 배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인증 거부 총 5건과 인증 취소 총 8건 중 민간기업은 각각 2개사로 집계되어 가족친화인증배제가 공공부문에 편중되어 있음이 드러났음.

- 2025년 동 사업의 적용대상 사업장 2,711개사 중 공공부문은 499개사로 18.4%에 불과한데, 가족친화인증제에서 배제된 사업주 총 13개사 중 공공부문은 9개사로 약 6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2017~2025년도 기간 동안 가족친화 인증배제 현황 】

구분(총 건수)	사업주	
	유형	건 수
인증 거부(5건)	지방공사·공단	2
	공공기관	1
	민간기업	2
인증 취소(8건)	지방공사·공단	4
	공공기관	2
	민간기업	2

자료: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가족친화인증 배제가 동 사업에 따른 여성고용기준 위반의 반복성이 아니라 사업주의 인증 취득 의사에 따라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러한 유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시사함.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제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명단공표된 사업주의 여성 채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확대 등을 포함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안전인권정책관

가. 일반회계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2131-341)

○ 청소년작품공모전 출품작 수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해당 공모전이 기림의 날 기념식과 연계 운영되면서 청소년들의 실제 참여율을 결정짓는 일정이 단축되어 목표치 달성이 미진하므로, 기림의 날 기념식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청소년들의 창작·참여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는 조사대상자가 5명에 불과하여 일부 응답자의 만족도가 전체 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문제가 있어 성과지표 운영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가) 개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생활안정지원·피해자 지원사업·피해자 기념사업 및 기타 경상경비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0억 4,500만원 중 9억 2,3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045	1,045	-	-	1,045	923	-	122	980
·생활안정지원	555	555	-	-	555	493	-	62	454
·피해자 지원사업	10	10	-	-	10	-	-	10	10
·피해자 기념사업	320	320	-	-	320	313	-	7	320
·기타 경상경비	160	160	-	-	160	117	-	43	170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성과지표 달성도 저조 및 성과지표 운영방식 변경 필요

동 사업은 성과지표로 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작품 공모전 출품작 수, ②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만족도 등 2개를 설정하고 있음.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성과지표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공모전 출품작 수 (단위: 건)	목표	1,000	1,000	1,000	887	76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작품공모전 출품작 수(건)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1,051	1,132	642	616	-		
	달성도	105.1	113.2	64.2	69.4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74	74	74	78	81	성평등가족부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점수 (100점 만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실적	74	84	82	76	-		
	달성도	100	113.5	110.8	92.7	-		

자료: 성평등가족부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도를 보면 두 성과지표 모두 실적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첫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작품공모전 출품작 수 성과지표는 사업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일정이 단축되어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저하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됨.

해당 사업은 청소년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과 인권·평화에 대한 의식 제고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고·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만 24세까지)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는 사업임.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작품공모전 출품작 실적을 보면, 2022년 및 2023년은 목표 대비 실적이 100% 넘는 달성도를 보인 반면, 2024년부터는 60%를 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음.

【 3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작품공모전 실적 】

(단위: 백만원)

연도	공모기간	접수량	사업예산
2024	’24.5.8.~ ’24.6.28.	642	100
2025	’25.5.9.~ ’25.6.30.	616	100
2026	’26.5.13.~ ’26.6.30.	626	100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2023년까지는 청소년작품공모전을 기림의 날 기념식과 별개로 개최하면서 작품 공모기간을 5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로 하고 방학 기간을 포함하여 접수하였으나,

2024년부터 기림의 날의 의미를 살리고 수상자의 영예를 높이고자 기념식 당일인 8월 14일에 맞추어 통합 추진하면서 공모기간을 6월 말까지로 3개월 가까이 단축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방학 기간이 제외되어 전체 접수량이 감소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청소년작품공모전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탐구·표현하도록 하여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기념사업의 대중적 참여를 확산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공모전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해당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과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기림의 날 기념식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청소년들의 참여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만족도 성과지표는 운영 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해당 성과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점수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5년 성과지표

달성도는 92.7로 지난 3년간 100 이상을 달성해온 수치와 비교하여 소폭 감소하였음.

이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로 인해 조사 대상 표본 수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2025년 6명, 2026년 8월 기준 5명 생존),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의견이 전체 만족도 조사 결과에 과다 대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며 고령인 노인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사업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밀착형 맞춤 지원과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임.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점차 자연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성과지표는 소수 응답자가 과다 대표되어 사업의 전체적 성과나 서비스 질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의 실제 성과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체지표의 개발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2136-318)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기관운영출연금에 대한 규정만 있고 사업출연금의 근거가 미흡하므로, 사업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출연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위 법령에만 있어 그 근거가 다소 미흡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수행 중인 맞춤형 지원사업은 성평등가족부가 직접 수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2131-341)과 유사함에도 사업이 각각 편성·집행되고 있어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동 사업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113]의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운영비 및 사업비 등 총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연구 사업을 수행함.

2025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47억 8,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113)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 2025년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3,698	14,788	-	-	-	14,788	-	-	16,618
·인건비	6,898	6,898	-	△33	-	6,865	-	-	7,661
·운영비	2,006	2,006	-	33	-	2,039	-	-	2,595
·사업비	4,794	5,884	-	-	-	5,884	-	-	6,362

자료: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을 비목별로 보면, 예산현액 기준 기관운영출연금(350-01) 89억 400만원과 사업출연금(350-02) 58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 목별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3,698	14,788	-	-	-	14,788	-	-	16,618
·기관운영출연금(350-01)	8,904	8,904	-	-	-	8,904	-	-	10,256
·사업출연금(350-02)	4,794	5,884	-	-	-	5,884	-	-	6,362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사업출연금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가재정법」 제12조[114]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의 법적 근거인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6항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운영출연금의 근거만 있고 사업출연금에 관한 근거는 미흡함.

【 「국가재정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출연근거 규정 】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5.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114)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연구사업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출연의 법적 근거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15]에서도 '기존의 일반법령 출연금(350-01목)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분리하여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출연금을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여 사업출연금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116]

따라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사업출연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117]

115)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60쪽.
116) 일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2조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2조(출연금)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생 략)
117) 참고로, 성평등가족부의 일반회계 사업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1233-341),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2335-352)도 기관운영출연금(350-01)과 사업출연금(350-02)이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출연금의 법적 근거가 미비함.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⑤ (생 략)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필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의 사업출연금(350-02)으로 추진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 사업은 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조사연구, 기록, 홍보 사업,[118] ②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국내외 교류 및 유네스코 지원 사업,[119] ③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이하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 함)[120] 등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부 조직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음.

2025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8억 8,300만원 중 18억 2,700만원이 집행되고 5,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자연감소[121]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비 불용액임.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⑥ (생 략)
⑦ 국가는 이행관리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18)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아카이브814 및 자료센터 운영 및 웹진을 발간 지원함.
119) 일본군 '위안부' 관련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및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함.
12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상생활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상담 모니터링 등을 제공함.
121) 2026년 8월 현재 생존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총 5명임.

【 2025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	1,883	-	1,883	1,827	-	56	97
· 일본군‘위안부’문제 조사연구, 기록, 홍보	946	-	946	946	-	-	100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국내외 교류 및 유네스코 지원	639	-	639	639	-	-	100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맞춤형 지원)	298	-	298	242	-	56	81

자료: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122]으로,

12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 ④ (생 략)
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5.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5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고유목적 사업 대다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임.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률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진흥원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5항 제9호에서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위임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2021년 동법 시행령[123]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별도로 제정[124]되어 있는바, 성평등가족부는 이에 따라 일반회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2131-341)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3)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8조(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3.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물품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

12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으로 직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만을 개정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둘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출연사업으로 수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 사업 중 맞춤형 지원사업과 성평등가족부가 직접 수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2131-341)이 유사하여 사업 추진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사업은 건강치료 지원(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지원 등), 맞춤형 지원·정서적 지원(일상생활, 환경개선, 장제비 지원, 직접 방문, 생활 모니터링 등)이 있는데, 해당 사업은 성평등가족부가 일반회계로 직접 수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2131-341) 중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및 특별보전금 지원과 그 성격이 유사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2131-341)은 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지원금 및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 ②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비용을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사업, ③추모사업, 청소년작품 공모전 등을 수행하는 피해자 기념사업, ④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총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0억 4,500만원 중 9억 2,3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045	1,045	-	-	1,045	923	-	122	980
·생활안정지원	555	555	-	-	555	493	-	62	454
·피해자 지원사업	10	10	-	-	10	-	-	10	10
·피해자 기념사업	320	320	-	-	320	313	-	7	320
·기타 경상경비	160	160	-	-	160	117	-	43	170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 중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금, 간병비 및 특별보전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업임.

생활안정지원금은 매월 정액(2025년 기준 1인당 약 188만원)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고, 간병비는 피해자가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하면 지원한도 내에서 사후에 정산·지원하며(월 평균 344만원), 특별지원금은 처음 생활안정지원자로 등록되면 일시금으로 4,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생활안정지원 사업의 2025년 지원내역 】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구체적 지원내용</th><th>예산</th><th>집행액</th></tr>
<tr><td>◦ 생활안정지원</td><td></td><td>555</td><td>493</td></tr>
<tr><td>· 생활안정지원금</td><td>◦ 매월 정액으로 생활비 지원
- 2025년 기준 1인당 월 188만원</td><td>181</td><td>148</td></tr>
<tr><td>· 간병비</td><td>◦ 간병서비스 사용 후 비용을 신청하면 지원한도 내에서 간병비 지급
- 2025년 예산 기준 1인당 월평균 344만원
- 지원단가
<table>
<tr><td rowspan="3">구분</td><td colspan="3">1일 지원 한도</td></tr>
<tr><td rowspan="2">병원</td><td colspan="2">방문간병(시간제)</td></tr>
<tr><td>입주</td><td>방문</td></tr>
<tr><td>금액</td><td>214,000원</td><td>178,000원</td><td>143,000원</td></tr>
</table></td><td>331</td><td>345</td></tr>
<tr><td>· 특별지원금</td><td>◦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최초 등록 시 일시금으로 지급
- 2025년 기준 4,300만원</td><td>43</td><td>-</td></tr>
</table>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2131-341)의 생활안정지원은 기타보전금(310-04)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맞춤형 지원 사업은 2020년까지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125]하다가 2021년부터 한국여성

인권진흥원 내부 조직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출연금(350-02)으로 집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각 사업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특별히 분리하여 수행할 사유가 없어 보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 및 장제비 지원 등의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4.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5. 간병인 지원
6. 장제비 지원

②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및 장제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인 및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5) 2010년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단체(정대협, 나눔의집, 대구시민모임 등)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할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2013년, 2015~2018년 사업 수행,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14년, 2019~2020년 사업 수행)하였음.

이에 반해 예산은 생활안정지원금(제4호)과 간병인 지원(제5호)은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제3호)과 장제비(제6호)는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원의 사업주체 비교 】

지원내용	관할기관 (사업주체)
생계급여(제1호), 의료급여(제2호)	보건복지부 (시·군·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제3호), 장제비(제6호)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생활안정지원금(제4호), 간병인 지원(제5호)	성평등가족부 (시·도)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26]에서도 중앙관서의 장이 출연사업에 대해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정비기준으로 '부처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폐지·비목전환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두 사업은 성평등가족부의 세부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더욱이 2026년 8월 기준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5명에 불과하여 사업대상자 규모가 작고, 모두 고령자여서 사업대상자의

126)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61쪽.

자연감소가 예상되므로 유사사업을 분리하여 집행할 경우 오히려 인력 운영이나 예산 집행상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지원 사업과 맞춤형 지원 사업의 통합 등 사업 추진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3)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2136-319)

○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에 설치해야 하는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가 지연되어,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인신매매등 신고접수,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대신 수행하고 있음.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법률과 괴리된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신매매등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신매매등[127]을 예방하고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 등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구조·지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조성하며,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을 통한 피해 신고접수, 응급조치, 피해자 판정, 피해자에 대한 취업·

127)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하 "아동·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법률·의료·생계·귀국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 구조·지원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임.

2025년도 사업은 인신매매 방지기반 조성과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등 총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억 100만원 중 3억 6,800만원이 집행되고 3,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도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401	401	-	-	401	368	-	33	533
·인신매매 방지 기반조성	167	167	-	-	167	158	-	9	296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234	234	-	-	234	210	-	24	237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미설치 문제

동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신매매 방지기반 조성'은 ①「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라 함) 제9조[128]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128)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조정을 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 ②피해자지원기관 협의체 운영, ③인신매매방지 홍보, ④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인신매매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고,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은 ①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129]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②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비(취업지원, 법률지원, 의료비, 생계지원, 귀국지원) 지급, ③인신매매등 관련 조사·연구,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임.

인신매매 등 범죄는 2019년 582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신매매등의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기준[130]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피해자 조기 발견·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였음.

---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9)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1. ~ 8. (생 략)

130)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 등

【 2019년~2024년 인신매매등 범죄 발생 현황 】

(단위: 건)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생건수	3,106	582	500	583	616	825	989

주) 국내 인신매매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국가통계포털(통계청)에서 인신매매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중 「형법」 위반(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13세미만 약취, 유인 등) 등 공표된 통계를 중심으로 추산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인신매매방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131](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함)을 두고, 피해자의 신속한 식별·보호와 인신매매등의 예방을 위해 시·도에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132](이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13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정책 개발·보급
4.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5.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7.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8.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업무

132)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②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1.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4.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업무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기능,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조사 및 연구, 정책 개발·보급 등 주로 거시적 정책을 수행하며,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 주로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함.

특히 「인신매매방지법」 제14조에 따르면,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 두고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판정하도록 하는 한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인신매매등의 피해자 식별 및 판정에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중점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데,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가 없으며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음.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아동권익사업 운영지침’에 한시적 인신매매등피해자확인서 발급 규정을 두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임시로 설치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피해자 심의·판정을 대행하며,

피해자 구조지원비 지급업무(의료비, 법률구조, 취업, 생계비 지원 등)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지역피해자보호기관 대행 업무 현황 】

업무내용	실적
인신매매 등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자확인서 발급신청자 현장조사(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협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상담전화 개설(1600-8248), 구조지원비(생계, 의료, 법률 등) 지원 • 상담전화 운영 : ('23) 39건(피해상담 5건) → ('24) 74건(피해상담 45건) → ('25) 70건(피해상담 43건) • 구조지원비 지원 : ('24) 28건 → ('25) 16건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23년) 1회, 3명→ ('24년) 3회,12명→ ('25년) 7회, 42명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처럼 법적 근거 없이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기능을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대행함에 따라, 지역에서 인신매매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조사가 실시되기 어렵고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이 원활하지 않는 등 피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를 대행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일례로 인신매매 관련 업무 증가량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개최횟수는 2023년 1회(피해자 확인서 발급대상자 3명)에서 2025년 7회(피해자 확인서 발급대상자 42명)로 증가하였으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관련 인력은 총 3명에 불과하며, 이 중 2명은 겸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133]

【 2023-2026년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개최실적 등 】

(단위: 건, 명)

구 분		총 발급 건수	개최 횟수[1]	성별		국적		피해유형		
				남성	여성	내국인	외국인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계	소계	90	15	47	43	16	74	23	63	4
	사례판정	64	15	33	31	0	64	11	49	4
	범죄피해자	26	-	14	12	16	10	12	14	0
2023	사례판정	3	1회	0	3	0	3	0	0	3
2024	사례판정	12	3회	3	9	0	12	5	6	1
2025	사례판정	42	7회	27	15	0	42	5	37	0
2026	소계	33	4회	17	16	16	17	13	20	0
	사례판정	7	4회	3	4	0	7	1	6	0
	범죄피해자[2]	26	-	14	12	16	10	12	14	0

주1)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개최 횟수를 의미함

2) 「인신매매방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찰청 등을 통해 인신매매등범죄피해가 확인된 경우 사례판정 불필요

자료: 성평등가족부(2026년 7월 기준)

또한 2025년에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추가 인력 채용을 위해 편성된 인건비는 인력 채용이 어려워 미집행되었고, 해당 예산은 사례판정위원회 유관기관 회의 등 다른 사업비로 집행되었음.

133) 사업을 총괄하는 총괄책임자(본부장) 1명,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업관리자 1명, 위원회 운영 업무를 맡는 팀원 1명 등 총 3명임.

【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변경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현액	변경 금액	집행액	변경 사유
중앙권익 피해자 보호기관 운영	인건비	79	57	△34	23	◦ 인력 미채용에 따른 불용예상액 조정(감)
	운영비	5	2.8	△0.8	2	
인신매매등방지 정책지원		50	69.2	83.8	153	◦ 조정(증) 사유 -정보제공 리플렛 등 제작, 홍보: 48 -반대의날 홍보 이벤트 : 18 -사례판정위원회 유관기관 회의 등 : 17 -기타 교육 등 : 0.8
구조지원		100	72	△49	23	◦ 구조지원비 미신청에 따른 불용예상액 조정(감)

자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5년도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 수요조사를 2회 실시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기관 설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매매·성착취·노동착취 등을 포괄하는 인신매매 행위의 특성 상 여성·인권·노동·외국인 등 다양한 업무영역을 다루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인력과 수행기관을 확보하기 어려워 설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설명임.

【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 추진 현황 】

○ 2022년 ■ 시·도 순회 설명회 (’22.2월), 수요조사 공문 시행(’22.7월, ’22.10월, 23.3월) ○ 2023년 ■ 중앙-지방정책협의회(행안부차관 및 시도 부단체장 참석) 상정 협조요청(’23.2.13.) ■ 시·도(경기, 부산, 전북, 제주 등) 개별접촉 협의(’23. 4~5월) ■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수행기관 공모(’23.5.16.~6.16.) ○ 2024년 ■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관계부처 및 지자체 업무협의(’24.3.19.) * 행안부(자치행정과), 서울시 및 경기도 여성부서 참석 ■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수요조사(’24.4.1~4.8) ■ 경기도 이민사회국 및 외국인인권지원센터 관계자 회의(‘24.12.3.) ○ 2025년 ■ 경기도청 방문 이민사회국 관계자 대면 협의 (‘25.3.31.) ■ 지자체 대상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수요 조사 (’25.4.1.~4.4.) ■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추가 수요 조사 (’25.5.8.~5.15./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 ■ 중앙-지방정책협의회(행안부장관 및 시도 부단체장 참석) 상정 협조요청(’25.9.12.)

자료: 성평등가족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심의·판정,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나, 법률과 괴리된 제도 운영 상황은 조속히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성평등가족부는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 성평등가족부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임.[134)]

다)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미설치 문제 해결 필요

「인신매매방지법」 제33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지원시설 관련 조항 】

제33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지원시설: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지원시설: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아동·청소년지원시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4. 외국인지원시설: 외국인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5.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시설을 퇴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④ 지원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지원시설: 1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지원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아동·청소년지원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134) 참고로, 법률 소관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2204627호 「인신매매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대표발의)」가 성평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의안번호 제2219659호 「인신매매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대표발의)」가 2026.7.1. 발의되었음.

4. 외국인지원시설: 3개월(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5.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인신매매방지법」 제34조[135]에 따르면, 지원시설은 피해자 등[136]의 보호 및 숙식을 제공하고, 긴급구조를 지원하며,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증인신문 동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시설은 설치·지정된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성된 예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됨.

---

13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3.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4.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5.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6.「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7. 피해자등을 위한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9. 피해자등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치료비·생계비 등 연계
10.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업무
11.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장애인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아동·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외국인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0. 1.>
1. 자활공동체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136)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미성년인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이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137])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인신매매등[138]의 행위는 성매매, 성폭력, 노동력 착취, 아동학대

13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이하 생략)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이하 생략)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38)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하 "아동·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지원시설이 아니더라도 각종 시설에 수용된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음.[139]

그러나 「인신매매방지법」에서 지원시설의 설치를 별도로 규정한 목적은 인신매매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인바, 다른 목적의 보호시설을 우회하여 활용하는 방식은 인신매매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하위법령에 지원시설에 대한 지정 기준 및 운영기준이 이미 마련되었음[140]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치·지정된 지원시설이 없다는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139) 참고로 「인신매매방지법」에서는 각종 시설의 종사자가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신고의무)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인신보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
7.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하 생략)

140)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신청서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시설을 지원시설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 지정서를 해당

것은 법률 제정 취지에 부응하려는 부처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됨.[141]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지원시설 설치·지정을 적극 추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해당 사실을 관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정원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원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41)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인신매매등피해자는 현재 타 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나. 양성평등기금

1)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2159-432)

○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민간경상보조(320-01)와 민간위탁(320-02)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나 사업수행체계를 이원화할 필요성이 적고, 무료 법률구조기관 중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한국여성변호사회의 경우 동일한 사업예산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 비목으로 동시에 편성·집행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미흡하므로 집행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등을 운영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의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하거나 주거공간을 지원하며,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가정폭력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운영,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치료회복 프로그램·의료비 지원,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등 총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31억 6,700만원 중 427억 1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6,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3,167	43,167	-	-	43,167	42,701	-	466	46,261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7,940	7,940	-	-	7,940	7,940	-	-	8,446
· 가정폭력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운영	12,937	12,937	-	-	12,937	12,822	-	115	13,773
·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	712	712	-	-	712	712	-	-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3,144	13,144	-	-	13,144	12,944	-	200	14,261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1,155	1,155	-	-	1,155	1,153	-	2	1,342
·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853	1,853	-	-	1,853	1,853	-	-	1,853
· 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3,195	3,195	-	-	3,195	3,050	-	145	3,995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2,231	2,231	-	-	2,231	2,227	-	4	2,591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 비목 일원화 등 사업 추진체계 개선 필요

내역사업인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은 법률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무료로 형사 및 민사·가사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및 상담 등을 지원하여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5개 법률구조 전문기관이 무료 법률지원을 수행함.

2025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1억 9,500만원 중 실집행액은 30억 5,000만원(사업수행기관이 실제 사업에 집행한 금액 30억 3,800만원, 조달수수료 1,200만원)임.

【 2025년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성평등가족부			사업수행기관[1]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3,195	3,050	145	3,050	3,050	-	-	3,995

주1) 사업수행기관의 교부액과 실집행액에 성평등가족부가 조달청에 지급한 조달수수료 1,200만원을 포함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 사업 실적을 보면, 총 2,492건의 무료 법률구조와 12,841건의 상담 등을 수행하여 총 15,333건의 무료 법률지원을 수행하였음.

【 최근 3개년 무료 법률지원 사업 실적 】

(단위 : 건)

구 분	처리건수 (①+②)	구조건수 (①)			상담 등 기타 (②)
		계	민·가사	형사	
2023년	12,074	2,136	1,573	563	9,938
2024년	11,872	2,168	1,560	608	9,704
2025년	15,333	2,492	1,708	784	12,841

자료: 성평등가족부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5개 기관이며, 2025년 기관별 실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984건, 한국성폭력위기센터 638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37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286건, 한국여성변호사회 247건임.

【 최근 3개년 기관별 무료 법률구조 실적 】

기관명	연도	구조건수		
		계	민/가사	형사
대한법률 구조공단	**'25**	**984**	**984**	**-**
	'24	803	803	-
	'23	917	917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25**	**286**	**195**	**91**
	'24	185	122	63
	'23	173	107	66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25**	**337**	**335**	**2**
	'24	432	431	1
	'23	400	397	3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25**	**638**	**151**	**487**
	'24	625	183	442
	'23	646	152	494
한국여성 변호사회	**'25**	**247**	**43**	**204**
	'24	123	21	102

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는 민·가사소송을 지원하고, 형사사건은 국선변호사를 활용하여 무료로 피해자를 지원함.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4년부터 사업을 수행하였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해당 사업은 2023년까지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부터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142]에 대한 지원금인 15억 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320-01) 사업으로, 그 외 다른 기관에 대한 지원금인 16억 9,000만원은 민간위탁(320-02)으로 구분하여 편성됨.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부터 비목을 변경(민간경상보조 → 민간위탁)하여 편성한 것은 민간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을 감축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2025년 기관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간경상보조 6억 5,000만원,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에 민간경상보조 5억 500만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민간위탁사업비 4억 700만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민간경상보조 1억 5,000만원 및 민간위탁사업비 9억 5,000만원,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민간경상보조 2억원 및 민간위탁사업비 2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142) **「법률구조법」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025년도 기관별·비목별 실제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기관명	민간경상보조(320-01)				민간위탁사업비(320-02)				합 계[1]		
	예산액	교부액	실 집행액	실 집행률	예산액	교부액	실 집행액	실 집행률	교부액	실 집행액	실 집행률[2]
대한법률구조공단	650	650	650	100	-	-	-	-	650	650	100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505	505	505	100	-	-	-	-	505	505	100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	-	-	-	450	407	407	100	407	407	100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150	150	150	100	950	896	896	100	1,046	1,046	100
한국여성 변호사회	200	200	200	100	290	230	230	100	430	430	100
합 계	1,505	1,505	1,505	100	1,690	1,533	1,533	100	3,038	3,038	100

주1) 기관에 교부한 금액 및 실집행액은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
(조달수수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00만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700만원, 한국여성변호사회 200만원)
2) 실집행률은 교부액 대비 실집행액을 의미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처럼 민간기관에 대한 보조 축소라는 비목 변경 취지와 다르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제외한 4개 기관에 모두 보조금이 지급되고,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동일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사업비가 동시에 편성·집행되었음.

이와 같이 비목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경우 기관별 사업 지원금액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의 정산 및 사후관리도 어려워져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예산안부터 해당 사업의

비목을 민간경상보조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임. 민간경상보조로 일원화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할 경우 민간위탁 계약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기관도 낙찰차액(부가가치세 포함)이 발생[143]하게 되어, 예산 일부를 폭력피해자 법률구조 사업에 활용하기 어렵기에 민간경상보조로 통일하여 편성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또한 민간경상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상 법률구조법인으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144] 외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법률상담 등 지원기관으로 지정고시하였음.[145]

---

1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가격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포함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게 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①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 5. (생 략)
②(생 략)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14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4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46]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인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시행 2026. 4. 30.]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6-10호, 2026. 4. 13., 제정] [별표 1]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목록

연번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사무실)	지정일자
1	한국성폭력위기센터	113-82-049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5길 5, 논현빌딩 303호	02-883-9285	2026.4.30.
2	한국여성변호사회	214-82-1415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4층 411호	02-6959-9965	2026.4.30.

14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정책관

가. 일반회계

1)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2231-311)

○ 청소년정책 연구개발 및 실태조사 사업은 2025년 연구용역 8건 중 7건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대부분 경쟁입찰 유찰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계약 절차상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계약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쟁계약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은 청소년정책 연구·분석·평가와 청소년 참여 확대, 인구감소지역 맞춤 지원을 통해 청소년정책의 기반과 집행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①청소년정책 연구개발 및 실태조사, ②청소년정책분석 평가센터 운영 등, ③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운영비 등, ④청소년참여기구 운영, ⑤청소년의 달 행사, ⑥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⑦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등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4억 2,700만원 중 23억 2,0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5.6%가 집행되었음.

【 2025년도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2,427	-	-	2,427	2,320	7	100	4,171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도 내역사업별[147] 집행실적을 보면, 위탁사업의 경우 15억 2,700만원 중 14억 2,000만원만이 집행되고, 보조사업의 경우 교부액 9억원 중 8억 8,600만원이 집행되어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98.4%임.

【 2025년도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 사업수행기관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사업 수행 방식	성평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	2,427	2,320	7	100	900	-	900	886	-	14
· 청소년정책 연구 개발 및 실태조사	직접	544	493	7	44	-	-	-	-	-	-
· 청소년정책분석 평가센터 운영 등	위탁	654	636	-	18	-	-	-	-	-	-
·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운영비 등	직접	8	6	-	2	-	-	-	-	-	-
·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위탁	321	285	-	36	-	-	-	-	-	-
· 청소년의 달 행사	보조	350	350	-	-	350	-	350	347	-	3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보조	550	550	-	-	550	-	550	539	-	11
·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	-	-	-	-	-	-	-	-	-	-

주)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사업은 2026년도 신규 사업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147) 2025년도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은 직접(위탁) 수행(예산액 15억 2,700만원)과 보조 사업(9억원)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

나) 청소년정책 연구용역의 계약 경쟁성 제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정책 연구개발 및 실태조사’는 청소년정책연구를 통해 청소년정책에 관한 방향 도출 및 과제 개발 등 실효성있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5년 정책연구개발 및 실태조사 내역사업 아래 수행된 연구용역은 8건이며, ①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위한 사전 연구, ②디지털시대 청소년정책 환경진단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③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④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 연구, ⑤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⑥2025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연구, ⑦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업개선 연구, ⑧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 발전 방안 연구임.

【 2025년도 청소년정책 연구용역 계약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연구용역명	예산액	계약액	계약 방식	계약 기간	비고	연구 수행 기관
1	2026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위한 사전 연구	30	27	제한 경쟁 → 수의 계약	’25.6.16~ ‘25.12.12	단일응찰로 유찰되어「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제1항 제1호 및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 전환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연번	연구용역명	예산액	계약액	계약방식	계약기간	비고	연구수행기관
2	디지털시대 청소년 정책 환경진단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	20	수의계약	'25.5.16~ '25.11.3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 가목2)에 따라 수의계약 전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20	18	제한경쟁 → 수의계약	'25.4.29~ '25.10.31	단일응찰로 유찰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 전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 연구	27	24	제한경쟁 → 수의계약	'25.7.21~ '25.1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11	201	제한경쟁 → 수의계약	'25.4.9~ '25.12.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2025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연구	181	161	제한경쟁 → 수의계약	'25.4.28~ '25.12.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업개선 연구	30	30	제한경쟁 → 수의계약	'25.9.17~ '25.12.15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8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 발전 방안 연구	25	23	제한경쟁	'25.9.8~ '26.2.28	2025년 말까지 시범사업(2년) 성과 분석 등 보고서의 신뢰성·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을 '26.2.28까지 연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도 청소년정책 연구용역 8건의 계약방식을 보면,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 발전 방안 연구’ 1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계약 경쟁성이 매우 낮음.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7건 중 6건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단일응찰로 유찰된 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148]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었고, 1건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149]를 근거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에 해당하여 직접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음.[150]

먼저 2021~2024년 청소년정책 연구용역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2021년과 2022년은 모든 연구용역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2023년은 8건 중 6건, 2024년은 10건 중 8건이 수의계약

14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 2025. 12. 30.>

1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150) 2025년도 청소년정책관 소관의 주요 직접계약 사업에서 수의계약 또는 경쟁 후 수의계약 전환 사례는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등 여러 세부사업에 걸쳐 나타나며, 이는 연구용역뿐 아니라 법정 위탁·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제외한 운영·위탁 성격의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으로 체결되었는바, 최근 5년간 청소년정책 연구용역은 경쟁계약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현저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2021~2024년 청소년정책 연구용역 계약 체결 현황 】

(단위: 건)

연도	연구용역 건수	계약방법				최종 수의계약 합계	최종 경쟁계약 합계
		수의계약	경쟁계약				
			일반경쟁 후 수의계약	제한경쟁 후 수의계약	제한경쟁		
2021	6	2	0	4	0	6	0
2022	6	1	1	4	0	6	0
2023	8	1	1	4	2	6	2
2024	10	2	1	5	2	8	2

주1)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 후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시도하였으나 유찰 등으로 최종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임

2) '최종 수의계약 합계'와 '최종 경쟁계약 합계'는 실제 계약 체결 결과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수의계약 체결은 법령상 허용된 예외사유 또는 제한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후속 절차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된 측면은 있으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경쟁성 확보를 위해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경쟁계약 방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디지털시대 청소년정책 환경진단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경우 계약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유로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금액에 관계없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151] 향후 성평등가족부는 일반경쟁에 의한 연구 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1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2231-312)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2025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은 전액 집행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집행률은 2024년의 77.8%보다 하락한 76.4%에 그쳐 집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별 집행실적의 편차도 나타나고 있음.

○ 아울러 바우처 신청률(91.0%)에 비해 실제 이용률(83.1%)은 낮아 지원 대상자의 신청이 실제 이용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가) 개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생리용품 지원사업(지자체 보조사업), ②바우처시스템 운영 사업(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 ③사업 운영(성평등가족부 직접 지출)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64억 2,500만원 중 164억 2,5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100% 집행되었음.

【 2025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6,425	-	±4	16,425	12,638	-	-	16,575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도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실적을 보면, 교부액 164억 2,500만원 중 126억 3,800만원이 집행되어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76.9%임.

【 2025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사업수행기관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성평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6,425	16,425	-	16,425	-	16,425	12,638	-	3,787
· 생리용품 지원	16,046	16,046	-	16,046	-	16,046	12,267	-	3,779
· 바우처시스템 운영	325	325	-	325	-	325	317	-	8
· 사업운영 등	54	54	-	54	-	54	54	-	-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생리용품 지원사업 실집행 부진 및 바우처 이용률 제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는 사업임.[152]

2022년부터 생리용품 지원 대상이 확대[153]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여성 청소년(9세부터 24세까지)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단가를 증액(2022년 월 12,000원 → 2023년 월 13,000원 → 2025년 월 14,000원)하여 지원하고 있음.

동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가 기본계획 수립·예산 교부 및 사업 평가 등 사업의 총괄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지자체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 접수·대상자 선정 및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152) 2016년에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11세에서 18세인 의료급여·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청소년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음.

15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5년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9세～24세 여성청소년

- (취약계층 9~10세) 19천명(지원대상)×88%(신청률)×168천원(연간지원액)×30~70%(보조율)× 50%(초경비율)
- (취약계층 11~24세) 213천명(지원대상)×88%(신청률)×168천원(연간지원액)×30~70%(보조율)

자료: 성평등가족부

최근 연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지원대상자 확대 이후 실집행률은 2022년 64.2%로 저조하였으며, 2023년 84.2%로 개선되었으나, 2024년 77.8%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음.

【 2022년～2024년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성평등가족부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불용액	실 집행률
2022년	12,232	-	12,232	12,232	-	12,232	12,232	7,848	4,384	64.2%
2023년	13,188	△700	12,488	12,488	-	12,488	12,488	10,514	1,974	84.2%
2024년	14,448	-	14,448	14,448	-	14,448	14,448	11,247	3,201	77.8%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도의 경우 교부액 160억 4,600만원 중 122억 6,700만원이 실집행되었는바, 실집행률이 76.4%로 2024년(77.8%)에 비해 1.4%p 감소하여 집행실적이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성평등가족부				사업수행기관(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불용액	실 집행률
16,046	16,046	16,046	-	16,046	16,046	12,267	3,779	76.4%

자료: 성평등가족부

다음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성평등가족부의 지자체 교부액 대비 실집행액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집행률과 불용액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지역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광주(82.9%), 세종(82.2%), 대전(82.1%), 부산(81.4%), 서울(79.2%)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충북(71.8%), 제주(72.3%), 강원(72.4%), 전북(72.9%), 경기(73.5%)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최고치(82.9%)와 최저치(71.8%) 간 격차는 약 11.1%p로 동일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집행 실적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5년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지자체별 집행률 】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A)	집행액(B)	불용액 (C=A-B)	집행률 (D=B/A)
합 계	**16,046**	**12,267**	**3,779**	**76.4**
서울	1,362	1,079	283	79.2
부산	1,270	1,034	236	81.4
대구	969	767	202	79.2
인천	1,214	929	285	76.5

광주	762	632	130	82.9
대전	563	462	101	82.1
울산	334	254	80	76.0
세종	73	60	13	82.2
경기	3,465	2,546	919	73.5
강원	536	388	148	72.4
충북	557	400	157	71.8
충남	658	505	153	76.7
전북	982	716	266	72.9
전남	733	546	187	74.5
경북	953	711	242	74.6
경남	1,312	1,019	293	77.7
제주	303	219	84	72.3

자료: 성평등가족부

불용액 규모는 경기 9억 1,900만원, 경남 2억 9,300만원, 인천 2억 8,500만원, 서울 2억 8,300만원, 전북 2억 6,600만원 순으로 크게 나타남. 특히 경기의 경우 실집행률이 73.5%로 하위권일 뿐만 아니라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 37억 7,900만원의 24.3%를 차지함.

이와 같이 지역별 집행실적의 편차와 집행 부진이 지속될 경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적기에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사업 목적의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지역별 집행 부진 원인과 월별 집행 추이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집행률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맞춤형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월별 바우처 신청 및 이용 현황 】

(단위 : 명, %)

구분	신청인원 (누계) (A)	이용인원 (누계) (B)	신청 후 미이용인원 (C)	신청인원 대비 이용률 (D=B/A)
1월	185,500	46,362	139,138	25.0
2월	191,728	66,958	124,770	34.9
3월	194,346	83,340	111,006	42.9
4월	196,582	97,498	99,084	49.6
5월	198,736	108,900	89,836	54.8
6월	200,884	119,061	81,823	59.3
7월	203,510	129,838	73,672	63.8
8월	205,901	139,036	66,865	67.5
9월	207,913	149,826	58,087	72.1
10월	209,510	155,750	53,760	74.3
11월	211,193	164,623	46,570	77.9
12월	212,979	176,905*	36,074	83.1

주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계관리시스템(DW) 추출 자료
2) 월별 신청인원 및 이용인원은 누계인원임(*12월 이용인원은 전출입 등으로 인한 인원 중복분을 제한 값)
자료: 성평등가족부

한편 월별 바우처 신청 및 이용 현황을 보면, 신청인원은 1월 185,500명에서 12월 212,979명으로 증가하였고, 실제 이용인원은 46,362명에서 176,905명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연말까지도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인원은 신청자 중 36,074명(16.9%)임.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우처 미이용 사유로는 카드발급 문제, 카드 분실, 주변 구매처 부족 등 실제 사용환경과 관련된 항목이 많음.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지원금을 나중에 사용하려고 했으나 시기를 놓쳤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또한 바우처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이용처나 이용방법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9.3%, “이용방법이 귀찮고 복잡함”이 8.0%를 차지하는데, 이는 바우처 미이용 및 저이용 문제가 단순히 수요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카드발급과 사용절차, 구매처 접근성, 사용기한 및 이용방법 안내 부족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줌.

【 바우처 미이용 및 저이용 사유 】

구분	주요 사유	비율
미이용 사유	**바우처 카드를 늦게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지 않음**	**21.3%**
	바우처 카드를 분실함	10.9%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마트나 편의점이 없음	9.6%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이유	**나중에 사용하려고 했으나 시기를 놓침**	**44.7%**
	이용처나 이용방법을 잘 모름	9.3%
	이용할 시간이 없음	8.0%
	이용방법이 귀찮고 복잡함	8.0%

자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실시 중인 월 1회 바우처 생성·사용량·잔액 안내를 지속하되, 일정 기간 사용 실적이 없는 대상자를 별도로 선별하여 사용처·사용기한·이용방법을 재안내할 필요가 있음.

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2233-332)

○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서비스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기관별 기능과 대상에 따라 분산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기반 치유캠프는 높은 수요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고 기관별 모집·참여 실적에도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관 간 연계 이후 사후관리와 치유·회복성과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성평등가족부는 기관별 기능과 수요를 고려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고 치유캠프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연계 이후 사후관리와 치유·회복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치유서비스의 접근성과 연계·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은 ①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②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③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④유해매체물 심의 및 매체 자율정화, ⑤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83억 2,800만원 중 78억 3,5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4.1%가 집행되었음.

【 2025년도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8,328	-	-	8,328	7,835	-	493	9,164
·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 운영	3,056	-	-	3,056	3,011	-	45	3,571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2,683	-	-	2,683	2,513	-	170	2,998
· 청소년매체환경 보호센터 운영	2,077	-	-	2,077	1,806	-	271	2,139
· 유해매체물 심의 및 매체 자율정화	106	-	-	106	104	-	2	79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406	-	-	406	401	-	5	377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분산 운영되고 있는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서비스의 역할분담 및 연계·성과관리 강화 필요

성평등가족부의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서비스는 일반회계와 청소년육성기금, 그리고 국립시설과 지역센터로 분산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일반회계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세부사업 내에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과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의 피해 청소년 집중치유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의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세부사업 내에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이 가운데 2025년에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캠프를 직접 운영한 기관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154]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임.

2025년도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서비스 관련 예산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 지원 중 피해 청소년 집중치유프로그램,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중 미디어 과의존 치유캠프 직접 관련분으로 재구성하면, 예산현액 43억 4,900만원 중 42억 7,0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8.2%임.

재정 비중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이 70.3%,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 지원 중 피해 청소년 집중치유프로그램이 26.7%,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단기과정이 3.0%로 나타남. 또한 2026년 예산은 50억 9,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4.1% 증가하였음.

【 2025년도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서비스 관련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회계	2025 예산현액	2025 집행액	집행률	관련 치유재정 내 비율	2026 예산액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 운영	일반 회계	3,056	3,011	98.5	70.3	3,571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일반 회계	1,163	1,163	100	26.7	1,395

154)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내역사업 중 피해 청소년 집중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기관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및 가족치유캠프를 운영하고 있음.

구분	회계	2025 예산현액	2025 집행액	집행률	관련 치유재정 내 비율	2026 예산액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청소년 육성 기금	130	96	73.8	3.0	127
합 계	-	4,349	4,270	98.2	100	5,093

주1) 디지털미디어피해청소년 회복 지원 관련 예산은 피해 청소년 집중치유프로그램 운영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해당됨
2)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관련 예산은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과의존 캠프(5회)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해당됨
자료: 성평등가족부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서비스 사업의 기관별 운영 현황을 보면,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치유캠프,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단기과정은 모두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기숙·집중형 과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운영 목적·대상·기간 및 사후관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고위험군·사이버 도박 문제 청소년을 포함한 상시형 전문치유시설,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를 경상권 단기 치유재활 프로그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는 방학기간에 집중 운영되는 지역기반 캠프와 저연령군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중심 캠프로 설명하고 있음.

각 기관별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은

1주~4주의 장·단기 혼합형으로 연중 상시 운영하는 반면,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단기과정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는 7박8일로 운영되어 운영 횟수와 방식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치유캠프는 7~12세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개입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서비스 기관별 운영 비교 】

구분		운영 목적	지원 대상	운영 형태 (운영 횟수)	운영 기관·장소	주요 내용	사후 관리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 마을		미디어 과의존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대상 종합적·전문적 치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및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10세~18세)	1~4주 과정 (22회)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 마을 (전북 무주)	심리검사, 개인·집단 상담, 부모교육, 체험·대안·체육·회복 활동	추후검사, 유관기관 사후연계
국립대구 청소년 디딤센터 단기과정 (디딤센터 중 미디어 과의존 관련 과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대상 전문적 치유 서비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13세~18세)	**7박8일** (5회)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대구)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대안활동 등	협업기관 자체 사후관리
청소년상담복지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방학기간 미디어 단절 환경에서의 단기 집중 치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13세~18세)	**7박8일** (4회)	일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별 상이)	상담 및 대안활동 중심 기숙형 캠프	1회 이상 사후모임, 3개월 사후관리 서비스

구분		운영 목적	지원 대상	운영 형태 (운영 횟수)	운영 기관·장소	주요 내용	사후 관리
센터	가족 치유 캠프	저연령 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가족 중심 개입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7세~12세 및 보호자)	1박2일 ·2박3일 (12회)	일부 시·군·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및 공모선정 기관	집단상담, 부모교육, 가족활동, 대안활동	사후모임 등 사후관리

주1)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단기과정은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전체 사업 중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과 직접 연관되는 과정만 분리하여 비교하였음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치유캠프는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대상으로 공모과정을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만 기관별 역할 구분의 기본 방향은 상이하나 그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경우 실제 운영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봄.

먼저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13,243명[155]에 달하고 있는바, 이들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수준과 특성에 따른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각 기관별 치유캠프 운영 현황을 보면,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은 22회 운영을 통해 501명을 수료시켜 세 기관 중 가장 많은 실인원을 지원하였으나, 선정 인원 571명 대비 실제 참여는 509명에 그쳤음.

155) 조사인원은 1,234,587명임.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단기과정은 5회 과정의 107명을 운영하여 규모는 작지만, 선정 108명 중 107명이 실제 참여하고 전원이 수료하여 수료율이 가장 높았음. 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는 4회 과정의 88명 수료에 그쳐 규모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기관별 치유캠프 운영 현황 】

(단위: 회, 명, %)

기관		회차	모집 인원	신청 인원	선정 인원	참여 인원 (A)	중도 탈락	수료 인원 (B)	수료율 (C=B/A ×100)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		22	528	585	571	509	8	501	98.4
국립대구청소년디딤 센터(단기과정)		5	120	111	108	107	-	107	100.0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4	98	170	90	89	1	88	98.9
	가족치유 캠프	12	240	366	237	231	-	231	100.0

주1)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22회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20회와 사이버도박 2회가 포함됨
2) 가족치유캠프는 가족 단위 실적임
3) 수료율은 참여자 대비 수료인원 비율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음으로 수요 측면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가 모집 98명에 신청 170명, 가족치유캠프가 모집 240가족에

신청 366가족으로 정원을 크게 초과하여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와 가족치유캠프 모두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반면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는 모집 120명 대비 신청 111명으로 정원에 미달하였음.

이는 지역센터 기반 단기캠프에 대한 현장 수요는 높지만,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단기과정은 지역 및 선발 구조상 상대적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줌.

【 2025년 기관 간 연계 실적 】

(단위: 명)

연계 경로	연계 인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1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7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병원치료	134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2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 Wee센터 등 유관기관	232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단기과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8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수료 후 미연계	47

주)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단기과정 수료인원 중 39명은 회복지원시설로 연계됨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더불어 기관 간 연계 실적을 보면, 2025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로 113명,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로 71명, 병원치료로 134명을 연계하였고,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과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단기과정도 수료 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유관기관으로 연계하였음.

다만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수료인원 501명 중 47명은 청소년과 보호자가 사후연계 서비스를 거부하여 미연계되었는데, 이후 재개입 여부나 후속 성과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았음. 이는 고위험군의 연계 거부 사례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아직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줌.

또한 연계 이후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한데, 성평등가족부는 기관별 사후관리 방식과 중도탈락률은 집계하면서도 실제 수료자 중 몇 %가 사후관리를 받았는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연계 인원 수는 확인되지만 연계의 성공 여부와 치유 지속성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서비스 수요와 기관별 기능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기반 치유캠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치유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관 간 연계 이후의 사후관리 참여 여부와 치유·회복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치유서비스의 연계성과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 집행률 2.3%, 2023년 18.5%, 2025년 39.8%로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지속된 사업으로, 2025년에는 공사비 · 감리비가 집행되지 못하였음. 또한 총사업비 조정 결과, 총사업비는 248억 8,500만원으로 18억 3,500만원 증가하고 사업기간도 2028년까지 1년 연장된바, 향후 설계 완료 이후 입찰 · 착공까지의 공정 및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립 광주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은 2025년 집행률이 89.9%로 높아 보이지만, 집행 대부분이 토지보상비에 집중되어 실제 공사 진척은 제한적이었고, 설계용역 종료가 재연장되었으며, 총사업비도 2024년 228억 6,800만원에서 2025년 12월 308억 1,200만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설계 · 발주 · 착공을 연계한 단계별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함.

가) 개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은 지방에 거주하는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의 치유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 치유기관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①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②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③국립 경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57억 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9억 6,500만원을 더한 76억 7,100만원으로, 이 중 62억 3,3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81.3%가 집행되었음.

한편 국립 경남권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사업은 2024년에 1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후보지 미확정 등으로 전액 불용되었고, 2025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

【 2025년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5,706	1,965	±3,902	7,671	6,233	-	1,438	8,873
·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	3,732	96	△2,501	1,327	528	-	799	4,450
·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1,974	1,869	2,501	6,344	5,705	-	639	3,473
· 국립경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	-	-	-	-	-	-	-	950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집행관리 미흡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의 치유서비스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사업기간은 6년(2023~2028년)[156], 총사업비는 248억 8,500만원임.

156)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22년부터 편성되었음.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개요 】

구 분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소 재 지	전북 익산시 함열읍 와리 294-23번지 일원
총사업비	248.85억원(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사업기간	2023년~2028년(예정)
사업규모	부지면적 27,536.6㎡, 건축연면적 4,352㎡, 지하1층~지상2층(4개동)
설립목적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대상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9~18세)
주요시설	치료실, 상담실, 대안교실, 생활동, 체육관 등
프로그램	「치료+보호+교육+자립」 종합적·전문적 One-Stop 서비스 제공

주) 2025년 12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결과, 총 사업비는 기존 230억 5,000만원에서 248억 8,5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사업기간도 2023~2027년에서 2023~2028년으로 1년 연장되었으며, 연면적도 4,150㎡에서 4,352㎡로 증가하였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동 사업은 2022년[157]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추진 초기에는 집행률이 낮은 수준을 보였음. 2022년도는 예산액 8억 7,500만원 중 2,0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3%에 불과하였고, 2023년도는 예산현액 10억원 중 1억 8,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18.5%에 그쳤으나, 2024년도에는 집행률이 85.9%로 개선[158]된 것으로 나타남.

성평등가족부는 2022~2023년도에 2년 연속 실집행률이 저조한

15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의견 반영

158) 다만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기본조사설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중간설계비(설계용역 1차 완료금)를 전용절차 없이 실시설계비로 집행하는 등의 지적을 받았음.

사유로 센터 건립 지역(전북 익산시)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전북 익산시·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설계공모를 위한 사전 준비 등 사업추진 절차가 단계적으로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연도별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22년	계	875	-	-	875	20	-	855	2.3%
	건설보상비	-	-	-	-	-	-	-	-
	기본조사설계비	350	-	-	350	20	-	330	5.7%
	실시설계비	525	-	-	525	-	-	525	0%
2023년	계	1,700	-	△700	1,000	185	791	24	18.5%
	건설보상비	500	-	-	500	-	500	-	0%
	기본조사설계비	480	-	△100	380	185	171	24	48.7%
	실시설계비	720	-	△600	120	-	120	-	0%
2024년	계	600	791	±13	1,391	1,195	96	100	85.9%
	건설보상비	-	500	-	500	499	-	1	99.8%
	기본조사설계비	-	171	7	178	178	-	-	100%
	실시설계비	600	120	△13	707	512	96	99	72.4%
	시설부대비	-	-	6	6	6	-	-	100%
2025년	계	3,732	96	△2,501	1,327	528	-	799	39.8%
	건설보상비	500	-	29	529	528	-	1	99.8%
	실시설계비	-	96	-	96	-	-	96	0%
	공사비	2,905	-	△2,375	530	-	-	530	0%
	감리비	309	-	△155	154	-	-	154	0%
	시설부대비	18	-	-	18	-	-	18	0%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도 동 사업의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 37억 3,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600만원[159]을 합한 38억 2,800만원 중 25억 100만원[160]이 이·전용 등으로 감액되어 최종 예산현액은 13억 2,700만원으로 축소되었음. 이 가운데 집행액은 5억 2,800만원에 그쳤고, 다음연도 이월 없이 7억 9,9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39.8%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음.

【 2025년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공사비 및 감리비 조정 내역 】

일자	감액 세목	증액 세목	조정 사유
2025.4.9.	호남 센터 공사비 3억 9,500만원	광주 센터 건설보상비	국립광주청소년 디딤센터 토지 보상금 추가 소요액 충당
2025.5.8.	호남 센터 공사비 19억 5,100만원 호남 센터 감리비 1억 5,500만원		
합계	호남 센터 공사비 23억 4,600만원 호남 센터 감리비 1억 5,500만원	광주 센터 건설보상비 25억 100만원	-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특히 예산액의 67.0%에 해당하는 25억 100만원[161]이 2025년 4월 9일과 5월 8일에 두 차례 자체전용을 통해 조정되었는데, 이는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의 토지보상금 추가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 간 조정에 따른 것임.

159) 실시설계비 2차 설계용역 미지급분으로 실시설계용역이 2024년 안에 완료되지 않아 2025년으로 이월되었음.

160) 기능·비목별로 보면 공사비는 29억 500만원에서 5억 3,000만원으로 23억 7,500만원 감소하였고, 감리비는 3억 9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으로 1억 5,500만원 감소하였음. 다만 공사비 감소분 중 2,900만원은 같은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내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집행을 위한 건설보상비로 조정(2025.4.9.)된 금액이므로, 세부사업 전체 차원의 순감액액은 공사비 23억 4,600만원과 감리비 1억 5,500만원을 합한 25억 100만원임.

161) 공사비 23억 4,600만원 및 감리비 1억 5,500만원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예산 편성 당시 중간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및 감리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비와 감리비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협의 등에 예상보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연내 발주가 어려웠다고 설명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예산 편성에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는 관계기관 협의 등 주요 선행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보다 충분히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추진 현황 및 계획 】

일 정	추진 현황 및 계획
2022. 9. ~ 2022. 11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23. 2.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23. 4.	시설공사 일괄대행 업무협약 체결(조달청)
2023. 4.	토지보상 업무협약 체결(익산시)
2023. 7. ~ 2023. 10	설계공모(7.26.) 및 심사·선정(10.16.)
2023. 10.	계획설계 실시
2024. 2.	계획설계 완료
2024. 2. ~ 4.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4. 4	중간설계 실시
2024. 6	중간설계 완료

일 정	추진 현황 및 계획
2024. 6. ~ 8.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4. 9. ~ 2025. 3.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획재정부)
2025. 4. ~ 2025. 6.	실시설계 추진
2025. 8.~10.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5.11.~12.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획재정부)
2026. 5. 7.	실시설계 완료(총사업비 조정결과 반영)
2026. 5. 27.	조달청에 공사계약 요청
2026. 하반기	시공사 및 감리사 입찰 및 계약
2026. 하반기	착공
2028. 하반기	준공

다)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집행 실적 저조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의 치유서비스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사업기간은 6년(2023년～2028년)[162], 총사업비는 308억원임.

【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개요 】

구 분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 187-2번지 일원
총사업비	308억원(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사업기간	2023년～2028년(예정)
사업규모	부지면적 28,533㎡, 건축연면적 4,707㎡, 지하1층~지상2층, 7개동
설립목적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대상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9~18세)
주요시설	치료실, 상담실, 대안교실, 생활동, 체육관 등
프로그램	「치료+보호+교육+자립」 종합적·전문적 One-Stop 서비스 제공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19억 7,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8억 6,900만원 및 이·전용된 25억 100만원을 포함한 63억 4,400만원으로, 이 중 57억 5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3,9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89.9%가 집행되었음.

162)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23년부터 편성되었음.

【 2023~2025년도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23년	계	1,000	-	△700	300	9	291	-	3%
	기본조사설계비	400	-	△200	200	9	191	-	4.5%
	실시설계비	600	-	△500	100	-	100	-	0%
2024년	계	2,091	291	±219	2,382	470	1,869	43	19.7%
	건설보상비	1,351	-	-	1,351	-	1,351	-	0%
	기본조사설계비	520	191	△219	492	364	87	42	74%
	실시설계비	220	100	212	532	100	431	-	18.8%
	시설부대비	-	-	7	7	6	-	1	85.7%
2025년	계	1,974	1,869	2,501	6,344	5,705	-	639	89.9%
	건설보상비	-	1,351	3,873	5,224	5,222	-	2	99.9%
	기본조사설계비	-	87	-	87	87	-	-	100%
	실시설계비	-	431	-	431	388	-	43	90.0%
	공사비	1,807	-	△1,355	452	-	-	452	0%
	감리비	156	-	△17	139	-	-	139	0%
	시설부대비	11	-	-	11	8	-	3	72.7%

자료: 성평등가족부

다만 집행률이 2024년 19.7% 대비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2025년 집행액 57억 500만원 중 52억 2,200만원이 건설보상비로 집행되었음.

또한 실제 착공과 직결되는 공사비와 감리비는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토지보상금 추가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사비 13억 5,500만원 및 감리비 1,700만원이 건설보상비로 세목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더해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의 공사비 23억 4,600만원과 감리비 1억 5,500만원도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설보상비로 전용되었음.

【 2025년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설보상비 증액을 위한 주요 조정 내역 】

일자	감액 세목	증액 세목	조정 사유
2025.4.9.	호남 센터 공사비 3억 9,500만원 **광주 센터 공사비 13억 5,500만원** **광주 센터 감리비 1,700만원**	건설보상비	국립광주청소년 디딤센터 토지 보상금 추가 소요액 충당
2025.5.8.	호남 센터 공사비 19억 5,100만원 호남 센터 감리비 1억 5,500만원	건설보상비	
합계	공사비 37억 100만원 감리비 1억 7,200만원	건설보상비 38억 7,300만원	-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아울러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공사비는 예산액 18억 700만원에서 예산현액 4억 5,200만원으로 축소된 후 전액 불용되었으며, 감리비도 예산액 1억 5,600만원에서 예산현액 1억 3,900만원으로 축소된 후 전액 불용되었음.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전년도 19.7%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실질적으로는 공사비 및 감리비 집행보다 토지 확보 및 보상 절차 정리에 중점이 두어진 집행에 따른 것임.

【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일정 지연 및 총사업비 조정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요 변화	비고
2차 설계용역 총완수일자	2026.1.28.	2026.4.1.	총완수일자 재연장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25.12월) 반영을 위한 설계기간 연장
총사업비	22,868 (2024.7. 자율조정)	30,812 (2025.12. 기획재정부 협의 조정)	7,944 증가 (+34.7%)	설계단계 적정성 검토를 반영한 공사비 및 감리비 증액과 지가상승에 따른 건설보상비 증액
사업기간	2023~2027년	2023~2028년	1년 연장	조달청 공사기간 검토(22개월)를 반영한 사업기간 연장
연면적	4,150㎡	4,707㎡	557㎡ 증가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설계 추진 경과를 보더라도 동 사업은 2025년 말 기준 아직 본격적인 발주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의 2차 설계용역[163]은 2026년 2월 변경계약을 통해 용역 일시정지 해제에 따라 총완수일자가 2026.1.28.에서 2026.4.1일로 재연장된 가운데,

163) 동 사업은 2023년 12월 설계용역(1차)에 착수한 후 2024년 5월 28일 계약변경을 통해 설계용역 완수일자가 2024년 6월 28일로 조정되었고, 이후 2024년 6월 29일 설계용역(2차)에 착수하였음. 그러나 2025년에는 소규모 재해·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음에도 설계는 연내 종료되지 못하였고, 2차 설계용역은 2026년 2월 27일 변경계약을 통해 총완수일자가 당초 2026년 1월 28일에서 2026년 4월 1일로 연장되었음.

총사업비도 2024년 7월 자율조정 기준 228억 6,800만원에서 2025년 12월 308억 1,200만원으로 34.7% 증가하였음. 사업기간도 2028년까지 1년 연장되어 설계 완료와 발주 전환이 2026년으로 계속 순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성평등가족부는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추진 현황 및 계획 】

일 정	추진 현황 및 계획
2023. 3. ~ 2023. 5.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23. 6.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23. 8.	시설공사 일괄대행 업무협약 체결(조달청)
2023. 9.	토지보상 업무협약 체결(광주광역시)
2023. 10. ~ 12.	설계공모 및 심사·선정
2023. 12.	계획설계 실시
2024. 2.	계획설계 완료
2024. 2. ~ 4.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4. 5.	중간설계 실시
2024. 8.	중간설계 완료
2024. 8. ~ 11.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4. 11. ~ 2025. 3.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획재정부)
2025. 4. ~	실시설계 추진
2025. 7. ~ 2025. 9.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5. 9. ~ 2025. 12.	총사업비 조정 협의(기획재정부)
2026. 4. 30.	실시설계 완료(총사업비 조정결과 반영)
2026. 5. 27.	조달청에 공사계약 요청
2026. 5. ~	시공사 및 감리사 입찰 및 계약추진
2026. 하반기	착공
2028. 하반기	준공

5)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2236-361)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건축협의 지연으로 2025년도 집행률이 26.6%로 저조하고, 총사업비는 404억 8,400만원에서 528억 8,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2025년에서 2021~2028년으로 늘어났으며, 예산 집행도 건설보상비 중심에 그쳐 건립 사업이 착공 전 단계에 머문 것으로 보임. ○ 2026년 건축협의와 공사·감리 계약, 2028년 준공, 2029년 개원 일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려면 건축협의 등의 선행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고 분기별 공정 관리와 월별 집행·위험관리 계획을 통해 총사업비 증가와 이월·불용의 반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은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건립한 국립청소년해양센터 및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에 대한 ①정부지급금을 지급하는 사업, ②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등 특성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신규건립 추진을 통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20억 2,900만원 중 90억 5,5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75.2%가 집행되었음.

【 2025년도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12,727	262	±960	12,029	9,055	-	2,974	11,667
·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 지급금(영덕, 김제센터)	8,026	-	-	8,026	7,991	-	35	8,075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 수련원 건립	4,701	262	△960	4,003	1,064	-	2,939	3,592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집행 부진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의 거점 역할 등을 하기 위한 수련시설 건립사업으로, 사업기간은 8년(2021년~2028년)이며, 총사업비는 528억 8,500만원임.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개요 】

구 분	주 요 내 용
위 치	대구 동구 괴전동 2번지 일원
총사업비	528억 8500만원
사업기간	2021 ~ 2028년
사업규모	부지 86,921㎡, 연면적 10,267㎡
사업목적	청소년의 진로·직업에 대한 정보 및 체험기회 제공으로 균형 잡힌 직업관 형성에 기여
주요시설	청소년 직업체험관, 생활관, 야외운동장 등
주요 프로그램	진로탐색, 미래 직업체험, 지역네트워크 현장체험 등

자료: 성평등가족부

동 사업의 202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47억 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 6,200만원을 합한 뒤, 9억 6,000만원을 이·전용(감)한 40억 300만원으로, 이 중 10억 6,400만원이 집행되고 29억 3,9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26.6%로 저조함.

【 2025년도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계	4,701	262	△960	4,003	1,064	-	2,939	26.6%
건설보상비 (410-00)	1,094	-	-	1,094	1,021	-	73	93.3%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61	-	61	43	-	18	70.5%
실시설계비 (420-02)	-	201	-	201	-	-	201	0%
공사비 (420-03)	3,397	-	△960	2,437	-	-	2,437	0%
감리비 (420-04)	200	-	-	200	-	-	200	0%
시설부대비 (420-05)	10	-	-	10	-	-	10	0%

자료: 성평등가족부

목별 구체적 집행현황을 보면, 건설보상비는 예산현액 10억 9,400만원 중 10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25년 집행액의 대부분이 건설보상비에서 발생하였음. 건설보상비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건축협의 과정에서 납부하는데, 2025년 11월에 납부 완료하였음.

기본조사설계비는 예산현액 6,100만원 중 4,300만원이 집행되고,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 예산현액 6,100만원은 2024년도 이월액으로

집행액 4,300만원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2차)의 계약 잔금을 납부한 것이며, 불용액 1,800만원은 사전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용역(2차)의 계약 잔금이나 실시설계 용역과 병행 추진중인 이유로 집행되지 못하였음.

【 2025년도 기본조사설계비 세부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2차)	43	43	-	-	2차계약 잔금 집행
사전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용역(2차)	18	-	-	18	2차계약 잔금 불용
합 계	**61**	**43**	**-**	**18**	

자료: 성평등가족부

실시설계비의 예산현액 2억 100만원도 2024년도 이월액으로 실시설계 용역 계약 잔금이나, 2025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되어 집행률이 0%임.

공사비는 예산액 33억 9,700만원에서 인건비로 9억 6,000만원이 이용되어 예산현액이 24억 3,7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나, 2025년도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집행률이 0%임.[164)]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예산현액이 각각 2억원, 1,000만원이나, 연내 공사와 감리 발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액 불용되어 집행률이 0%임.

164) 2025년 10월 성평등가족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기존 277명 대비 17명 증가)와 보수 지급 현원(340명) 과다를 사유로 총 11억 311만원의 인건비 이·전용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고, 이 가운데 공사비 9억 6,000만원이 인건비 보수 재원으로 이용되었음. 기획재정부는 2025년 11월 이를 협의 통보함.

한편 동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당초 편성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연례적인 전용·이월 등이 반복되고 있음.

- 2021년에는 예산현액 5억원 중 72.2%만 집행되었고, 2022년에는 당초 예산 14억 5,500만원 중 상당액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된 뒤에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1.3%에 그쳤음. 2023년에는 당초 예산 4억 8,000만원 전액이 다시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고 전년도 이월액만 집행되었음.

【 연도별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1년	계	500	-	-	500	361	139	-	72.2%
	기본조사설계비	500	-	-	500	361	139	-	72.2%
2022년	계	1,455	139	△1,041	553	118	370	65	21.3%
	기본조사설계비	-	139	-	139	112	-	27	80.6%
	실시설계비	1,441	-	△1,041	400	-	370	30	0%
	시설부대비	14	-	-	14	6	-	8	42.9%
2023년	계	480	370	△480	370	370	-	-	100%
	건설보상비	300	-	△300	-	-	-	-	-
	실시설계비	-	370	-	370	370	-	-	100%
	공사비	179		△179	-	-	-	-	-
	시설부대비	1		△1	-	-	-	-	-
2024년	계	1,807	-	△4	1,803	708	262	833	39.3%
	건설보상비	827	-	-	827	-	-	827	0%
	기본조사설계비	302	-	△4	298	232	61	5	77.9%
	실시설계비	671	-	-	671	469	201	1	69.9%
	시설부대비	7	-	-	7	7	-	-	100%
2025년	계	4,701	262	△960	4,003	1,064	-	2,939	26.6%
	건설보상비	1,094	-	-	1,094	1,021	-	73	93.3%
	기본조사설계비	-	61	-	61	43	-	18	70.5%

	실시설계비	-	201	-	201	-	-	201	-
	공사비	3,397	-	△960	2,437	-	-	2,437	0%
	감리비	200	-	-	200	-	-	200	0%
	시설부대비	10	-	-	10	-	-	10	0%

자료: 성평등가족부

또한 국회 결산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집행부진과 사업관리 미흡이 지적되었음. 2022~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사업기간·사업비 관리, 이월·전용·불용 최소화, 분기별 공정관리와 초기 변수 대응 강화가 반복적으로 요구되었으나, 2025년에도 총사업비 재증가와 사업기간 추가 연장이 발생하여 기존 시정요구의 이행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3년간 국회 결산 지적사항과 조치상황 】

구분	주요 지적사항	유형	조치상황 요약
2022 회계연도	사업기간 및 사업비 유지 관리 필요	주의	사업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2023 회계연도	집행실적 저조 개선 필요	시정	공정관리 철저·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을 통하여 예산의 이·불용 최소화 노력
2024 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이월·불용 반복 방지 및 사업관리 철저	제도개선	설계·총사업비·건축협의 절차 지연

자료: 2022~2024 회계연도 국회 결산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

종합하면,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의 2025년도 집행부진은 단순한 연말 집행 차질이 아니라, 설계 지연과 총사업비

조정, 토지보상·건축협의 지연이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2025년 집행액 대부분이 건설보상비에 집중되고 공사비·감리비가 불용되었음.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건축협의와 공사·감리 계약, 2028년 준공, 2029년 개원 일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분기별 공정관리, 총사업비 변동요인 사전점검, 월별 집행 및 위험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불용 증가의 반복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연도별 추진 현황 및 계획 】

추진 일정(안)	추진 현황 및 계획
2021. 1.	총사업비 확정
2021. 6.~9.	설계공모
2021.10.	설계계약 및 착수
2021.10.~ 2022.12.	계획설계
2023. 1.~2023. 6.	계획설계 조정
2023. 7.~9.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3. 5.~12.	중간설계
2024. 1.~ 7.	중간설계 보완
2024. 8.~10.	중간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조달청)
2024.12.	실시설계 착수
2024.11.~2025. 3.	총사업비 조정협의(기재부)
2025. 6.~2025. 8.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2025. 9.~ 2025.10.	감리비 사전 검토(조달청)
2025.10~ 2025.12	총사업비 조정협의(기재부)
2025.10~	건축협의
2026년 상반기	건축협의 완료(2026.4.29.)
2026년 하반기	공사·감리 계약 및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
2029년	개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청소년육성기금

1)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2254-432)

○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사업은 최근 5년간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25년에는 신규 배치 지연, 복무 연기, 중도 소집해제 등으로 성평등가족부 기준 집행률인 97.7% 대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84.0%로 13.7%p 낮았음. ○ 향후에는 지자체별 실근무개월수와 중도 소집해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편성을 실제 근무기간과 배치시점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지역별 집행률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①청소년쉼터, ②청소년자립지원관, ③청소년회복지원시설, ④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 ⑤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⑥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의 6개 내역사업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 등의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 결산현황을 보면, 계획현액 330억 7,900만원 중 325억 4,0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현액 대비 98.4%가 집행되었음.

【 2025년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33,079	-	-	33,079	32,540	-	539	36,755
· 청소년쉼터	28,030	-	-	28,030	27,528	-	502	31,195
· 청소년자립지원관	2,051	-	-	2,051	2,051	-	-	2,209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078	-	-	1,078	1,070	-	8	1,578
· 청소년복지시설내실화	547	-	-	547	547	-	-	-
·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1,273	-	-	1,273	1,244	-	29	1,273
·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	-	100	100	-	-	500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사업 실집행률 제고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회복무요원[165] 배치지원 사업은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운영·생활지도 보조 및 사무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 그 인건비와 교통비·피복비 및 직무교육비 등을 국비[166]로 지원하는 사업임.

165)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와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병역자원임.

166) 청소년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중 인건비·교통비·피복비는 성평등가족부가 전액 국비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교통비·피복비 및 직무교육비를 국비로 100% 집행하며, 중식비는 지방비로 부담함.

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사회복무요원 국비지원 배치 대상은 11개 시·도 및 40개소의 청소년복지시설과 사회복무요원 78명이었으며,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은 모든 시설이 아니라 인력 수요가 높은 일부 시설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2025년도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성평등가족부의 집행액은 계획액 12억 7,300만원의 97.7%인 12억 4,400만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액은 10억 6,900만원으로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84.0%에 그쳤음.

【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성평등가족부				사업수행기관(지자체)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1,273	1,273	1,244	29	1,244	1,069	175	84.0%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273	1,273	1,244	29	1,244	1,069	175	84.0%

자료: 성평등가족부

실집행률이 부진한 주요 원인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신규 배치 인력의 지연 배치, 복무 연기, 소집해제에 따른 근무 중 복무기간 종료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실제 근무기간이 계획보다 짧아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절차는 매년 1~2월 수요조사, 2월 말까지의

지자체의 병무청에 배정요청, 3월 31일까지의 지방병무청의 배정 인원 결정, 4월 20일까지의 배정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지자체는 병무청에 수요 제출 전에 필히 성평등가족부와 협의하여야 함.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사업의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실집행률은 2022년 90.1%에서 2023년 89.9%, 2024년 83.0%로 하락하였고, 2025년에도 84.0% 수준에 그쳐 전반적으로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사업 최근 5년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률 (실집행률)
2021	671	668	623	99.6 (92.9)
2022	737	736	664	99.9 (90.1)
2023	888	882	798	99.3 (89.9)
2024	1,056	1,026	877	97.2 (83.0)
2025	1,273	1,244	1,069	97.7 (84.0)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 계획 대비 실집행 인원을 보면, 인건비 지원 인원은 계획 79명에서 실제 67명으로 12명, 피복비 지원 대상은 53명에서 46명으로 7명, 직무교육 대상은 79명에서 74명으로 5명이 각각 감소하였음.

【 2025년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계획 대비 실집행 인원 】

세부 항목	계획 인원	실제 지원 인원	증감	실집행률
인건비 (교통비 포함)	79명	67명	△12명	84.8%
피복비	53명	46명	△7명	86.8%
교육비	79명	74명	△5명	93.7%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는 동 사업의 예산이 연간 배치인원을 전제로 편성되더라도, 실제 집행은 신규 배치 지연, 복무 연기, 중도 소집해제, 복무기간 중 종료 등으로 인해 배치 시점과 실근무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성평등가족부는 예산 편성 시 사회복무요원 1인당 월 120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12개월 근무를 가정[167]하고 있으나, 실제 급여는 복무기간에 따라 1~2개월 근무시 75만원, 3~8개월 근무시 90만원, 9~14개월 근무시 120만원, 15개월 이상 근무시 1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음.

167) 계획 인원 × 월 120만원 × 12개월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사업 예산 산출내역>

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12억 7,300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인건비(교통비 등) : 80명×15,095천원×100% = 1,207,600천원 · 피복비 등 : 56명×310천원×100% = 17,400천원 · 교육비 : 80명×600천원×100% = 48,000천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 예산 편성 산식은 실제 집행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을 실제 근무 기간과 배치시점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지자체별 집행 현황을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집행부진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실집행률이 84.0% 이하인 지역은 서울(81.3%), 인천(84.1%), 대전(67.7%), 경기(83.3%), 충북(62.5%)의 5개 시·도임. 이들 지역의 교부액 합계는 599백만원, 실집행액은 472백만원, 불용액은 127백만원으로 전체 지자체 불용액인 175백만원의 72.6%를 차지함.

【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지자체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개, 명, %)

시·도	교부액	실집행액	불용액	시설 수	배치 계획 인원	실제 배치 인원	실집행률
서울	16	13	3	1	1	1	**81.3**
부산	143	138	5	6	9	9	96.5
대구	-	-	-	-	-		-
인천	170	143	27	4	12	14	**84.1**
광주	-	-	-	-	-		-
대전	158	107	51	5	10	11	**67.7**
울산	119	118	1	2	7	8	99.2
경기	239	199	40	6	15	17	**83.3**
강원	48	45	3	2	2	3	93.8
충북	16	10	6	1	1	1	**62.5**
충남	207	181	26	8	13	7	87.4

시·도	교부액	실집행액	불용액	시설 수	배치 계획 인원	실제 배치 인원	실집행률
전북	-	-	-	-			-
전남	16	16	0	1	1	1	100.0
경북	-	-	-				-
경남	-	-	-				-
제주	112	99	13	4	7	9	88.4
세종	-	-	-				-
유보액	29	29	-				-
계	**1,244**	**1,069**	**175**	**40**	**78**	**81**	**84.0%**

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실제 배치 인원은 81명으로 배치 계획 인원 78명보다 많으나, 이는 신규 배치와 중도 종료·대체 배치가 연중 반복된 결과라고 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또한 실집행률이 저조한 5개 지자체의 사회복무요원의 실근무기간 특징을 보면, 공통적으로 신규 배치가 연중 분산되거나 일부 인원이 중도 종료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짧아졌음.

【 실집행률이 저조한 5개 지자체 사회복무요원의 실근무기간 특징 】

지자체	실근무기간 특징
서울	신규 배치가 1월 16일 시작으로 연초부터 근무하지 못함
인천	일부 신규 배치가 4월·9월·10월에 분산되었고, 4명은 2월·5월·10월에 종료
경기	일부 신규 배치가 2월·3월·5월·7월·9월·10월에 분산되었고, 4명은 3월·5월·6월·11월에 종료
대전	일부 신규 배치가 2월·4월·5월·6월에 분산되었고, 4명은 2월·4월·10월에 종료
충북	신규 배치가 3월 17일 시작으로 연간 근무기간이 단축됨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지자체별 실근무개월수와 중도 소집해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편성을 실제 근무기간과 배치 시점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2026년에도 2025년과 동일한 12억 7,300만원이 편성된 만큼, 향후에는 실집행률 제고와 지역 간 집행실적의 균형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가족정책관

가. 일반회계

1) 가족역량강화 지원(2332-321)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저조한바, 예산 편성시 집행 현황 및 청소년부모 가구수 통계 등을 고려한 지원물량 조정, 소득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대상 확대, 지원금 인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가정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보호 및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무료법률 구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경상경비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 예산현액은 21억 200만원으로, 이 중 17억 5,4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3.4%임.

【 2025년도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가족역량강화 지원	2,102	-	2,102	1,754	-	348	2,102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492	-	492	447	-	45	632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590	-	1,590	1,291	-	299	1,455
· 경상경비	20	-	20	16	-	4	15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필요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2025년 집행실적은 예산현액 15억 9,000만원의 81.2%인 12억 9,100만원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12억 9,100만원 중 9억 1,8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7,3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71.1%로 저조함. 당초 예산액 15억 9,000만원 대비 실집행률은 57.7%에 불과함.

【 2025년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1,590	-	1,590	1,291	299	1,291	1,291	918	373	71.1%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과다하게 예상하여 예산을 산정한 것에 기인함.[168]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계획 대비 및 지원 현황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 계획인원	3,000명	3,000명	1,500명	1,060명
실 지원인원*	1,291명	1,569명	1,442명	901명

주) 연간 1회 이상 지원받은 아동수, 중복제외

자료: 성평등가족부

더욱이 통계청의 연도별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은 2018년 6,188가구에서 2024년에는 1,688가구로 감소하고 있는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추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적정한 금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168) 2022년 및 2023년에도 지원 대상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음. 2022년과 2023년에는 당초 지원대상을 3,0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지원인원은 2022년은 1,291명(43.0%), 2023년은 1,569명(52.3%)에 불과하였음.
- 2022년에는 예산액 18억원 중 6억 8,000만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37.8%로 저조하였음.
- 2023년에는 당초 예산액 36억원 중 18억원을 교부하였고, 이 중 12억 7,200만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70.7%이나, 당초 예산액(36억원) 대비 실집행률은 35.3%로 저조하였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3,600 (3,000명×12개월× 20만원×50%)	2,250 (1,500명×12개월× 25만원×50%)	1,590 (1,060명×12개월× 25만원×50%)	1,455 (970명×12개월× 25만원×50%)

자료: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 】

(단위: 가구)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188	4,900	3,760	2,969	2,345	1,987	1,688

자료: 성평등가족부, 「아동가구통계등록부(통계청)」 참조

한편 청소년부모 가구는 자녀양육·취업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울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양육 외 학업과 주거 유지를 위한 실제 비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고 있음.[169]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적정가구수를 반영하는 동시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대상 확대, 지원금 인상[170]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169)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주거 지원 필요성, 소득기준 현실화 필요성, 정규 학교와 원격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필요성, 학업을 중단 방지를 위한 아동 돌봄의 필요성, 근무 시간 조정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의 필요성 등이 제안되고 있음.(보건사회연구원, 2023, 「위기취약 청년의 현황과 정책 과제」 등)

170)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연도	'22.10월~'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기준	**중위 65%**	**중위 65%**	**중위 65%**	**중위 65%**
지원연령(이하)	24세	24세	24세	24세
지원단가	**월 35만원**	**월 35만원** *(0~1세) 월 40만원	**월 37만원** *(0~1세) 월 40만원	**월 37만원** *(0~1세) 월 40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연도	2022년	2023년	2024~2025년	2026년
소득기준	**중위 60%**	**중위 60%**	**중위 63%**	**중위 65%**
지원연령(이하)	24세	24세	24세	24세
지원단가	**월 20만원**	**월 20만원**	**월 25만원**	**월 25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2) 아이돌봄 지원(2334-341)

○ 서비스지원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돌봄수당 예산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지원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법령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으로 연계 대기일이 39.4일에 달하므로,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지원, 광역지원센터 운영, 중앙지원센터 운영, 바우처시스템 운영, 경상경비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2025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750억 2,800만원 중 4,749억 7,5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9.9%가 집행되었음.

【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 아이돌봄 지원	475,028	±281	475,028	474,975	53	597,779
· 서비스 지원	467,987	△281	467,706	467,706	-	590,828
· 광역지원센터 운영	5,194	-	5,194	5,194	-	5,277
· 중앙지원센터 운영	1,249	-	1,249	1,216	33	1,441
· 바우처시스템 운영	95	-	95	95	-	190
· 아이돌봄 자격관리, 민간등록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	+281	281	281		-
· 경상경비 등	503	-	503	483	20	43

주)'서비스 지원' 내역사업이 2026년부터 '돌봄수당','아이돌보미 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으로 분리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돌봄수당 지급을 위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부지원금의 사회보장정보원에의 예탁 근거 필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서비스지원은 돌봄수당·아이돌보미 관리 및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등의 3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됨.

서비스지원 사업의 2025년 집행실적은 예산현액 4,677억 600만원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93.7%인 4,380억 6,2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2~2025년 내내역사업별 서비스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

구분		돌봄수당①			아이돌보미 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소계
		영아 종일제	시간제 돌봄	영아돌봄 수당			
2022년	예산현액(A)	25,304	179,608	-	51,000	19,870	275,782
	집행액(교부액)	204,912			51,000	19,870	275,782
	실집행액(B)	21,719	174,216	-	52,115	23,756	271,806
	실집행률(B/A)	85.8%	97.0%	-	102.2%	119.6%	98.6%
2023년	예산현액(A)	23,059	258,815	-	46,969	19,367	348,210
	집행액(교부액)	281,874			46,969	19,367	348,210
	실집행액(B)	15,619	216,264	-	57,430	24,756	314,069
	실집행률(B/A)	67.7%	83.6%	-	122.3%	127.8%	90.2%
2024년	예산현액(A)	27,928	356,189	-	57,299	20,300	461,716
	집행액(교부액)	384,117			57,299	20,300	461,716
	실집행액(B)	12,982	262,230	-	63,746	25,459	364,417
	실집행률(B/A)	46.5%	73.6%	-	111.3%	125.4%	78.9%
2025년	예산현액(A)	15,396	366,035	2,925	61,318	22,032	467,706
	집행액(교부액)	384,356			61,318	22,032	467,706
	실집행액(B)	7,540	311,623	17,960	74,132	26,807	438,062
	실집행률(B/A)	48.1%	85.1%	614.0%	120.9%	121.7%	93.7%

자료: 성평등가족부

서비스지원 사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받은 보조금 중 영아돌봄수당을 제외한[171] 돌봄수당 예산액(자치단체 부담분

171) 아이돌보미 급여는 아이돌봄서비스요금 중 정부지원금과 서비스이용자 본인부담금 및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지원금은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자금에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고, 영아돌봄수당·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주휴수당 일부·유급휴일수당·교육참여수당·명절상여금·현장오리엔테이션비 등은 재정정보원에 예탁된 자금에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됨.

포함)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서비스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아이돌보미 관리 및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비(영아돌봄수당, 자치단체 부담분 포함)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에 예탁한 후 각각 집행함.

내내역사업인 아이돌보미 관리와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관련 사업비를 재정정보원에 예탁하는 것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제5항[172]에 따른 것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으나, 돌봄수당(서비스이용료 중 일부 아이돌보미수당 제외한 정부지원금) 예산액 대부분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173]하는 법령적 근거는 불명확한 것으로 봄.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예탁의 근거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20조[174]로 보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와 연도별

---

172)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 ④ (생 략)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예탁(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예탁 방법, 예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3) 성평등가족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료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용자 결제금(부담금)과의 매칭이 필수적이어서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방식을 통해 돌보미 급여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함.

17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예탁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이돌봄 예산·회계 매뉴얼」에 아이돌봄 활동수당 필요액(돌봄수당 예산액 대부분)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의 '사회서비스'로 보기에 불명확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탁은 지출로서 「지방회계법」과 「국고금 관리법」상의 지출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법령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우선 아이돌봄서비스가 사회서비스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175]제4호는 '사회서비스'를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조 제1호[176]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로 다소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175)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 6. (생 략)

17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제1호[177]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178]에는 「아이돌봄 지원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이돌봄서비스를 해당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서비스로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다음으로 예탁하는 행위가 지출 행위인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회보장정보원에의 예탁은 해당 자치단체 금고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로 예산의 지출[179]이어서 지출원인행위[180]를 거쳐야 하는데, 「지방회계법」

17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 라. (생 략)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 머. (생 략)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 허. (생 략)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17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1의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치매관리법」
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179)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180) 「지방회계법」 제29조~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가 지출원인행위이고, 재무관이 이를 하면 지출원에게 관계서류를 보내며, 지출원은 지출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서 사회보장정보원 지정계좌로 예탁금을 송금하는 것은 이 지출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세출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

제29조[181]는 지출원인행위를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부지원금의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은 법령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봄.

참고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의5[182]에는 시간제보육서비스, 무상보육, 양육수당 등의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183]에 따라 공공단체 등에 예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184]

따라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0조제1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의 사회정보원으로의 예탁 근거 규정이

---

181)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 ② (생 략)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국가재정법」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8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① 삭제 <2012. 2. 3.>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의2,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18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이하 생략)

184)「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은 아이돌봄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민간 어린이집(아이돌봄의 서비제공기관 유사) 등에 직접 입금되는 점 등을 고려하는 경우 이와 유사하게 법령에 예탁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봄.

유사 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법률에 비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방안 강구 필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 중 돌봄수당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분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사업임. 서비스 유형은 시간제 기본형, 종합형, 질병감염, 영아종일제로 나뉘며, 2025년도의 경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0%까지 이용요금을 지원하였음.

【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소득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취학전		취학 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9,136원 (75%)	3,044원 (25%)	본인부담금의 10%할인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4,872원 (40%)	7,308원 (60%)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70%)	2,436원 (20%)	9,744원 (80%)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218원 (10%)	10,962원 (90%)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	12,180원 (100%)	-

주1) ㉮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에는 5% 추가 지원
2)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200%이하)은 이용요금의 90% 지원
3)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자료: 성평등가족부

돌봄수당의 2025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액 3,846억 3,700만원의 99.9%인 3,843억 5,600만원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은 3,371억 2,300만원을 집행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87.6%로 전년(71.6%) 대비 16.0%p증가되었음.

【 최근 5년 연도별 돌봄수당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2021년	180,158	185,063	184,338	182,451	101.3%
2022년	202,031	204,912	204,912	195,935	97.0%
2023년	281,874	281,874	281,874	231,883	82.3%
2024년	384,222	384,117	384,117	275,212	71.6%
2025년	384,637	384,356	384,356	337,123	87.6%

자료: 성평등가족부

이는 전년 대비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0%이하), 돌봄수당 증액(시간당 10,030원 → 10,320원), 소득 유형별 지원비율 증가(나형의 경우 6~12자녀에 대해 30% 지원 → 40% 지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그런데 2025년 아이돌보미 연계율은 86.9%로 2024년(84.7%) 대비 2.2%p 증가하였으나,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025년 대기가구가 11,645가구로 증가하였음. 이는 아이돌보미 활동 인력이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현황 】

(단위: 가구, 일)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기가구 수	6,809	14,745	13,031	9,519	11,645
평균 대기일	19.0	27.8	33.0	32.8	39.4

주1) 대기가구는 연도말 대기가구 상태에 있는 가구수를 의미
2) 평균 대기일수는 신규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연계된 가구의 평균 대기일수를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 2023년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신청가구(A)	122,729	139,508	183,794
연계가구(B)	86,100	118,126	159,804
대기가구	13,031	9,519	11,645
연계율(B/A)	70.2	84.7	86.9
평균 대기일 수	33.0	32.8	39.4
아이돌보미 수	28,071	29,635	31,718

주1) 대기가구는 연도말 대기가구 상태에 있는 가구수를 의미
2) 평균 대기일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연계된 가구의 평균 대기일수를 의미
자료: 성평등가족부

평균 대기일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아이돌보미가 부족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가구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하므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인원 및 활동 아이돌보미 현황을 보면, 2025년 양성 교육인원은 12,736명으로 2024년 대비 3,835명 증가하였으나,

실제 활동 아이돌보미 수는 2024년에 비해 2,083명 증가하는 데에 그쳐, 교육인원 대비 증원비율이 16.4%에 불과하였음.

【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인원 및 활동 아이돌보미 현황 】

(단위: 명)

연도	양성 교육인원			활동 아이돌보미 수				
	예산상 목표	실제 교육인원	달성률	예산상 목표	실제 인원	달성률	전년대비 증감	교육인원 대비 증원비율
2021년	10,300	3,937	38.2%	35,000	25,917	74.0	1,448	36.8%
2022년	5,000	3,544	70.9%	33,000	26,675	80.8	758	21.4%
2023년	4,500	3,946	87.7%	29,090	28,071	96.5	1,396	35.4%
2024년	6,000	8,901	148.4	34,908	29,635	84.9	1,564	21.7%
2025년	-	12,736	-	36,000	31,718	88.1	2,083	16.4%

주1)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양성교육을 고용노동부「국민내일배움카드」활용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2024년부터 소관부처(고용노동부) 관련 예산 이관
자료: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인원 대비 활동 아이돌보미 증원비율이 저조한 사유로는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돌봄수당은 최저임금의 100.1%~107.8% 수준임.

【 2022년~2026년 최저임금·돌봄수당·이용요금 현황 】

(단위: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최저임금(A)	9,160	9,620	9,860	10,030	10,320
전년대비 증	440	460	240	170	290
돌봄수당(B)	9,170	9,630	10,110	10,590	11,120
전년대비 증	440	460	480	480	530
B/A	100.1	100.1	102.5	105.6	107.8
주휴수당(C)	1,380	1,450	1,520	1,590	1,670
이용요금(B+C)	10,550	11,080	11,630	12,180	12,790
전년대비 증	510	530	550	550	610

자료: 성평등가족부

동 사업의 집행률을 보다 제고하고 돌봄서비스의 확대라는 사업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는, 예산 증액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통해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2335-352)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의 사업출연금의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전액 교부한 것은 사업의 집행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사업 수행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양육비이행관리원[185][186]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 양육자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관련 법률 상담, 소송,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사업으로,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 집행실적은 예산현액 287억 3,000만원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전액 교부되었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교부액 287억

18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해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2. 29.)되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4년 9월 27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신설되었음.

18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⑤ (생 략)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 3. 26., 2024. 10. 16.>
1.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4.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8.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이하 생략)

3,000만원 중 194억 1,9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67.6%임.

【 2025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평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차년도이월액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8,730	28,730	-	-	28,730	-	28,730	19,419	-
· 인건비	5,501	5,501	-	-	5,501	-	5,501	5,501	-
· 운영비	2,263	2,263	-	-	2,263	-	2,263	2,263	-
· 사업비	20,966	20,966	-	-	20,966	-	20,966	11,655	-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교부와 집행률 제고 필요

2025년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기관운영출금 77억 6,400만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출연금 209억 6,600만원을 각각 교부하였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교부받은 기관운영출연금 전액이 집행되었는데 반해, 사업출연금은 교부액 209억 6,600만원 중 116억 5,500만원이 집행되어 교부액 대비 집행률이 55.6%로 저조함.

【 2025년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세부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성평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예산현액	집행액	교부액(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8,730	28,730	28,730	-	28,730	19,419	-	9,311
· 기관운영 출연금	7,764	7,764	7,764	-	7,764	7,764	-	-
· 사업출연금	20,966	20,966	20,966	-	20,966	11,655	-	9,311
- 법률지원서비스	-	-	1,802	-	1,802	1,801	-	1
- 양육비이행촉진서비스	-	-	120	-	120	120	-	-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	-	1,601	-	1,601	761	-	840
- 양육비선지급 지원	-	-	16,200	-	16,200	7,730	-	8,470
- 양육비이행종합정보서비스 제공및운영	-	-	1,243	-	1,243	1,243	-	-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사업출연금의 저조한 집행률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세부사업인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사업과 2025년 7월 새로이 시행된 양육비선지급 제도와 관련된 ‘양육비선지급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47.5%, 47.7%로 저조한 것에 기인함.

이와 같이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사업과 ‘양육비선지급 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은 2025년 교부된 전체 사업출연금 209억 6,600만원 중 2025년 7월 이후에도 62억 9,000만원이 교부되는 등 관련 사업예산 전액이 교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바, 이는 각 사업의 집행정도를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특히 ‘양육비선지급 지원’은 7월1일이라는 제도시행 시기, 신청과 선지급금 결정 기간 및 월별 집행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부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양육비선지급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가구, 명)

구분	사업출연금 실집행액	양육비 선지급 지급액	선지급 신청 가구	선지급 결정 가구수	선지급금지원 자녀수
1월말	564	-	-	-	-
2월말	845	-	-	-	-
3월말	344	-	-	-	-
4월말	802	-	-	-	-
5월말	144	-	-	-	-
6월말	652	-	-	-	-
7월말	225	62	3,529	231	389
8월말	375	346	860	540	866
9월말	1,106	960	715	882	1,388
10월말	1,696	1,609	444	1,034	1,625
11월말	2,500	2,472	426	1,181	1,862
12월말	2,402	2,281	495	1,115	1,750
합계	11,655	7,730	6,469	4,983	7,880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향후 성평등가족부는 제도정착 과정을 살펴보아 가면서 사업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6년 10월 이후에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소득요건[187]이 적용되지 않아 양육비

187) **종전「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00호, 2026. 4. 28.,일부개정 이전 법)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선지급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른 사업출연금 교부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교부한 기관운영출연금 중 인건비 55억 1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임금협약 체결(2025.12.30.)에 따른 급여 인상 소급분[188] 및 연가보상비(1억 6,5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4억 9,300만원) 등의 집행에 따라 연도말에 집행된 것으로 설명함.

그러나 이러한 연도말의 임금협약 체결은 자칫 인건비 잔액 집행을 위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상반기 인건비 집행 정도를 고려하여 되도록 일찍 협의를 시작하여 임금협약 체결이 연말이 아닌 보다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150 이하인 경우
3. (생 략)
② ~ ④ (생 략)

188) 공통 처우개선 3%

나. 양성평등기금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331-431)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2025년에 지원 요건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65% 이하)하면서 실집행률(97.4%)이 이전에 비해 개선되었는데, 향후 한부모가족 통계와 증감 추세, 소득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면밀히 지원 대상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집행잔액의 반납 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미반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반납 촉구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189] 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 및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 양육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복지급여·우편요금 및 부정수급신고포상금

18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 집행실적은 계획현액 5,528억 3,300만원 중 5,528억 2,5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현액 대비 99.99%가 집행되었음.

【 2025년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52,833	-	552,833	552,825	-	8	572,246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552,790	-	552,790	552,790	-	-	572,203
· 금융조회 우편요금	13	-	13	5	-	8	13
· 신고포상금	30	-	30	30	-	-	30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한부모가족 인구통계 반영 필요

2025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계획현액 5,527억 9,000만원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음.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실적은 5,382억원이 집행되어 계획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97.4%임.

【 2025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552,790	552,790	552,790	-	552,790	552,790	538,200	14,590	97.4%

자료: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 및 생활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경상보조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그밖의 지역 80%임.

【 2025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내용 】

지원종류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고교 이하 재학시 22세 미만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가구도 동일하게 지원)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저소득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교육급여와 중복지급 제한)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생계급여와 중복지급 제한)	가구당 월 5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의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23만원(2024년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5만원(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은 월 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월 5만원, 전년과 동일), 아동교육지원비는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원을 지급하였음.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계획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22년 이후 계획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계획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현액(A)	306,599	421,205	495,857	535,552	552,790
집행액(교부액)	306,599	421,205	445,265	517,613	552,790
실집행액(B)	298,432	394,852	416,950	474,965	538,200
실집행률(B/A, %)	97.3%	93.7%	84.1%	88.7%	97.4%

자료: 성평등가족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계획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90% 이상으로 양호하였음. 이후 2023년에는 84.1%, 2024년에는 88.7%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다가 2025년 집행률은 97.4%로 전년 대비 8.7%p 증가되었음. 이러한 실집행률의 증가는 성평등가족부의 물량조정과 아동양육비 월 지원액 증액(21만원→23만원, 9.5% 증액)이 주된 원인으로 보임.

【 2021년 이후 아동양육비 지원기준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명)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이하)	52	58	60	63	63	65
지원연령 (미만)	18세	18세	18세	18세(고등학교 재학 자녀포함)		
지원단가(월, 만원)	20	20	20	21		23
아동양육비 수혜 아동수(증가율)	188,361	203,816 (8.2)	212,340 (4.2)	**240,421** **(13.2)**	**248,967** **(3.6)**	-
복지급여 실집행 총액(국비,증가율)	298,432	394,852 (32.31))	416,950 (5.6)	**474,965** **(13.9)**	**538,200** **(13.3)**	-

주) 2022년 실집행액 증가 요인 : '21년에는 생계급여와 중복시 절반 금액(월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22년부터 생계급여와 병급이 가능하여 전액(월20만원) 지원에 따라 실집행액 증가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한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전체의 집행실적은 상당히 개선된 데 반해, 계획액 규모가 다소 작은 추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은 각각 89.7%와 77.2%가 집행되었음.

또한 지원대상을 확대(중·고등학생→초·중·고등학생)한 아동교육지원비는 계획현액 17억 2,000만원 중 17억 7,1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103.0%임.[190]

이러한 초과 또는 과소 집행이 일어나는 것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산정이 다소 부정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190) 초등학생까지의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목표인원을 전년의 2배가량 증가 시켜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목표인원(24,102명)보다 많은 학생(25,399명)에게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집행률이 103.0%가 된 것이고, 재원은 내내역사업의 예산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내역사업 전체 예산으로 집행함.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사업별·연도별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명, 가구)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아동양육비	계획현액(A)	297,393	405,174	475,264	514,101	531,587
		집행액	297,393	405,174	426,774	496,764	531,587
		실집행액(B)	287,594	378,541	399,447	456,871	518,966
		실집행률(B/A)	96.7	93.4	84.0	88.9	97.6
		목표인원(C)	204,274	221,475	259,089	266,836	251,920
		지원인원(D)	188,361	203,816	212,340	240,421	248,967
		D-C	△15,913	△17,659	△46,749	△26,415	△2,953
	추가 아동양육비	계획현액(A)	8,287	15,112	19,739	20,564	19,416
		집행액	8,287	15,112	17,725	19,875	19,416
		실집행액(B)	10,181	15,672	16,626	17,117	17,412
		실집행률(B/A)	122.9	103.7	84.2	83.2	89.7
		목표인원(C)	21,179	24,247	31,515	32,833	30,998
		지원인원(D)	22,247	24,374	25,960	26,653	26,537
		D-C	1,068	127	△5,555	△6,180	△4,461
	아동교육지원비	계획현액(A)	787	787	790	820	1,720
		집행액	787	787	816	909	1,720
		실집행액(B)	593	584	816	904	1,771
		실집행률(B/A)	75.3	74.2	103.3	110.2	103.0
		목표인원(C)	12,332	12,332	11,067	11,488	24,102
		지원인원(D)	9,176	9,291	11,414	12,700	25,399
		D-C	△3,156	△3,041	347	1,212	1,297
	생활보조금	계획현액(A)	132	132	64	67	67
		집행액	132	132	57	65	67
		실집행액(B)	61	55	61	73	52
		실집행률(B/A)	46.2	41.7	95.3	109.0	77.2
		목표가구(C)	290	290	139	145	145
		지원가구(D)	90	112	129	120	115
		D-C	△200	△178	△10	△25	△30

자료: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은 2025년 전국 가구수 2,324만 가구이고, 한부모가족은 14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6.4%인데, 2020년 이후 한부모가족 가구와 그 중 18세이하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 가구 수 및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전국한부모가족 현황 】

(단위: 백만원, %, 명, 천가구)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체 가구			21,485	22,023	22,383	22,728	22,997	23,246
일반 가구			20,927	21,448	21,774	22,073	22,294	22,495
	한부모가구		1,533	1,510	1,494	1,493	1,491	1,477
	막내 자녀	18세 이하	373	369	355	350	349	342
		모자가족	251	250	242	240	241	238
		부자가족	122	119	113	110	108	104
		19세 이상	1,160	1,141	1,139	1,143	1,142	1,135
	비율(한부모/전체)		7.1	6.9	6.7	6.6	6.5	6.4

자료: 성평등가족부

【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 】

(단위: 세대, 명)

구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1년	185,461	463,084	144,792	362,989	37,205	92,796	1,056	2,458	2,408	4,841
'22년	190,421	474,194	149,888	374,447	37,209	92,611	1,307	3,054	2,017	4,082
'23년	194,273	484,180	154,164	384,939	37,116	92,679	1,367	3,222	1,626	3,340
'24년	199,409	497,012	159,027	396,873	37,519	93,852	1,435	3,361	1,428	2,926
			(79.7%)	(79.9%)	(18.8%)	(18.9%)	(0.7%)	(0.7%)	(0.7%)	(0.6%)
'25년	208,020	517,709	166,032	413,701	39,312	98,121	1,460	3,390	1,216	2,497
			(79.8%)	(79.9%)	(18.9%)	(18.9%)	(0.7%)	(0.7%)	(0.6%)	(0.5%)

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 포함)

자료: 성평등가족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말 기준

이러한 감소 경향에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의 소득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지원대상인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수는 증가하고 있음.

향후 기금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부모가족 유형별 통계와 증감 추세, 소득 등 제반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3년마다 실시되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나는 한부모가족의 정책수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보조금 정산 반납률 제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경우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91]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92]에 따르면, 보조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19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2)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00p

(10)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 「국고금관리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무이자 약정은 금지)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되, 최소한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에는 반납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193].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교부·반납·정산 현황을 보면, 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은 2024년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2025년도 내에 반납하지 않았음.[194]

전북・전남・경북의 경우 2022년, 2023년, 2024년에 각각 교부된 보조금의 잔액을 사업이 완료된 다음 해까지 반납하지 않아 반납 기한을 준수하지 않음.[195][196]

2025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교부액 중 불용액은 140억 6,700만원으로 2024년(426억 4,800만원), 2023년(285억 9,700만원), 2022년(263억 5,300만원)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기는 했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세입관리 운영에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193)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집행잔액 반납액은 양성평등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귀속됨.
194) 강원 등 5곳은 집행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26년에 반납하였음.
195) 2022년에 집행된 보조금의 잔액을 2023년까지 반납하지 않고 2024년에 반납한 지방자치단체는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고, 2023년에 집행된 보조금의 잔액을 2024년까지 반납하지 않고 2025년에 반납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임.
196) [참고자료] 8. 2022년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교부·정산·반납현황, [참고자료] 9. 2023년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교부·정산·반납현황

【 2024년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교부·정산·반납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피보조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A)	집행액	교부액	계획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B/A)	정산 보고일	잔액 반납일	잔액 반납액
1	서울	38,657	36,786	36,786	36,786	33,565	3,221	86.8%	'25.3.12.	'26.1.15.	0
2	부산	40,168	37,973	37,973	37,973	34,875	3,098	86.8%	'25.2.18.	'25.12.19.	0
3	대구	28,376	28,061	28,061	28,061	25,437	2,624	89.6%	'25.2.10.	'25.4.21.	0
4	인천	42,547	41,330	41,330	41,330	37,968	3,362	89.2%	'25.2.19.	'25.12.26.	0
5	광주	24,107	23,219	23,219	23,219	21,289	1,930	88.3%	'25.2.13.	'25.12.26.	0
6	대전	19,210	18,583	18,583	18,583	16,505	2,078	85.9%	'25.1.23.	'25.12.24.	0
7	울산	13,143	13,084	13,084	13,084	12,007	1,077	91.4%	'25.2.6.	'25.10.17.	0
8	세종	2,780	2,780	2,780	2,780	2,653	127	95.4%	'25.2.4.	'25.11.26.	0
9	경기	118,612	113,112	113,112	113,112	106,291	6,821	89.6%	'25.2.7.	'25.11.25.	0
10	**강원**	**18,787**	**18,772**	**18,772**	**18,772**	**16,334**	**2,438**	**86.9%**	**'25.3.6.**	**'26.1.5.**	**0**
11	충북	20,824	20,332	20,332	20,332	18,662	1,670	89.6%	'25.2.12.	'25.11.27.	0
12	**충남**	**24,009**	**23,831**	**23,831**	**23,831**	**21,677**	**2,154**	**90.3%**	**'25.3.11.**	**'26.3.25. (일부반납)**	**1,368**
13	**전북**	**29,914**	**28,903**	**28,903**	**28,903**	**26,393**	**2,510**	**88.2%**	**'25.2.24.**	**'26.3.3. (일부반납)**	**1,560**
14	**전남**	**23,783**	**23,279**	**23,279**	**23,279**	**21,122**	**2,157**	**88.8%**	**'25.2.27.**	**'26.2.4. (일부반납)**	**940**
15	**경북**	**33,099**	**32,002**	**32,002**	**32,002**	**29,193**	**2,809**	**88.2%**	**'25.2.11.**	**'26.1.19. (일부반납)**	**650**
16	경남	46,532	45,106	45,106	45,106	41,242	3,864	88.6%	'25.2.7.	'25.12.17.	0
17	제주	11,004	10,460	10,460	10,460	9,752	708	88.6%	'25.2.6.	'25.9.12.	0
	계	**535,552**	**517,613**	**517,613**	**517,613**	**474,965**	**42,648**	**88.7%**			**4,518**

자료: 성평등가족부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331-433)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는 2025년 실집행률이 78.4%로 저조한 것을 비롯해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원 대상자인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세대수와 세대원수 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예산 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소년한부모의 상황,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197]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198]을 근거로 수행되고 있음. 동 사업은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와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197)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④ ~ ⑤ (생 략)

19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이하 생략)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집행실적은 계획현액 27억 2,300만원 중 27억 1,1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9.6%임.

【 2025년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723	-	2,723	2,711	-	12	2,301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2,582	-	2,582	2,582	-	-	2,185
·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141	-	141	129	-	12	116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률 제고 필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에게 아동 1인당 월 37만원의 아동양육비(0~1세 영아 양육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월 40만원)와 가구당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은 서울은 50%, 그 밖의 지역은 80%임.

【 2025년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내용 】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3~65%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14만원
	0~1세 영아 추가금	자녀 1인당 월 3만원
자립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25억 8,2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실적은 계획현액 대비 78.4%인 20억 2,500만원임.

【 2025년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2,582	2,582	2,582	-	2,582	2,025	557	78.4%

자료: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의 최근연도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67.0%, 2022년 68.2%에 불과하였고, 2023년에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기준 중위소득 60% → 65%)하고, 예산을 전년 대비 11억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실집행률은 76.5%로 저조하였음.

2025년에는 아동양육비를 37만원으로 상향(2024년 35만원)하고,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000만원 감액하였음에도 실집행률이 78.4%로 전년(84.8%) 대비 감소하였음.

【 2022년~2025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실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성평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계획액 (A)	집행액	교부액	계획 현액	실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년	4,913	4,765	4,765	4,765	3,351	1,414	68.2
2023년	3,786	3,786	3,786	3,786	2,895	891	76.5
2024년	2,852	2,852	2,852	2,852	2,418	434	84.8
2025년	2,582	2,582	2,582	2,582	2,025	557	78.4

자료: 성평등가족부

동 사업의 지원 대상자인 저소득 청소년한부모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세대와 세대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예산 규모를 보다 정확히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현황 】

(단위: 세대,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대	3,213	2,408	2,017	1,626	1,428	1,216
세대원	6,513	4,841	4,082	3,340	2,926	2,497

자료: 성평등가족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도말 기준

한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동 사업 계획안을 보면 아동양육비를 자녀 1인당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하면서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양육비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음.

이에 따라 0~1세의 영아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가 지급받는 지원금액(한부모가족 복지급여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은 2024년과 동일하게 2025년에도 자녀 1인당 월 40만원[199]으로 고정되었는데,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육아와 경제활동의 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소년한부모의 상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지원 규모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199) 기준 중위소득의 63~65% : 월 40만원(청소년한부모 35만원+영아 추가 5만원 → 청소년한부모 37만원+영아 추가 3만원)
기준 중위소득의 63%이하 : 월 40만원(한부모가족 21만원+청소년한부모 15만원+영아 추가 4만원 → 한부모가족 23만원+청소년한부모 15만원+영아 추가 3만원)

3)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2356-432)

○ 가족전용상담전화 사업의 수행기관이 연초 사업계획 없던 사업을 수행한 점, 인건비 잔액을 그 재원으로 한 점, 성평등가족부의 이러한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출연기관인 점, 해당 기관의 사업에 가족상담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출연금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4차에 걸쳐 교부되었는데 4개 자치단체의 경우 불용액이 4차 교부액보다 큰 것은 집행현황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한내 집행잔액 반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집행과 잔액 반납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수요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족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집행실적은 계획현액 1,458억 7,700만원 중 1,453억 9,4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현액 대비 99.7%가 집행되었음.

【 2025년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5,197	680	145,877	145,394	-	483	151,379
· 가족센터 운영	92,928	-	92,928	92,800	-	128	96,176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2,132	-	12,132	12,093	-	39	13,716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3,252	-	33,252	33,007	-	245	34,069
·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400	-	400	400	-	-	400
·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5,782	-	5,782	5,782	-	-	5,947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703	-	703	636	-	67	671
·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680	680	676	-	4	400

자료: 성평등가족부

동 세부사업 중 보조사업인 가족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등 5개 사업의 집행실적은 교부액 1,440억 8,200만원 중 교부액 대비 96.6%인 1,389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보조금 사업 수행기관[200]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이 99.3%로 가장 높고,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70.5%로 가장 낮으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92.7%, 가족센터 운영은 97.3%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98.7%를 나타내고 있음.

200) 2025년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직접(위탁)수행(계획액 13억 8,300만원)과 보조사업 (계획액 1,444억 9,400마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

【 2025년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내역사업명)	성평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5,877	145,394	-	483	144,082	-	144,082	138,987	-
· 가족센터 운영	92,928	92,800	-	128	92,800	-	92,800	90,387	-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2,132	12,093	-	39	12,093	-	12,093	11,972	-
·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33,252	33,007	-	245	33,007	-	33,007	30,607	-
·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400	400	-	-	400	-	400	282	-
·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5,782	5,782	-	-	5,782	-	5,782	5,739	-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703	636	-	67	-	-	-	-	-
·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680	676	-	4	-	-	-	-	-

자료: 성평등가족부

나)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사업비의 적정 집행 필요 등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사업은 성평등가족부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가족상담전화를 운영함.

동 보조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교부되어 가족상담전화와 다누리콜센터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가족상담전화는 미혼모부·한부모가족 등 가족정책 종합정보제공 및 심리정서 지원하고, 다누리콜센터는 이주여성 등 폭력피해 긴급지원, 종합정보,

통역서비스를 제공(13개 언어 지원)하기 위해 전화, 문자, 온라인(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다누리포털 등 누리집, 카카오톡), 대면 상담을 수행함.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사업을 수행한 보조사업자의 2025년도 집행실적은 계획현액 57억 8,200만원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4차례에 걸쳐 전액 교부되어 인건비 39억 4,2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고, 인건비 일부를 운영비(일반연구비)로 전용한 운영비 예산현액 18억 4,000만원 중 17억 9,8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5년도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및 목	세목	당초	최종	집행액	집행잔액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	5,782	5,782	5,739	43
-인건비	상용임금(110-03)	4,210	3,942	3,942	-
-운영비	-	1,572	1,840	1,798	43
	운영비(210)	1,474	1,473	1,433	41
	여비(220)	12	12	12	0
	업무추진비(240)	2	3	3	0
	직책수행경비(250)	4	4	4	0
	연구용역비(260)	70	268	268	0
	유형자산(430)	10	80	79	1

주) 연구용역비는 당초에 계상되었다가 자산취득비(430-01)로 전용함에 따라 '가족전용상담전화 및 업무 교환기 통합 구축' 사업 추진 전에 사실상 연구용역비는 없는 상황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25년도 가족상담서비스부(가족상담정보전화센터) 연간 사업결과 보고서」(2025.12)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11월에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가족전용상담전화시스템 교환기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계획 및 예산 변경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 인건비 집행 잔액을 자산취득비성 경비를 일반연구비로 '가족전용상담전화 및 업무 교환기 통합 구축[201]' 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경비를 연도말에 집행하였음.

'가족전용상담전화 및 업무 교환기 통합 구축' 사업의 집행과정 살펴보면, 연초 사업계획 없이 집행된 점, 정산 반납되어야 할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자산취득비성 경비를 일반연구비로 계상하여 연도말일에 집행한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동 사업의 수행주체를 감안하면 출연금으로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우선 인건비 집행잔액의 일반연구비 전용과 관련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11월에 인건비 집행액 잔액을 활용하여 '가족전용상담전화 및 업무 교환기 통합 구축' 사업을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202] 성평등가족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승인(2025.11.27.)을 받아 인건비(상용임금, 110-03)를 연구용역비(일반연구비, 260-01)로 전용하였음.

---

201) 「전화시스템 기능고도화」
통합 커뮤니케이션 IP전화 교환기(UP IP-PBX) 환경 구축을 위한 PBX, CTI, IVR 등 상담시스템 통합구성을 위한 솔루션 도입
※ 기존 사용 전화기 단종 및 교환기 노후화로 잦은 장애로 상담서비스 중단 발생
※ 전화기, PBX(서버, 게이트웨이)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연계되는 콜시스템 특성상 전화기 교체 시 PBX 통합 교체 필요
→ Avaya Core 서버, 미디어게이트웨이, 전화기 도입, 기본 PBX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인프라 정비로 전화시스템 기능 고도화

202) 「2025년 가족전용상담전화시스템 교환기 교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안)」(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5.11.12.)

그런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는 타비목으로의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정[203]하고 있는바, 인건비 집행 경향을 살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 반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가족부는 당초 사업계획에도 없던 새로운 사업[204]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인건비(집행잔액)를 타비목으로 전용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205]하였는바, 인건비 집행잔액의 관리 및 예산변경의 적정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되었어야 할 것으로 봄.

둘째, 자산취득비성 경비의 일반연구비 계상 등의 부적정과 관련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성평등가족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승인 후 일반연구비(260-01)로 '가족전용상담전화 및 업무 교환기 통합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전화기, 서버, 라이선스 〈교환기(PBX), IP전화기, CTI, IVR〉 [206]등을 구매하여 설치하였음.

---

203)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43~44p
인건비에서 타 비목으로 전용
ㅇ 인건비 관련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은 다음의 경우로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 정부업무의 외부 위탁.대행에 따라 관련 인건비를 관리용역비(210-15목),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등 위탁.대행 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 포함) 및 산재보험 등 고용부담금(320-09목)을 지급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 기타 채무상환, 재해대책비, 법정경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에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

204) 연초 성평등가족부가 승인(2025.1.9.)한 연간 사업계획서에는 '상담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일반연구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25.3.22.에 자산취득비로 전용됨에 따라 2026년 11월말의 사업계획변경 승인 시에는 일반연구비가 없는 상황으로 예산상으로 새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봄.

20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 사업이 유형자산의 취득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사업으로 설명되고 있는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세부 지출 성격을 구분하여 전화기·서버·라이선스 등 유형자산 취득은 자산취득비[207]로, 시스템 구축 및 전산용역 관련 비용은 일반연구비[208]로 각각 편성·관리[209]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한편 당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당초 IP전화기 100대를 구입할

---

206) • PBX(Private Branch Exchange, 사설교환기)는 기관 내부의 여러 전화기와 외부 통신망을 연결하는 핵심 전화교환시스템,(PBX는 상담센터뿐만 아니라 기관 전체의 일반 업무전화에도 사용 가능
• IVR(nteractive Voice Response, 자동음성 안내 분류답)은 PBX로 들어온 전화에 자동으로 음성안내를 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적절한 상담서비스로 연결하는 시스템
• CTI (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전화와 PC·상담시스템 연동)는 PBX의 전화기능과 상담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상담프로그램·고객정보시스템 등을 연동하는 기술

207)「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84~285p의 표 내용
430-01 자산취득비
1. ~ 5. (생 략)
6.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7. ~ 8. (생 략)
9.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 **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NW(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
10. (생 략)

208)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87~188p
적용범위
ㅇ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전산용역 :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임상연구용역 : 국립병원,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상연구
- 기타 연구용역 :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 관련 제반 용역

209)「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 ② (생 략)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보조금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의 **기계, 장비, 물품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제1항에 따라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계획이었으나 상담인력 규모보다 훨씬 많은 200대를 구입하였음. 이에 대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상시인력 외에 재택근무 및 원격 지원용, 장애 대비 즉시 교체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는 하나, 향후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비목 개편과 관련하여 동 내역사업의 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320-01)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제7항[210]에 따라 가족상담 업무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사업의 하나인 점, 보조사업자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인 점, 진흥원에 관련 전담조직이 있는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11]에서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이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을 계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성평등기금의 보조사업이 아닌 건강가정진흥원에의 출연금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10)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⑥ (생 략)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2. ~ 9. (생 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생 략)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관리 필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정착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사업으로, 서울은 사업비의 30%, 지방의 경우 50~70%를 국비로 지원함.

2025년도 집행실적은 계획현액 332억 5,200만원 중 330억 7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9.3%임.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액 330억 700만원 중 306억 700만원이 집행되어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92.7%이고 성평등가족부의 당초 계획액(332억 5,200만원) 대비 실집행률은 92.0%임.

【 2025년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결산 및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불용액	실집행률
33,252	33,252	33,007	245	33,007	33,007	30,607	2,400	92.7%

자료: 성평등가족부

2025년 시·도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교부·집행 현황을 보면, 울산・강원・충북・충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성평등가족부 4차 교부액보다 불용액이 크게 나타났음. 이러한 집행은 집행률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4차 교부액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시·도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교부·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시·도	성평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계획액 (A)	집행액	교부액					계획 현액	실 집행액 (B)	불용액	실 집행률 (B/A)
			1차	2차	3차	4차	계				
서울	1,869	1,869	754	565	377	173	1,869	1,869	1,743	126	93.2
부산	1,653	1,653	668	501	334	151	1,653	1,653	1,595	58	96.4
대구	1,672	1,672	675	506	338	153	1,672	1,672	1,647	25	98.5
인천	1,850	1,850	739	556	370	185	1,850	1,850	1,708	142	92.3
광주	1,144	1,144	464	348	232	100	1,144	1,144	1,114	30	97.3
대전	914	914	372	279	186	77	914	914	910	4	99.5
울산	907	907	369	277	185	77	907	907	829	78	91.3
세종	228	228	97	73	49	9	228	228	227	1	99.5
경기	4,697	4,697	1,885	1,414	943	456	4,697	4,697	4,304	393	91.6
강원	1,931	1,931	778	584	389	179	1,931	1,931	1,600	331	82.8
충북	1,628	1,628	657	493	329	149	1,628	1,628	1,460	168	89.7
충남	2,103	2,103	848	636	424	196	2,103	2,103	1,767	336	84.0
전북	2,668	2,668	1,073	805	537	253	2,668	2,668	2,469	199	92.5
전남	3,590	3,590	1,442	1,082	721	345	3,590	3,590	3,371	219	93.9
경북	2,806	2,806	1,129	846	564	267	2,806	2,806	2,646	160	94.2
경남	2,740	2,740	1,102	827	551	260	2,740	2,740	2,620	120	95.6
제주	607	607	249	187	124	47	607	607	597	10	98.3
유보액	245	-	-	-	-	-	-	-	-	-	-
계	33,252	33,007	13,301	9,978	6,651	3,078	33,007	33,007	30,607	2,400	92.0

자료: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12]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평등가족부는 보조금 교부시 집행 독려 및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경우 기한 내에 보조금의 정산과 집행잔액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213]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첨부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14] 제26조에 따라 보조금

---

21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1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 ③ (생 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시·도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정산보고·잔액반납 현황을 보면, 6개[215]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4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인 2025년 내에 반납하지 않았음.

성평등가족부는 기한 내 정산보고와 잔액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정산 및 반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5) 서울·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

【 시·도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정산보고·잔액반납 현황 】

(단위 : 천원)

피보조기관명	2023년 사업				2024년 사업			
	정산보고일 (기한:24.3.31.)	잔액반납일 (기한:24.12.31.)	정산액	미반납액	정산보고일 (기한:25.3.31.)	잔액반납일 (기한:25.12.31.)	정산액	미반납액
서울	2024.06.12.	2025.11.15. (납부 완료)	836,754		2025.03.31.	2025.11.25. (일부 납부)	170,294	4,865
부산	2024.02.29.	2024.12.27.	286,096		2025.03.18.	2025.12.08.	80,528	
대구	2024.03.14.	2024.12.30.	67,043		2025.02.21.	2025.11.24.	39,313	
인천	2024.03.25.	2024.12.31.	402,324		2025.03.10.	2025.11.12.	196,282	
광주	2024.02.05.	2025.07.25. (납부 완료)	70,018		2025.02.19.	2025.12.22.	35,755	
대전	2024.03.06.	2024.12.23.	105,426		2025.03.10.	2025.12.26.	74,350	
울산	2024.02.21.	2024.11.01.	164,806		2025.02.26.	2025.10.31.	86,132	
세종	2024.02.28.	2024.10.15.	29,827		2025.02.04.	2025.11.26.	10,109	
경기	2024.03.28.	2025.12.23. (납부 완료)	1,146,451		2025.03.31.	2026.05.26.	698,417	
강원	2024.03.27.	2025.12.18. (납부 완료)	436,846		2025.03.28.	2025.12.31.	345,559	
충북	2024.03.14.	2025.01.13.	353,203		2025.02.04.	2025.11.17.	307,455	
충남	2024.03.20.	2025.11.14. (납부 완료)	680,374		2025.03.19.	2026.01.30.	306,774	
전북	2024.02.29.	2026.01.08. (납부 완료)	501,673		2025.03.10.	2025.12.22. (일부 납부)	346,834	78,237
전남	2024.03.29.	2024.10.31. (일부 납부)	441,628	37,290	2025.03.28.	징수중	373,067	
경북	2024.04.08.	2025.01.23.	687,566		2025.03.10.	2026.06.30.	187,391	
경남	2024.02.29.	2024.12.30.	658,638		2025.03.20.	2025.12.29.	189,576	
제주	2024.03.29.	2024.12.24.	71,234		2025.02.17.	2025.09.12.	19,855	

자료: 성평등가족부

Ⅳ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Ⅳ.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 요약(7월말기준 업데이트)

□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59건)

(2026년 7월말 기준)

시 정 요 구 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1) 과징금 수납률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성과지표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 성과지표 개선 및 여성·가족정책 인지도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 양성평등정책조정·협의 사업 적극적 운영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상설기구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5) 성인지 분석대상사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6)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여성친화도시지정확대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7) 다양성 교육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8)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대학생 참여율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9) 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0)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에 프리랜서 포함 필요 등	제도개선	조치중
(11)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출연금 정산 사후관리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방식 검토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13) 지역피해자권익 보호기관의 조속한 설치 등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4)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 홍보 강화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5)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집행관리 미흡	주의	조치완료
(16) 국립청소년 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집행 부진	제도개선	조치중
(17)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시 정 요 구 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18) 광역지원센터 업무 범위 개선 및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모색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1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결산 미분리	제도개선	조치완료
(20) 사전절차 건립여건 사전 검토강화 등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 및 사업기간·방식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 모색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1) 국고보조 청소년 사업의 부적절한 운영 여부검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 점검 적정 예산편성을 통한 집행률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3) 국고보조 청소년사업의 부적절한 운영 여부검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4) 학교 밖 청소년자립·취업지원서비스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5)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예산 현실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6)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 현실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7)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 현실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8)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29)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요 추계의 정밀화, 보조금 정산·반납관리 강화,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0)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적정예산 편성 및 홍보 강화 등 실집행률 제고방안 강구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1) 청소년 한부모 특화성이 부족한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 타 사업으로 이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2)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 방안 모색, 보조금 교부 및 정산관리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33) 사회복무요원 인력 적정 배정 노력 및 서비스 공백 방지 방안 검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4)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확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5)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안정적 지원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36) 기금 운용 안정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37)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등	주의	조치중
(38)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시 정 요 구 명	시정요구 유형	조치상황
(39) 보조금 등 횡령 관계자 국고보조사업 배제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실집행 제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1) 국립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4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등	제도개선	조치완료
(43)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 방안 강구 필요	주의	조치완료
(44) 수요 감소 원인 분석 및 현실적 수요에 기반한 예산편성 필요	주의, 제도개선	조치완료
(45) 상이한 사업의 내역사업 분리 및 자의적 예산 조정 집행 금지 필요	시정	조치완료
(46) 양육비이행 관리원의 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등	제도개선	조치완료
(47) 새일여성인턴의 고용유지율 등 사업 성과 제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8) 새일센터직업교육훈련의 성과 관리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49)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의 비목 일원화 및 예산 조정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0) 사업별 성과지표의 개발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1) 정책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별 관리 개선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2) 유엔여성기금 기여금의 적정규모 조정 필요	시정	조치완료
(53) 양성평등위원회 명단 공개 필요	시정	조치완료
(5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리·감독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5) 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개선 필요	시정	조치완료
(56)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개선 필요	시정	조치완료
(57)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의 전국 확대 필요	제도개선	조치완료
(58) 성매매 피해자 등의 취업 및 진학 실적 추적관리 필요	제도개선	조치중
(5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주의	조치완료

2. 2024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59건)

(2026년 7월말 기준)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1)과징금 수납률 제고 필요	○ [지적사항] 2024년에는 일반회계,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보호기금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어 과징금으로 징수 결정되었음 ○ 2024년 과징금 징수결정액 39억원 중 1억 8,900만원이 수납되고 37억 1,100만원이 미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4.8%로 매우 저조함 - 성평등가족부는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납부를 거부하기 때문에 수납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무재산 및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짐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와 연계하여 압류·공매 등의 집행을 강화하고, 파산 또는 무재산이 최종 확인될 때는 불납결손 처리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	제도개선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채권 회수 위탁, 압류재산 공매 추진, 체납자 무재산 등의 경우에는 불납결손 처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에 노력함 - 세입체납정리위원회를 개최('25.4월)하여 파산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불납결손 처리(과징금 32백만원), 채권회수 계획 수립('25.6월) 등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 성과지표 개선 필요	○ [지적사항] 2024년도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을 살펴보면,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5개 중 미달성 사업은 2개이며 미달성률이 40.0%로, 달성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프로그램 목표(성과지표: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3년 연속 미달한 바, 성과목표 달성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라는 성과지표는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라는 프로그램목표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취업 이후 고용유지 현황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현행 성과지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라는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	제도개선	○ 새일센터의 중장기적 고용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26년 성과지표를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률'로 보완하고 신규지표로 '여성의 고용유지지원 서비스 참여자수' 마련 * ('24, '25) ①새일센터를 통한 취창업 건수, ②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율 → ('26) ①새일센터를 통한 취업률, ②여성의 고용유지지원 서비스 참여자수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3)성과지표 개선 및 여성·가족정책 인지도 제고 필요	○ [지적사항]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사업의 성과지표(사이트 이용자 만족도)는 성평등가족부의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려는 동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으며,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 호감도가 낮은 실정임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성별·연령별 맞춤형 홍보전략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	제도개선	○ 성평등·청소년·가족정책의식확산(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27년 성과계획서(안)에 반영함 ○ 조치완료일 : 2026년 6월 30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4)양성평등 정책조정·협의 사업 적극적 운영 및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상설기구화 필요	○ [지적사항] - 2024년도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사업 관련, 양성평등위원회·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 방식이 대부분 서면 방식이라 실질적인 논의 조정에 한계가 있어 보임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지정 또는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고, 8개 부처(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에만 설치되어 있음 ○ [시정요구사항] -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및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면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상설기구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제도개선	○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회의로 추진하는 등 부처간 정책 협력과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구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26.4월 예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근거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미설치 부처에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음 -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음 ○ 조치예정일 - (양성평등위원회) 2026년 6월 30일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6년 12월 31일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5)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은 성과지표 달성률(73.7%)이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79.9%)보다 낮으며, 2년 연속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19개(3년 이상 6개, 2년 이상 13개)에 달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임에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달성률이 평균 달성률(79.9%)에 미치지 못하고, 미달성 사업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성평등가족부는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등 일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부진한 부처가 성과지표 달성률을 제고하도록 독려하고, 미달성 사업에 대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등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제도개선	○ 성과지표 달성률이 부진한 부처의 지표 달성률 제고를 독려하였으며(2회 / 9.30. 및 12.29. / 양성평등담당관 회의) ○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 추진('25.12월) * 성인지 예산제도 효율화를 위한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성과분석 연구 및 '25년 국가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등을 통해 성과지표를 분석·점검* 하고 있으며, '27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정 완료('26.5월) 및 성과가 부진한 사업 등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서 컨설팅 추진(성인지예산센터, '26.6~7월) * 성인지 예·결산서 3년 연속 작성 사업 대상으로 성과평가 실시(250개/'25.4분기) ○ 일부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개선 검토중 ○ 조치예정일: 2026년 12월 31일	조치중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th></tr>
<tr><td>(6)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 방안 마련 필요</td><td>○ [지적사항]
- 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 관련,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과제 중 이행기간이 도과된 미완료 과제의 수와 성평등가족부의 개선권고를 불수용한 과제의 수가 누적되고 있음
※ 미완료과제: 2020년 13건, 2021년 10건, 2022년 13건 불수용과제: 22건(2020년~2022년)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가 도입(2009년)된지 16년이 되는 시점임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2024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06개(46.9%)로,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해당기관에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미이행 과제에 대한 이행완료를 촉구하는 등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불수용 사유들을 분석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확대를 위한 예산·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할 것</td><td>제도개선</td><td>○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관련 지침 반영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최근 권고일수록 이행완료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임
- 권고 후 2년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 시 이행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4년에는 개선 권고의 불수용 과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 향후에도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과제 도출과정에서부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개선권고 과제에 대해서는 점검 및 이행을 촉구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개선 권고 후 2년 경과 시점 이행 완료율
<table><tr><th>구분</th><th>'19년
('20년 권고)</th><th>'20년
('21년 권고)</th><th>'21년
('22년 권고)</th></tr><tr><td>이행 완료율</td><td>79.0%</td><td>80.8%</td><td>83.6%</td></tr><tr><td>점검 시기</td><td>'22.8월</td><td>'23.8월</td><td>'24.8월</td></tr></table>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15일

○ [여성친화도시] '25.12월말 현재 여성친화도시는 107개로 확대하였으며, 지정확대를 위해 신청도시에 대한 사전 컨설팅 시행, 우수사례 포상 및 협약식 개최 등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에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예산·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1월 26일</td><td>조치완료</td></tr>
</table>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7)다양성 교육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다양성 교육 후 사후컨설팅, 우수사례발굴, 인센티브 제공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 (사후 컨설팅) 기업 내 성별 다양성·일생활 균형 등 포용적 조직문화 수준 자가 진단 및 전략 제안 위한 한국형 다양성 성숙도 모형 연구개발('25) - 신규 개설된 심화과정 교육 시 기업별 조직문화 수준 진단 및 HR담당자의 핵심전략 제안·공유('25.11) * '26년 심화교육 시행 횟수 확대 예정 ○ (우수사례 발굴) 기업 다양성 경영 우수사례 발굴·홍보 및 성평등,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확산 위한 성과공유워크숍 개최('25.12) 및 교육 서포터즈단 구성·운영 ○ (인센티브) '다양성 교육 참여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연장 심사 시 가점(3점) 제공' 신규 도입으로 참여 중소기업 수 증가* 및 조직문화 개선 우수기업 대상 장관상(4점) 수여 * ('24) 169개 → ('25) 343개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8)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 대학생 참여율 제고 필요	○ [지적사항]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임에도 폭력예방교육 대상자 중 대학생들의 2023년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58.2%로 상당히 저조함 -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대학생들(MZ세대)을 위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지원 확대, 교육 인터페이스 편의성 개선, 참여 인센티브 제공, 홍보 강화,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대학생 참여율 제고* 위해 '25년 대학(460개) 대상 비대면 컨설팅단 운영(2~11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259회), 대학 예방교육 담당자 대면 컨설팅 교육(8·9월) 등 다양한 대학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대학생 참여율 : ('21년)52.7% →('22년)54.7%→('23년)58.2% →('24년)58.7% - 또한, 대학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를 지속 개발·보급* 하고, 법정의무인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학 현장점검 및 컨설팅 강화** 및 대학 예방교육 모범사례 전파·확산*** 등을 위해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 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및 대학생, 청년 대상 콘텐츠 8종 개발('25.12월) ** '24년 예방교육 실적 부진 대학 및 국공립대학 51개소 대상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25.5~6월) 특히, 권역별 5개 주요 대학에 대해 성평등가족부-교육부 합동 현장점검 실시 *** 대학 폭력예방교육 우수사례 유공 대학 교육부 장관 표창(3점) 수여 등 ○ '26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개정하여 '27년부터 대학 부진기관 기준 상향(참여율 50→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55% 미만) 및 대학 인증·평가 반영 추진을 명시('25.12월 지침 개정 반영) * 대학 당국의 폭력예방교육 대학생 참여율 관심 제고 위해 성폭력 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진대학 및 대학평가원 등에 대학 인증평가 반영 기요청('25.11.26) - 또한 온라인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맞춤형 콘텐츠 7종 개발 추진(~'26.12월)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9)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필요	○ [지적사항] 2024년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2회(서면1회, 대면1회) 개최되고 대면으로 이루어진 1번의 회의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어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실질적으로 심의·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임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조정 및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2025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3회 개최하여 2024년보다 1회 추가 개최함(대면(온라인 2회), 서면 1회) ○ 또한 위원회 소관 사항의 전문적 검토를 하는 전문위원회는 대면 개최하였으며, 장관이 직접 참여함 - 제1전문위 : 성폭력(디지털 성범죄),성희롱 분야(10월) - 제2전문위 : 가정폭력,스토킹, 교제폭력 분야(9월) - 제3전문위 : 성매매,인신매매 분야(10월) ○ 향후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및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0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10)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에 프리랜서 포함 필요 등	○ [지적사항]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비정형 노동자는 현재 성희롱 피해를 입어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함 -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하는 성희롱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형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는 그 규모조차 파악이 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성희롱 실태조사 시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고,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제도개선	○향후 차기 성희롱 실태조사('27) 추진 시,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다만, 조사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사방법 및 표본 설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규모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공공과 민간사업장의 성희롱 피해자 모두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부터 상담, 법률, 의료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음 ○ 조치예정일 : 2027년 12월 31일	조치중
(11)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금 정산 사후관리 강화 필요	○ [지적사항]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국고 반납이나 세입 계상 후 사용하는 일 없이 별도 계좌에서 보관만 하고 있어 출연금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출연금 집행잔액 처리방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출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출연금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출연금 관리 규정을 제정토록 하고 구체적인 반납 금액, 일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출연금 관리 규정」 제정('25.9.8.) ○ 출연사업의 집행잔액 등 반납 징수 요청 및 징수 완료('25.9월) ○ 향후 회계연도 결산 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출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출연금이 투명하게 집행·반납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09월 25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1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방식 검토 필요	○ [지적사항] 출연사업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 등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수행)이 있으나, 전담인력 채용 및 인력운용이 원활하지 않고 실집행률도 2024년 59%로 저조함 ○ [지적사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이 일반회계 사업(여가부 수행)과 출연사업(연구소 수행)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데, 분리 운영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업무 중복·중첩 및 사업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 2025년 8월 기준 지원대상자가 6명(평균연령 95.6세)이고 신규 등록은 2018년 이후 없음 ※ (직접사업) 생활안정지원사업(1,077백만원):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등 지급 (출연사업) 맞춤형 지원사업(335백만원): 비급여치료비, 장제비, 환경개선비 등 지급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념·교육·기록 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제도개선	○현재 생존해계시는 다섯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여생을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음. ○또한, 장기적으로 직접지원 사업 종료 시 지속 가능한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 전환 방안을 검토 중임 ○ 조치예정일 : 2027년 1월 31일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13)지역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조속한 설치 등 인신매매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지적사항]「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나, 동법에 따라 시·도에 설치해야 하는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음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국가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자체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률을 개정하고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후속 협의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제도개선	○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운영 관련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 발의(임미애의원, '26.7) -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운영 주체를 지방정부 → 성평등부로 전환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또는 지역 전문기관 지정) 등으로 설치 추진하는 인신매매방지법 개정 추진 중임 ○ 조치완료일 : 2026년 7월 1일	조치완료
(14)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홍보 강화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2024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에 따르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162,948명)가 상당함에도 2024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치유캠프에 지원을 신청한 청소년은 546명으로 많지 않고, 선정인원(526명) 중 입소인원은 480명으로, 지원 신청인원(대기 인원)이 많지 않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 인원보다 적게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바, 사업 홍보 강화가 필요함 - 또한 시설 입지(전북 무주, 합숙형)로 인해 저소득·취약가구 청소년의 접근이 어려움	제도개선	○ 저소득 가구 청소년 등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을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파악하고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를 강화**함 * 개인정보 유출, 낙인 우려, 학업 부담감 등 ** 진단조사, 치유서비스, 비밀보장 등 안내 영상(2편) 제작·배포, 문자 발송(매월 1회 이상), 협조 공문 발송(매월 2회) 등 ○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 지원 사업의 효과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치유캠프를 확대함 *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캠프 운영 : ('25) 36회 → ('26) 48회 ※ 예산 : ('25) 5,739백만원 → ('26) 6,569백만원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가 상당함에도 지원자가 많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전북 무주 단일 시설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상담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확충하는 등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15)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집행관리 미흡	○ [지적사항] -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의 2024년도 예산 현액은 예산액 6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7억 9,100만원을 더한 13억 9,100만원으로, 이 중 11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85.9%임 - 기본조사설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중간설계비(설계용역 1차 완료금)를 전용절차 없이 실시설계비로 집행하였는 바,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임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비목에 맞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으로 연례적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 현재 비목에 맞게 예산편성 및 집행하였으며, '26년에는 집행가능성 및 사업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함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16)국립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집행 부진	○ [지적사항]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18억 300만원으로, 이 중 7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3,3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이 39.3%로 저조함 - 동 사업의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전용, 이월 및 불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예산편성시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예산의 전용,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절차·집행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분기별 관리·협업 강화, 초기 변수 대응 및 표준 매뉴얼 적용으로 지연·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며,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제도개선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사업 설계 단계의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불용이 발생함 * 중간설계에 대한 적정성·경제성 심사(조달청, '24.6~10월)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기재부, ''24.11~'25.3월), 실시설계에 대한 적정성 심사(조달청, '25.6~8월) 총사업비 조정협의(기재부, '25.9월~)에 상당 기간 소요 ○ 향후 건립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 이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 '26년도 예산은 건립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11억 9백만원(△23.5%)이 감액된 35억 9,200만원 편성 ○ 조치예정일 : 2028년 12월 31일	조치중
(17)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 [지적사항]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당초 예산액 중 29.1%에 해당하는 6억 5,400만원을 감액 전용하였고, 지원 대상을 과다하게 예상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54.6%로 낮았으며, 2022년(37.8%)과 2023년(35.3%)에도 지속적으로 실집행률이	제도개선	○부와 모, 모두 24세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수 감소 추세와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26년 예산을 감축하여 편성하였음 * 예산 : ('25년) 1,590백만원 → ('26년) 1,455백만원 -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포털1388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저조하였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교부함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자치단체는 하반기(8.29. 이후) 교부액의 합보다 불용액이 더 크게 발생함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감소 추세와 실집행 현황 등을 반영한 면밀한 예산 수요 분석을 통해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학교나 복지기관 등 청소년의 접근이 손쉬운 경로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제도 실효성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의 지방자치단체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연내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것		센터에 신청안내 웹포스터를 주기별로 게시하는 등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음 ○ '25년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집행현황을 매월 점검하였고, 지자체의 연내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10월까지 6차에 걸쳐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0월 24일	
(18)광역지원센터 업무 범위 개선 및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모색 필요	○ [지적사항] - 광역지원센터 운영은 2024년도 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지 않은 서울과 울산에도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예산을 법적 근거 없이 광역거점기관을 통해 집행하였음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돌보미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제도개선	○ 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를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이관하는「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완료 * 법률 제21536호, 2026.4.7. 공포, 2026.4.23. 시행 ○ 현재 17개 시·도 광역지원센터 지정 전부 완료('25. 5월) - 향후 모니터링, 평가 등을 통해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및 복무관리 등을 광역지원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법 규정과 현실 간의 괴리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아이돌보미 채용·관리 등에 대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실행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법적 근거 없는 광역거점기관을 통한 예산 집행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법적 근거에 따른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6년 4월 7일	
(19)양육비이행관리원의 결산 미분리	○ [지적사항]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4. 2. 29.)으로 2024년 9월 27일에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신설되었는데, 법인 분리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결산서를 작성·보고하지 않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의 결산 내역에 포함하여 작성·보고되었는바, 별도의 구분 자료를 받아보지 않는 한 정확한 결산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회계보고의 정확성이 저해됨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결산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제도개선	○ 2024년도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역사업으로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2025년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2025년도 결산보고서는 구분하여 작성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사전절차 건립여건 사전 검토 강화 등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 및 사업기간·방식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 모색 필요	○ [지적사항] -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에 지원한 13개소 중 4개 센터의 집행액이 전혀 없는 등 실집행률(71.9%)이 저조하고, 2024년도 실집행액(235억 800만원)이 전년도 이월액(239억 6,200만원)보다 적은 수준으로, 이러한 집행 부진과 이월액 누적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음 - 또한 지자체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공사비 증가로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이며, 보조사업 승인 이후 지자체 재정여건·정책변경에 따라 수시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함 - 2024년도 이월액(29억 4,400만원)이 발생한 센터 총 15곳 중 7곳이 지방비 미확보를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사업 대상 선정 시 사전에 지방비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센터 건립 대상지에 대하여 지방비 확보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센터 사업 대상지 선정시 지방비 조달여건, 가족센터의 유형별 특성, 공사비 증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여건 변동 등 현실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조정,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제도개선	○ 공정률 점검,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현장점검 및 컨설팅*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관리 강화 추진('26.1~12월) * 설계·시공, 공간구성, 센터 운영 등에 대해 지자체 맞춤 서면·현장·집단 컨설팅 제공 (한가원 주관) - 공정률 점검 및 예산 집행 점검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2월), 3~6월 상반기 집행 예정 ○ 예산 편성 방식을 조정하고, 현실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조정 및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족센터 건립 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26.2월) - 예산 편성 방식 조정, 사업 기간 변경한 '27년 가이드라인 개정 완료(2월) * (당초) 3년간(1:3:6) → (변경) 4년간(0.5:0.5:3:6) ○ 조치완료 : 2026년 3월 31일 - 지자체별 교부금 연내 집행 계획 조사(1월 완료) - 가이드라인 개정(2월 완료) - 집행점검 : 계획 수립(2월 완료), 점검(3~6월) - 한가원 컨설팅 : 계획 수립(3월), 컨설팅(3~11월)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1)국고보조 청소년 사업의 부적절한 운영 여부 검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필요	○ [지적사항]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을 수탁한 대전 넥스트클럽은 부적절한 목적 및 내용으로 정부의 청소년 교육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옴. 해당 단체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성평등가족부 예산이 지원되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수탁, 대전광역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수탁, 대전 갈마 청소년문화의집 수탁 등 다수의 청소년 관련 교육·복지 사업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남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넥스트클럽이 그간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위탁, 용역 등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을 수행 시 사용한 교육자료 및 운영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자료 및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사업 수탁 자격 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선정 개입 및 부적절한 단체 수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제도개선	○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 현장 점검 결과 등을 국회 요구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지자체에 위탁기관 선정 관련 협조 요청 공문 시달*(9.17) * 공개모집 원칙,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자 배제 및 외부 전문가 포함, 심사평가표, 회의록 등 선정 과정 기록 관리·보존 철저, 평가 기준 및 선정 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 ○ 성평등가족부 「여성·아동권익 증진지침」을 개정하여 청소년 성문화센터 위탁운영 관련 선정 절차 및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을 보완하고, 위탁기관 선정 취소 세부기준을 신설하였음(12월) ○ 청소년성문화센터 국비 지원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22)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 점검 적정 예산편성을 통한 집행률 제고 필요	○ [지적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액 6억 9,100만원 중 4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이 70.5%로 저조하며, 짝수년도인 2022년의 경우에도 실집행률이 70.2%로 저조하였음. 이는 짝수년도에 진행되는 자연권 시설의 1개소당 평균 점검단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보임	제도개선	○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점검기간 중 시설 개보수, 휴·폐업 등으로 인하여 점검대상 시설이 일부 조정·변경되었기 때문임 ○ 그간의 예산 집행 추이와 집행 단가 분석을 통해 25년도 종합 안전·위생점검 집행률을 제고하였음(집행률 88.2%)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과거 집행실적 및 시설 변동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 점검계획 수립 및 집행률 유지·성과평가 연계를 통해 집행 효율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			
(23)국고보조 청소년 사업의 부적절한 운영 여부 검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필요	○ [지적사항] -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을 수탁한 대전 넥스트클럽은 부적절한 목적 및 내용으로 정부의 청소년 교육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옴 - 해당 단체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성평등가족부 예산이 지원되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수탁,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 대전 갈마청소년문화의집 수탁 등 다수의 청소년 관련 교육·복지 사업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남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넥스트클럽이 그간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위탁, 용역 등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을 수행 시 사용한 교육자료 및 운영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자료 및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사업 수탁 자격 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선정 개입 및 부적절한 단체 수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제도개선	○ 넥스트클럽에서 수탁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과정 등 위·수탁 적정성, 법인 관여 여부 및 사업 운영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음. * 대전광역시, 대전대덕구('25.11.19.), 세종시, 대전동구('25.11.25.)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표준 운영 규칙을 「'26년 청소년사업 안내」에 추가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침 반영 완료 ○ 조치완료일 : 2025년 11월 25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서비스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 [지적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은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의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맞춤형 직업훈련)과 10개월(인턴십 직장체험)로 설정하였는데, 실제 평균 지원기간을 보면, 맞춤형 직업훈련은 2.6개월, 인턴십·직장체험은 2개월로, 청소년이 해당 과정에 참여한 기간이 짧아 취업을 희망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사업효과가 의문시됨 - 시·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실집행률인 87.4% 미만인 지자체가 5개(서울, 울산, 충남, 경북, 제주)이며, 지자체별로 평균 지원기간 및 실집행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실집행률 저조·지원기간 단축 등의 문제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컨설팅 실시 및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참여청소년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중·장기 직업훈련과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관심 직종 반영, 자격증 연계 등 실질적 수요맞춤형 과정을 개발할 것	제도개선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한 권역별 컨설팅 및 집행 점검 등 실시('25.4월) - 시도별 사업운영 컨설팅 실시('25.4월) 후 하반기 예산 집행 계획 조사('25.6월) 및 실집행률 점검·독려(매월) 등 관리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직업훈련과 직장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26년 사업지침 개정('25.12월) - 자립·취업 수요가 높은 후기 청소년(18~24세) 중심으로 희망분야 자격증 취득 및 중장기 훈련과정 우선지원 등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19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5)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예산 현실화 필요	○ [지적사항] - 성평등가족부가 2년 단위로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2023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식사빈도(결식 횟수) 문항이 삭제됨. 학교 밖 청소년 결식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학교 밖 청소년 150명 대상, 장철민의원실 실시)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44%가 최근 한 달 이내 경제적 이유로 결식을 경험했으며, 50.7%가 돈이 없어서 컵라면·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떼운 경험이 있다고 답함 - 소비자물가지수(CPI)의 품목별 지수 중 외식물가지수는 2025년 7월 기준 125.08로 2020년 대비 25% 상승했으나,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상 한 끼당 지원금액을 2023년에 1천원(4천원→5천원) 인상한 이후 3년째 동결하고 있는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필요 인원 및 현실적인 지원단가를 설정하고, 외식비 물가를 고려하여 급식비 예산을 현실화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결식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사유로 인한 결식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제도개선	○ '26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급식비 예산 '25년 예산액 대비 51.7% 증액 완료 -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25년 예산액 1,590백만원 → '26년 2,412백만원 증액 반영 ○ '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설문에 식사관련 문항 반영 완료 * 2025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연구('25. 4.~'25.12.)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 현실화 필요	○ [지적사항]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은 평균 2,364천원으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4% 수준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25년 기준) : 2,822천원(생활지도사 10호봉 수준)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을 현실화할 것	제도개선	○ '26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단가를 전년 대비 3.5% 인상 - 향후 사회복지시설 수준의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27)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 현실화 필요	○ [지적사항]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은 평균 2,364천원으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4% 수준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25년 기준) : 2,822천원(생활지도사 10호봉 수준)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임금을 현실화할 것	제도개선	○ '26년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은 평균 2,541천원으로, 전년 대비 종사자 처우 개선율 약 8.7% 인상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임금을 현실화함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8)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필요	○ [지적사항] 스토킹·교제폭력 신고건수 및 검거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내역사업인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이나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의 집행은 부진하여 2024년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75%로 저조함 ○ [지적사항] 긴급주거지원(최대 30일)이나 임대주택 주거지원(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보다 장기적인 주거지원 사업인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사업(최대 6년)의 근거 규정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분석하고 각 시도별 시설 운영상태를 점검하는 등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보다 장기적인 주거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제도개선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설점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해 '26년부터 긴급주거지원 기관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맞춤형 통합 지원을 추진하고, 긴급주거지원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함 ○ 「기존주택등 매임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에 스토킹 피해자 규정 완료 ○ 조치완료일 : 2026년 1월 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9)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요 추계의 정밀화, 보조금 정산·반납 관리 강화,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사업은 2024년에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의 지원 요건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하면서 지원대상자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실집행률(88.7%)이 저조하였고, 6개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집행된 보조금 집행잔액을 2024년 내에 반납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잔액 반납 지연이 반복되고 있음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2024년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금액 73억 9,000만원 중 실제 환수액은 32억 3,000만원(환수율 43.7%)에 그침. 최근 5년간 인적 변동으로 인한 환수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별 환수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환수에 대한 의지 및 역량에 차이가 있어 보임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유형별 통계와 소득 등 제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정산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수급자에게 소득이나 인적사항 변동 신고의무의 고지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액 환수율 제고를 위해 관리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 '25년에 매월 12회에 걸쳐 보조금 미반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미납부액 반납계획 조사, 반납 예산 확보 촉구 등 정산 관리를 강화하였음 ○ 부정수급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소득·인적사항 변동시 신고의무' 및 '부정수급자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 - 또한, 부정수급액 환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징수 현황 및 계획을 총 3회(4, 8, 11월)에 걸쳐 조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1월 10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30)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적정예산 편성 및 홍보 강화 등 실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지적사항]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는 2024년 실집행률이 84.8%로 저조하고,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2023년 77.2%, 2022년 68.2%)한바, 실제 수요 대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임 -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경제활동 병행이 어려움에도 2025년 청소년한부모가 받는 총 지원금액(한부모가족 복지급여+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은 2024년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월 40만원으로 고정됨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연도별 감소추세 등을 반영하여 예산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수급절차 적극 홍보 및 청소년한부모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영아 지원금 등 지원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것	제도개선	○ 부 또는 모가 24세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수 감소 추세와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26년 예산을 감축하여 편성하였음 * 예산 : ('25년) 2,582백만원 → ('26년) 2,185백만원 -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포털1388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신청안내 웹포스터를 주기별로 게시하는 등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음 ○ 청소년한부모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반 한부모 가족보다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를 높게 책정하고,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음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 : (23년) 35만원 → (24년) 35만원(0-1세 40만원) → (25년~) 37만원(0-1세 40만원) ○ 조치완료일 : 2026년 5월 31일	조치완료
(31)청소년 한부모 특화성이 부족한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 타 사업으로 이관 필요	○ [지적사항]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사업(2024년 계획액 4억 5,100만원)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아닌 한부모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지원과 홍보 등을 위한 연구용역,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제작·자문회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맞추어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양성평등기금 2331-431) 사업으로 이관할 것	제도개선	○ 과목 구조개편을 통해 '27년 예산편성부터 '한부모가족 정책연구 및 홍보' 내역사업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세부사업 내로 이관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6년 5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32)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 방안 모색, 보조금 교부 및 정산관리 강화 필요	○[지적사항]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위하여 고용된 전담인력의 경우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수당의 경우에도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지급받고 있음. 고유업무 이외에도 소속 센터의 기본사업도 지원하는 등 업무 과중 대비 낮은 처우 문제가 제기됨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4차에 걸쳐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을 보면, 6개 지자체의 경우 불용액이 성평등가족부 4차 교부액보다 크게 발생하였고, 9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23년 보조금 집행잔액을 2024년까지 반납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특성화사업 전담인력의 업무 특성과 중요도, 근로 형태 및 숙련도 등을 반영하여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경력개발 프로그램 마련, 인력 충원 등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집행현황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기한 내 보조금의 정산보고와 집행잔액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 (처우개선)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인건비를 매년 증액* 하고 있으며, '25년부터 방문교육지도사 직무숙련급**을 지침에 명시하고 센터별로 상이한 명절수당*** 지급기준을 단일화 하였음 * 인건비 인상률: ('24) 3.9% → ('25) 4.0% → ('26) 5.1% ** 직무숙련급: 근무 3년 이상 월7만원, 5년 이상 월10만원, 7년 이상 월15만원 지급 *** 명절수당: 봉급액의 120% ○ (전문성 향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종사자 교육과정 개편** 추진 * 방문교육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지원사, 이중언어코치 ** 연차별 교육시간 현행화, 대면·원격교육 50%이상 진행 ○ (보조금 수납) 시·도별 미반납 보조금('22.~'23.) 반납 독려 및 수납 - 미수납액 총 3,954백만원 중 3,895백만원(98%) 수납 완료, 나머지 59백만원은 '26년 하반기 수납 예정 ○ (보조금 관리 강화) 예산 교부시 집행 가능성 등 고려, 시·도별 미수납액 반납 독려 및 정기적인 징수 현황 점검 등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33)사회복무요원 인력 적정 배정 노력 및 서비스 공백 방지 방안 검토 필요	○ [지적사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은 2024년 실집행률이 68.6%로 저조한바, 계획 대비 사회복무요원 배정시기 지연 및 미배치 인원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의 사회복무요원은 장애인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배치되고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지연과 미배치로 장애인 지원 공백 발생이 우려됨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시기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건비를 편성하고, 병무청과 협의 등을 통하여 인력 배정 관리를 강화할 것 - 장애인 입소자 지원업무는 필수성이 높으므로 배정지연 시 대체인력 투입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별 인력 배치율 모니터링 및 취약시설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집행률 저조 원인 분석 결과, 병역자원 감소 및 배정 지연·중도 공백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확인함 - 시·도별 사회복무요원 배정 추이, 실제 가동률 및 미배치 사례를 반영하여 '26년 예산 편성 완료(2025년12월18일) - 병무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배정 지연 및 중도 전역 발생 시 우선 배정 체계 강화하고, 장애인 입소자 지원업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배정 현황에 대한 정기적(분기별) 점검·관리 체계 구축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18일	조치완료
(34)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 확대 필요	○ [지적사항]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2022년, 전국 15~54세 기혼여성 대상)」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중 경력단절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64%로, 경력단절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경력단절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게 발생함.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전국 새일센터 159개소 중 80개소(50.3%)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데 그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의 전국적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전국 새일센터 대상 수요조사('25.10월)를 통해 경력단절예방사업 신규 수요를 확인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26년 경력단절예방 지원 사업 운영기관 확대 예산 확보 - '26년 신규 운영센터 11개소 선정 완료 ('25.12.23.) *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 현황 : (;25) 80개 → (;26) 91개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35)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안정적 재원필요	○ [지적사항]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중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가 공모 형태로 운영되고 2024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50% 감액(2023년 9억 4,700만원 → 2024년 4억 7,400만원)되어 시설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지정 또는 인증 제도로 변경하는 등 안정적인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비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2024년부터 삭감된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법무부 및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제도개선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내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수행시설 선정 시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필수선정시설로 명문화하여 안정적으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26.1.~) - 2026년 치료회복프로그램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예산 증액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됨, 추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법무부 및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36)기금 운용 안정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복권기금 전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기금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수입 구조의 다변화 및 기금 존치 여부 재검토 등 기금운용 안정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25년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조건부 존치' 평가('25년 3월)를 받았으며, 기금 재원 다양화 및 중장기 개선방안 등 다각적인 안을 강구하겠음.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37)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등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며,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 등 관련절차 소요기간으로 2024년 예산현액 37억 7,8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완공이 당초 계획(2023년)보다 5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무리하게 총사업비 변경을 시도하여 불필요한 재정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 관련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25.12.4)했음 - 다만 건립 추진중인 박물관 예정부지에 공공주택 건립사업 시행 결정('26.1월)으로 대체부지 마련 등 검토 중임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조치중
(38)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필요	○ [지적사항] 디지털 성범죄 피해 양상이 변화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4.9.)으로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게 되는 등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등을 위한 인력 충원은 지체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규직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센터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5년 수시증원 및 '26년 정기증원을 통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정규인력을 확충하였으며, '26년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음 - 아울러, 정규인력 외 '26년 중앙 디성센터 추가 인건비(5명) 예산을 확보하였음 ※ 정규인력: ('24) 31명 → ('25) 37명 → ('26) 38명 ※ 중앙 디성센터 예산: ('24) 3,475백 → ('25) 4,359백 → ('26) 5,925백 ○ '26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사자 공동연수, 피해 지원 전문 교육 운영 등 예산을 확대하였음 ※ 전문성 강화 예산: ('24) 185백 → ('25) 185백 → ('26) 485백 (+300백)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39)보조금 등 횡령 관계자 국고보조사업 배제 필요	○ [지적사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이라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2024.7.~2029.7.)간 보조사업 수행 배제 처분을 받았으나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이 통합하여 설립된 정의기억연대는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보조금이나 후원금 횡령 등과 관련된 자가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 이후 별도 법인 설치 등의 방법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은 보조금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법과 지침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0월 29일 (성평등가족위 위원실 보고)	조치완료
(40)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실집행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연례적으로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고(2024년 실집행률 78.3%), 2024년 바우처 신청률은 87.4%이며 이 중 바우처 이용률은 83.7%로 전년(85.4%)대비 이용률이 감소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생리용품 바우처 이용률이 낮아진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이 편리하게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용 절차 개선, 구매처 다양화,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지원대상자의 바우처 조기 신청을 위한 홍보 등 조치를 강화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신청률 제고를 위한 안내·홍보 강화 및 수요자 접근성 제고 등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실태 조사 등 바우처 이용률이 낮은 이유 분석 (20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협조) ○ 실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및 시행('26.1월~) -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및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 지원 ○ 구매처 확대: ('24) 48개 → ('25) 54개(+6개) ○ 바우처 신청률 제고를 위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 및 편의점 TV, 대학생활안내 앱(에브리타임), 유튜브, SNS 등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매체 활용 홍보 실시('25년) ○ 조치완료일 : 2026년 1월 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41)국립청소년 치료재활 센터 건립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 [지적사항]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사업(호남권·광주·경남권)은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45.1%로 저조하고, 특히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예산의 이월·전용·불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2023년에 2023 세계잼버리 지원을 위해 7억원이 전용(감)되었고, 2024년의 경우 예산현액 23억 8,200만원 중 18억 6,900만원이 이월되고 4,300만원이 불용되었음(집행률 19.7%)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광주) 건립 사업에 있어 예산 편성·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률 목표 설정 및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 진척도 및 집행률을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관리 책임을 강화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광주) 건립 사업의 실시설계·총사업비 협의 등 절차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별 관리체계 강화 및 현실적 집행계획 수립으로 이월을 최소화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정서·행동 문제 치유를 위해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제도개선	○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광주시 추진) 등 용지매입을 위한 사전절차이행 등으로 이월된 건설보상비는 ’25.5월 전액집행완료 하였음 ○ 향후 건립 사업 추진 시 설계, 공사 등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현재 집행률을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관리중이며 공사가 ’26년 상반기 추진 예정임을 감안하여 ’26년도 예산을 편성함. ○ 조치예정일 : 2028년 12월 31일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42)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 급 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등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금전 형태인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근거와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 참고로「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 지원은 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금전 지원 및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법령과 부합하는 물품서비스 방식으로 지원형태를 전환하거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한「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추진 * (법개정 상황) 본회의 심의('25.12.2.), 정부 이송('25.12.19.) * (주요개정사항) 청소년부모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 지원항목 추가 및 금전적 지원 방식 추가, 신청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43)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지적사항] - 아이돌보미 부족으로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은 84.7% 수준이며 대기가구는 9,519가구이고, 평균 대기일수가 32.8일에 달함 · 긴급돌봄 및 단기간돌봄의 연계율이 낮고 심야·긴급 상황에서의 돌봄체계가 부재하여 아이의 화재·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시간당 돌봄수당은 최저임금의 100.1%~105.6% 수준이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인원 대비 실제 증원 비율이 21.7%에 그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민간서비스 기관과 연계 등 지원 서비스 연계율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야간·주말 등 틈새 돌봄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수당 현실화 등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 아이돌보미 공급확대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관련 '26년 예산 반영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인상('25년 10,590원 → '26년 11,120원), 영아돌봄수당 인상('25 1,500원/시간 → '26년 2,000원/시간), 유아돌봄수당 신설(1,000원/시간) ○ 심야·긴급 돌봄 확대를 위한 야간특화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25년 9월~) 및 '26년 예산반영 - 돌보미 대상 야간긴급돌봄 수당(5,000원/일) 지원 및 '가'형 가구 대상 야간 특화 긴급돌봄서비스 할증요금 지원 신설 ㅇ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44)수요 감소 원인 분석 및 현실적 수 요 에 기 반 한 예산편성 필요	○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돌봄수당'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3,841억 1,700만원 중 2,752억 1,2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71.6%)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함 -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중 영아종일제 이용 가구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지원대상 가구를 과다 추계하여 2024년 예산액 279억 2,900만원 중 129억 8,2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46.5%)되었음 · 2023년 및 2024년 이용가구 수가 급격히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2023년 신설된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사업과 영아종일제 간의 중복수급이 불가한 점이 영아종일제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돌봄수당 사업 전반의 재점검을 하고, 향후 예산 증액 시 지원도 함께 확대하는 등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주의) - 성평등가족부는 '영아종일제' 수요 감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 부처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의 중복·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주의) -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정책의 영향 등 '영아종일제'수요가 감소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지원대상 가구 수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	주의, 제도개선	○ 영아종일제 감소추세 등 고려하여 '26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아종일제 계획가구 일부(500가구)를 시간제로 감조정하여 편성('24년 3.9천가구 → '25년 2,5천가구 → '26년 2천가구) * 전체지원가구는 증가('24년 11만가구→ '25년 12만가구 → '26년 12.6만가구)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적 추이 등 고려하여 계획가구를 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45)상이한 사업의 내역사업 분리 및 자의적 예산 조정 집행 금지 필요	○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돌봄수당'은 실집행 실적이 저조(실집행률 71.6%)하며, 미집행분을 별도의 내내역사업인 '아이돌보미 관리'(64억 4,799만원 증), '서비스제공기관 운영'(51억 5,900만원 증)과 별도의 내역사업인 '광역지원센터 운영'(1억 500만원 증) 사업으로 조정하여 집행하였음 - 과거 국회 심사 시 돌봄수당 집행실적 저조와 관련한 문제 및 상이한 내용의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유사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음 ※ (참고) 2023회계연도 결산 동 사업 시정요구 사항 (34)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주의) (35)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예산의 연례적 초과집행 개선 및 보조금 내역사업별 관리 강화 필요(시정) (36) 사업성과 측정시 주요지표로 대기가구수 및 대기일수 감축을 포함하는 등 성과관리 강화 필요(주의) (37)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법률 개정 노력, 사업관리 강화 및 집행실적 제고 필요(시정)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상이한 내용의 사업을 각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 수요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관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의 2026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이전에 보고할 것	시정	○ 국회와 '26년 예산안 협의과정을 통해 '26년부터 서비스지원을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각 내역사업으로 분리 편성하고, 지자체에 '26.1월부터 각 내역사업별 분리 교부 사항 기 안내(확정 내시 통보시, '25.12.10.) - 향후 분기별 집행현황 조사를 통해 내역 간 조정 필요 시 지자체 사전 승인요청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집행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 적정 예산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당국 등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10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46)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등	○ [지적사항] - 2024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은 15억 4,600만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실적은 4억 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누적 채권 회수율도 18.48%에 그치고 있음 · 2025년 7월부터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이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므로 구상권 청구 및 환수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종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소속으로, 2024년의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335-351)' 예산을 통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2024.9.27.)에 따라 2025 회계연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2335-352)' 사업으로 이관됨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징수 인력은 3인(2025년 7월 말)에 불과하여, 인력 증원이 되지 않을 경우 징수 인력 1인당 담당하여야 할 징수 대상 건수(2026년 양육비 선지급 대상 가구 추정치 기준으로 1인당 약 3,100건)가 과다할 것으로 예상됨	제도개선	○ 양육비 선지급제 징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26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징수 인력 8명을 증원함 * '25년 3명 → '26년 11명, '선지급징수부' 운영('26.2월) ○ 채무자 재산조회, 예금압류를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금융결제원-신한은행 등 20개 은행과 업무협약 체결('25.11.19.) * 주요내용: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 ○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압류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고도화('25.12.) - 회수 대상자로의 전환, 통지, 관리 등 기능 개발 및 회수 대상자의 예금 잔액 조회를 위해 금융결제원 시스템 연계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 [시정요구사항] - 성평등가족부는 유사한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의 예를 고려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징수업무 담당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할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지원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채권관리 전담부서 설치,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47)새일여성인턴의 고용유지율 등 사업 성과 제고 필요	○ [지적사항] 내내역사업인 '새일여성인턴'의 인턴 종료 후 취업률이 90% 중반에 이르고 있으나 6개월간 고용유지 비율은 70%대이고, 12개월간 고용유지 비율은 50% 중반으로 고용유지 성과가 저조한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새일여성인턴의 낮은 고용유지율과 경력 단절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유지장려금 제도를 개선하며, 중장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고용유지율 등 사업 성과를 제고할 것	제도개선	○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자의 장기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장려금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로 장기고용 유지율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1인당 지원금 ('24) 380만원 → ('25) 460만원 ** 6개월 고용유지율('25.10. 기준) : ('23) 75.6% → ('24) 78.0% 12개월 고용유지율('25.8. 기준): ('23) 57.7% → ('24) 63.6% (참고) '24년 고용부 직접일자리사업 평균 6개월 고용유지율 47.9%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48)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의 성과 관리 필요	○ [지적사항] 새일센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개정으로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사업 참여와 취업 성과가 저조한 상황임 - 2024년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참여자 현황은 40대(39.7%), 50대 이상(30.8%), 30대(17.9%), 30세 미만(11.6%) 순임 - 2024년 직업교육훈련에 따른 취업인원의 연령별 현황은 40대(40.4%), 50대 이상(30.8%), 30대(17.5%), 30세 미만(11.3%) 순임 ○ 새일센터 교육훈련 과정 중 전문기술과정의 2023년 취업률은 72.1%이나 이 중 전문기술과정과 연계된 유관 분야 취업률은 47.7%에 불과하여 교육과정과 취업 간 연계성이 미흡한 상황임 ○ 새일센터의 성과평가는 장기 고용 유지율, 창업 생존률 등이 아닌 단순 취 창업 건수 등 단기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평가에 한계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있어 연령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전문기술과정의 유관 취업률을 제고하며, 성과지표를 보완하는 등 사업 성과를 관리할 것	제도개선	○ 청년 여성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AI등 신기술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지속 확대 추진 - '26년 고부가가치 훈련 과정 103개 선정 완료('25.12.17.) * 고부가가치 훈련 수: ('24) 79개 → ('25) 93개 → ('26) 103개 ○ 직업훈련 과정의 커리큘럼 강화 및 훈련 후 맞춤형 일자리 연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전문기술 과정 유관취업률은 개선되고 있으며, 훈련 취지에 맞는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을 고려한 구인·구직 수요가 면밀하게 반영될 수 있는 지역 핵심산업 훈련 신규 도입('26~) * 전문기술 과정 유관취업률 : ('23) 47.7% → ('24) 50.9%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49)폭력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의 비목 일원화 및 예산 조정 필요	○ [지적사항]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320-01)과 민간위탁 사업비(320-02)로 이원화 되어있으나, 비목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적음 ○ [지적사항] 민간보조사업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형사 절차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여 무료로 진행하고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5%로 제한하고 있어,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저조한 편임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연도별 실집행률은 2022년 77.3%, 2023년 54.3%, 2024년 91.1%로 나타남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사업 집행체계(비목)를 일원화할 것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이원화된 비목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일원화할 것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비를 축소하고 집행실적이 우수한 타 기관의 사업비를 확대하는 등 예산을 재조정할 것	제도개선	○ ’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기재부와 협의하여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목 일원화(민간경상보조) 추진 (정부안 심의(1차) 반영 완료) ○ ’26년 사업 추진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비는 축소하고, 타 기관 사업비는 확대할 예정 ○ 조치완료일 : 2026년 6월 24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50)사업별 성과지표의 개발 필요	○ [지적사항]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따라'1프로그램 1성과지표'체계로 변경되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상 일부 사업에 대한 별도 성과지표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	제도개선	○ 자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음 ※ 재난안전사업평가 등에서 자체 성과지표(성범죄자 정보제공 효과성,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젠더감수성 및 심리 종합변화율)를 설정,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51)정책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별 관리 개선 필요	○ [지적사항]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상 연구과제별 세부 단가가 아닌 평균 연구비를 기재하고 있어 연구비 적정성 검토에 한계가 있음 - 2024년 집행내역: 1억 2,400만원 = 2,060만원×6건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별 집행액을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정책연구별 집행액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52)유엔여성기금 기여금의 적정규모 조정 필요	○ [지적사항] 2024년 유엔여성기금 기여금은 57억 3,900만원으로 세계 7위 수준이며, 이는 1인당 GDP (IMF 2024년 기준 29위)와 비교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1인당 GDP를 고려하여 기여금을 조정할 것 ○ [지적사항]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서울)의 운영	시정	○ 기여금 조정(유엔여성기구 기여금) - 2026년 확정예산은 4,745백만원으로, 전년 5,977백만원 대비 20%(1232백만원) 감액됨 ○ 유엔여성기금 기여금은 국제분담금으로서 특수성에 따라 재정평가 등의 제외대상이고 - 유엔여성기구 평가는 기여금 공여국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평가기구(MOPAN)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음 - 센터에서 성과지표*를 설정·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작성되지 않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운영상황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성과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026년 4월 30일	
(53)양성평등위원회 명단 공개 필요	○ [지적사항] 양성평등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양성평등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공무원(15명) 및 민간위원(10명)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민간위원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할 것	시정	○ 보도자료 배포('26.4.20)를 통해 양성평등위원회 신규 민간위원(제6기) 전체 명단을 공개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6년 4월 20일	조치완료
(5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리·감독 필요	○ [지적사항]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사업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 집합교육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자료 제작 과정에서 특정 성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특정 성에 대한 차별적 교육자료가 제작되지 않도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제도개선	○ 특정 성에 대한 차별적 교육자료가 제작되지 않도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정례회의를 통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1월 27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55)사업의 성과 평가 체계 개선 필요	○ [지적사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문항이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내역사업인 '생활안정금 지원'에 있어 사업 대상자 8인 중 3인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성과지표로 반영되지 않아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만족도 조사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성과로 반영할 것	시정	○ '25년 정책만족도 설문조사시 응답자의 만족도 및 의견을 상세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문항을 보완 및 개선하여 실시하였음 ○ 사례관리 자료와 방문 관찰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현재 상황과 이후 지원에 대한 수요와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15일	조치완료
(56)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개선 필요	○ [지적사항]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시 인터넷 창이 강제종료 되고, 범죄자 이름 클릭 시 정보화면이 표시되지 않으며 지도별 현황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방식을 개선하고 성범죄자 조회 결과가 표시되도록 하며, 지도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것	시정	○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서 성범죄자를 조회할 때 팝업창이 뜨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음 - 일부 PC에서 팝업창이 작업표시줄에 뜨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실시하고, 개선된 패치 버전 배포('25.9.3) ○ 국민들이 '성범죄자 알림e'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음 - 제도 내용을 FAQ로 재구성하여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25.12.8)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8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57)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의 전국 확대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은 고립·은둔 청소년의 조기 발굴·맞춤형 서비스 및 자립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 1개 시·도(경남) 및 11개의 시·군·구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제도개선	○ 2026년도에 2개 시도 확대함. 향후에도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조치완료
(58)성매매 피해자 등의 취업 및 진학 실적 추적관리 필요	○ [지적사항] 사업의 성과지표 중 '성매매 피해자 취업 및 진학 실적'은 지원사업 참여자의 성매매 피해자 중 취업 및 진학한 인원 수를 기준으로 측정되어 장기적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 및 자발적 성매매자의 취업 및 진학 실적을 1년 이상의 추적 자료로 관리할 것	제도개선	○ 성매매피해자등의 취업 및 진학 실적에 대한 1년 이상의 추적자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후관리 인력, 관련 제도운영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조치중
(59)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사업장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실행할 유인이 부족하여 제도 실효성이 낮으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사후 점검 및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성평등가족부는 장기간 고용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표 미달 사업장에 대해 고용개선 의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후 점검, 맞춤형 컨설팅, 성과 기반의	주의	○ 여성고용기준 미이행 사업장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여 기업 스스로 인사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여성고용기준 미달 원인 진단 및 사업장 내 남녀간 차별적 요소 등을 진단·분석하고 개선방안 수립 지원 * 컨설팅 지원: ('24) 95개사 → ('25) 119개사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인센티브 제공 등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지원·관리 체계를 강구할 것		- CEO 대상 특별교육 및 워라밸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사례는 벤치마킹 설명회 및 교육자료를 통해 전파 - 개선 우수기업 대상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1, 장관표창6) 실시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참고자료 **감사 처분 요구 종료와 기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처분요구 종류

구분 및 대상	기 준
변상명령	성립요건 ① 회계관계직원 등이 ② 고의 또는 중과실로 ③의무를 위반하여 ④ 국가·단체에 손해를 끼쳤고 ⑤ 행위·결과간 인과관계 성립 ⑥ 책임조각 사유가 없어야 함 → 이 경우 손해액을 변상하도록 결정
징계·문책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공무원) 또는 문책(공공기관 임직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감봉, 견책)
시정	-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에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나 위법행위자 제재 등을 요구 - 요건 ① 법률상, 사실상 시정 가능 ② 시정조치 권한 보유 ③ 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④ 시정목적이 공익에 위반하여서는 안됨
주의	- 위법·부당행위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은 경우 기관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 - 관련자는 소명을 들어 책임이 있는 사람만 기재
개선	-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개선을 요구 - 조치할 사항에 개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어려우면 권고나 통보)
권고	-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 개선대안에 다툼이 있는 경우 권고 불가 - 통보보다는 조치할 사항이 더 구체적
통보	- 비위사실 또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통보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별 누적 미수납액(2024년까지 발생한 집행잔액) 현황(2026년 7월말 기준)

□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26년 7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미수납액	미수납 사업	미수납액	미수납 사업
계	2,699		368	
서울	358	아이돌봄지원 3억 58백만원	-	
광주	22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3백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19백만원	0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0백만원
세종	0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0백만원	-	
경기	33	아이돌봄지원 19백만원 청소년활동지원 13백만원	-	
충북	0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0백만원	-	
충남	6	아이돌봄지원 1백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5백만원	331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3억 31백만원
전북	2	가족역량강화지원 2백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0백만원 청소년활동지원 0백만원	-	
전남	916	가족역량강화지원 4백만원 아이돌봄지원 8억 77백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및피해예방 29백만원 청소년활동지원 5백만원	37	가족센터건립 37백만원
경북	183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67백만원 아이돌봄지원 1억 16백만원	-	
경남	1,181	아이돌봄지원 11억 66백만원 청소년활동지원 15백만원	-	

주) 미수납액이 0인 경우는 0.5백만원 미만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2026년 7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미수납액	미수납 사업	미수납액	미수납 사업
계	1,721		3,287	
서울	194	가정폭력스토킹방지및피해자지원 1억 6백만원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18백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70백만원	265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15백만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2억 24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26백만원
인천	41	가정폭력스토킹방지및피해자지원 41백만원	-	
광주	74	가정폭력스토킹방지및피해자지원 74백만원	223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 0백만원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11백만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69백만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1억 31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11백만원
울산	-		70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70백만원
세종	-		15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12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2백만원
경기	27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27백만원	1,056	아동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 4백만원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5억 37백만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2백만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6억 76백만원
강원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1백만원	-	
충북	-		1	청소년참여지원 1백만원
충남	396	가정폭력스토킹방지및피해자지원 3억 95백만원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1백만원	694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2억 19백만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2억 77백만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1억 97백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백만원
전북	121	가정폭력스토킹방지및피해자지원 8백만원	102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43백만원

구 분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미수납액	미수납 사업	미수납액	미수납 사업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89백만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3백만원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4백만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7백만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56백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8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5백만원		
전남	547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사업 12백만원	720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1억 41백만원
		가정폭력스토킹방지및피해자지원 8백만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10백만원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3억 54백만원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5억 34백만원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1억 35백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 28백만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및자립지원 13백만원		청소년참여지원 7백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25백만원		
경북	102	성매매방지및피해자지원 1억 2백만원	11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11백만원
경남	217	가정폭력스토킹방지및피해자지원 2억 4백만원	131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1억 30백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13백만원		청소년참여지원 1백만원

주) 미수납액이 0인 경우는 0.5백만원 미만임

자료: 성평등가족부

[참고자료] 2. 2024 ~ 2025회계연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대상 결산 현황

(단위: 개, 억원, %)

부처	2024년				2025년			
	대 상 사업 수	예산현액 (C)	지출액 (D)	집행률 (D/C)	대 상 사업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전체	283	242,509	237,453	97.9	266	268,720	266,074	99.0
고용노동부	35	63,286	60,587	95.7	33	84,696	82,999	98.0
성평등가족부	30	14,266	14,158	99.2	33	15,113	15,051	99.6
보건복지부	25	46,392	46,332	99.9	25	53,189	53,138	99.9
중소벤처기업부	23	91,093	89,492	98.2	23	95,278	94,916	9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3,909	3,909	100	18	3,031	3,031	100.0
농림축산식품부	14	6,161	5,951	96.6	11	3,138	3,075	98.0
해양수산부	10	193	181	93.8	11	240	229	95.4
교육부	11	3,602	3,427	95.1	10	2,597	2,514	96.8
법무부	9	1,331	1,309	98.3	9	1,406	1,383	98.3
외교부	9	1,130	1,090	96.5	6	1,258	1,230	97.8
국방부	7	911	883	96.9	6	870	822	94.4
통일부	5	482	472	98	6	468	452	96.5
경찰청	7	425	416	98	6	406	397	97.7
산업통상부	5	101	101	100	6	96	96	100.0
지식재산처	5	202	202	100	5	196	196	100.0
농촌진흥청	4	113	112	99.6	4	116	115	99.2
행정안전부	4	35	34	98.8	4	33	33	98.1
국토교통부	7	4,424	4,408	99.6	3	2,253	2,124	94.3
기후에너지환경부	1	19	15	80.4	3	147	140	95.4
산림청	2	75	72	97.2	2	74	71	95.7
인사혁신처	2	43	42	97	2	42	41	98.3
소방청	2	12	11	97.4	2	11	11	96.4
국가인권위원회	2	1.9	1.8	92.1	2	2	2	92.5

부처	2024년				2025년			
	대 상 사업 수	예산현액 (C)	지출액 (D)	집행률 (D/C)	대 상 사업수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대법원	1	76	76	100	1	75	75	100.0
새만금개발청	1	46	46	100	1	32	32	100.0
해양경찰청	2	32	31	97	1	29	28	98.8
질병관리청	1	22	21	98.4	1	20	20	99.6
국가유산청	2	204	204	99.9	1	15	15	100.0
법제처	1	13	13	96.9	1	14	13	97.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46	43	93.2	1	13	13	95.2
기획재정부	3	118	110	93.2	1	6	6	97.5
국세청	1	4	4	100	1	4	4	100.0
국회	1	1.2	1.1	92.2	1	2	2	86.7
국민권익위원회	2	0.3	0.1	46.7	1	0	0	100.0
방위사업청	2	439	435	99.2	-	-	-	-
조달청	2	117	89	76.4	-	-	-	-
국가보훈부	1	32	32	100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1	24	24	99.8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7	0.9	54.8	-	-	-	-

[참고자료] 3. 2025년도 부처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2025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지표수	성과 지표달성수 (달성률)
고용노동부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남녀고용평등환경개선)	예산	762	745	97.8%	2	2(100%)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일반)	예산	596,161	593,833	99.6%	2	2(100%)
고용노동부	중장년층취업지원 (중장년내일센터)	예산	18,343	18,343	100.0%	1	1(100%)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양성)	예산	23,207	23,207	100.0%	2	2(100%)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취업촉진	예산	11,223	11,119	99.1%	1	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34,561	33,440	96.8%	1	1(100%)
고용노동부	상생협력 확산지원 (상생임금확산지원)	예산	5,918	5,918	100.0%	1	1(100%)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예산	716	716	100.0%	1	0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	791,426	718,819	90.8%	1	0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	36,464	36,046	98.9%	2	2(100%)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	예산	47,116	47,109	100.0%	1	0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과정평가형자격제도운영)	예산	6,471	6,471	100.0%	1	0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예산	137,864	136,394	98.9%	1	1(100%)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다기능기술자)	예산	17,749	17,749	100.0%	1	1(10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기금	377,377	377,377	100.0%	1	1(100%)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기금	52,856	52,856	100.0%	1	1(100%)
고용노동부	장애인취업지원	기금	33,411	33,411	100.0%	1	0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2025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지표수	성과 지표달성수 (달성률)
고용노동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장애인훈련기관지원)	기금	5,918	5,918	100.0%	1	1(100%)
고용노동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기금	26,452	26,452	100.0%	1	0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기금	22,997	18,353	79.8%	1	1(100%)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지원 (하이테크형(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기금	18,000	18,000	100.0%	1	1(100%)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 (소규모사업장훈련)	기금	1,270	1,270	100.0%	1	0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기금	9,189	9,189	100.0%	1	0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 (여성재취업훈련)	기금	4,756	4,756	100.0%	1	1(100%)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 (전문기술과정)	기금	7,287	7,287	100.0%	1	0
고용노동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 (하이테크과정)	기금	12,150	12,150	100.0%	1	0
고용노동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기금	300,670	291,798	97.0%	1	1(100%)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고보)	기금	603,198	543,471	90.1%	2	0
고용노동부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기금	276,632	275,522	99.6%	1	1(100%)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기금	4,319,511	4,309,155	99.8%	2	2(10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취업장려금)	예산	2,967	1,582	53.3%	1	0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복지일자리)	예산	4,755	4,685	98.5%	1	1(100%)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2025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지표수	성과 지표달성수 (달성률)
산림청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자원조사단))	예산	2,630	2,381	90.5%	1	0
농촌진흥청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농업인대학운영)	예산	1,378	1,378	100.0%	1	1(100%)
농촌진흥청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현장실습교육))	예산	1,980	1,980	100.0%	1	1(100%)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교육	예산	3,257	3,178	97.6%	1	1(100%)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보조)	예산	1,940	1,940	100.0%	1	1(100%)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예산	858	858	100.0%	1	1(100%)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예산	1,050	1,050	100.0%	1	1(100%)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생물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예산	2,868	2,402	83.7%	1	1(100%)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	1,500	1,474	98.3%	1	0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예산	413	404	97.8%	1	1(100%)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육성 (인재양성(게임인재원운영))	예산	5,204	5,204	100.0%	2	2(1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예산	1,200	1,200	100.0%	1	1(10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기금	11,414	11,414	100.0%	1	1(100%)
문화체육관광부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체육인재 양성)	기금	906	906	100.0%	2	2(100%)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력 육성 (문화예술기관 연수 단원 지원)	기금	9,212	9,200	99.9%	1	1(100%)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2025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지표수	성과 지표달성수 (달성률)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	예산	719,545	719,545	100.0%	1	0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	234,510	234,510	100.0%	1	1(100%)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예산	20,352	20,352	100.0%	1	1(100%)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예산	1,887	1,887	100.0%	1	1(100%)
성평등 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예산	11,481	11,233	97.8%	1	1(100%)
성평등 가족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예산	1,002	934	93.2%	1	1(100%)
성평등 가족부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예산	2,070	2,029	98.0%	1	1(100%)
성평등 가족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예산	87,713	87,439	99.7%	2	2(100%)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예산	28,561	28,474	99.7%	1	1(100%)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예산	11,090	11,010	99.3%	1	1(100%)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농촌교육훈련)	예산	24,303	24,303	100.0%	1	1(100%)
농림축산 식품부	밭작물산업육성	예산	11,472	11,472	100.0%	1	1(100%)
농림축산 식품부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귀농귀촌 교육)	예산	6,082	6,082	100.0%	1	1(100%)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예산	1,555	1,555	100.0%	1	1(100%)
산업통상부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 생태계조성촉진사업 (바이오인력양성)	예산	2,524	2,524	100.0%	1	1(100%)
산업통상부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 마련 (섬유패션기술력향상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	예산	677	677	100.0%	1	1(100%)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2025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지표수	성과 지표달성수 (달성률)
산업통상부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R&D)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R&D))	예산	1,400	1,400	100.0%	1	1(100%)
산업통상부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 촉진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예산	918	918	100.0%	1	0
산업통상부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예산	2,414	2,414	100.0%	1	1(100%)
국토교통부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 (공간정보융복합핵심 인재양성)	예산	220	220	100.0%	1	0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지원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지원)	기금	1,286	1,243	96.7%	1	1(100%)
해양수산부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예산	5,250	5,250	100.0%	1	1(100%)
해양수산부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국적부원 양성 프로젝트)	예산	305	305	100.0%	1	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	예산	180	180	100.0%	1	1(100%)
해양수산부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예산	360	360	100.0%	1	1(100%)
해양수산부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	예산	1,452	1,452	100.0%	1	1(10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예산	2,020	1,996	98.8%	1	1(100%)
해양수산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단체역량강화, 여성어업인 포럼)	예산	110	110	100.0%	1	1(100%)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2025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성과 지표수	성과 지표달성수 (달성률)
해양수산부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	예산	343	343	100.0%	1	0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예산	2,163	2,163	100.0%	1	0
중소벤처 기업부	산학협력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예산	27,675	27,663	100.0%	1	1(100%)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예산	12,462	12,462	100.0%	1	0
중소벤처 기업부	여성기업육성	예산	10,485	10,485	100.0%	1	1(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차세대보안리더양성(BoB))	기금	4,800	4,800	100.0%	1	1(1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학디지털교육역량강화 (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	기금	2,451	2,451	100.0%	1	1(100%)

[참고자료] 4. 2025회계연도 부처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부 처	성과지표 수(A)	성과지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 (B/A)
합 계	339	274	65	80.8
성평등가족부	46	41	5	89.1
고용노동부	45	31	14	68.9
문화체육관광부	31	25	6	80.6
보건복지부	30	21	9	70.0
중소벤처기업부	28	23	5	8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20	1	95.2
해양수산부	13	9	4	69.2
경찰청	13	12	1	92.3
법무부	12	12	0	100.0
교육부	11	8	3	72.7
국방부	11	7	4	63.6
농림축산식품부	11	10	1	90.9
기후에너지환경부	10	9	1	90.0
산업통상부	7	6	1	85.7
외교부	6	4	2	66.7
통일부	6	4	2	66.7
지식재산처	6	6	0	100.0
농촌진흥청	5	5	0	100.0
행정안전부	4	3	1	75.0
국토교통부	3	2	1	66.7
인사혁신처	2	2	0	100.0
국가인권위원회	2	2	0	100.0
소방청	2	2	0	100.0
산림청	2	1	1	50.0
질병관리청	2	2	0	100.0
국회	1	1	0	100.0
대법원	1	1	0	100.0
기획재정부	1	0	1	0.0
법제처	1	1	0	100.0
국민권익위원회	1	1	0	100.0
국세청	1	1	0	100.0
국가유산청	1	1	0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0	1	0.0
새만금개발청	1	1	0	100.0
해양경찰청	1	1	0	100.0

[참고자료] 5. 2025년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지표 10개 이상 부처의 달성률

(단위: 개, %)

연번	부처	사업 수	성인지 성과지표 달성			달성률
			예산	기금	계	
1	법무부	9	7/7	5/5	12/12	100.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5/6	15/15	20/21	95.2
3	경찰청	6	12/13	-	12/13	92.3
4	농림축산식품부	11	10/11	-	10/11	90.9
5	기후에너지환경부	3	9/10	-	9/10	90.0
6	성평등가족부	33	28/32	13/14	41/46	89.1
7	중소벤처기업부	23	16/18	7/10	23/28	82.1
8	문화체육관광부	25	13/15	12/16	25/31	80.6
9	교육부	10	7/10	1/1	8/11	72.7
10	보건복지부	25	14/22	7/8	21/30	70.0
11	해양수산부	11	9/13	-	9/13	69.2
12	고용노동부	33	14/19	17/26	31/45	68.9
13	국방부	6	7/11	-	7/11	63.6

[참고자료] 6. 2025년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성과평가 결과

번호	'매우 우수' 사업			'미흡' 사업*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정보화)	클라우드개발자기술교육	교육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R&D)		교육부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	
3	성평등가족부	성인지정책분석평가 운영		교육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4	성평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외교부	공공외교기반확대	공공외교기반확대
5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 대응	법무부	교정교화	
6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		국방부	기본피복	여군 피복비 지원
7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
8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육성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9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0				보건복지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11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운영
1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13				경찰청	경무인사지원	성평등위원회 운영
14				새만금개발청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참고자료] 7.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부 성인지 분석 대상사업 결산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대상 (수혜)	성과지표 (달성여부)	비고*
예산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내역사업)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275	247	247 (100.0)	100.0 (100.0)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체감도(점)(미달성)	
	(내역사업) 성평등 공공외교 활성화(APEC)	575	613	606 (98.9)	50.2 (70.0)	APEC 여성경제회의 참가자 수(명)(달성)	
예산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9,345	9,345	9,345 (100.0)	- (-)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집행률(%)(달성)	
예산	국제개발협력(ODA)	668	668	630 (94.3)	50.9 (90.0)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수혜자 수(명)(미달성)	
예산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1,833	1,833	1,717 (93.7)	49.8 (49.8)	여성가족정책 온라인 확산(건) (달성)	
예산	여성정책전략 기반구축	318	318	286 (89.9)	50.2 (50.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과목표 달성률(%)(달성)	
예산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3,940	3,940	3,839 (97.3)	49.9 (72.3)	성별영향평가정책 개선 반영률(%)(달성)	
예산	양성평등문화확산						
	(내역사업) 양성평등주간	93	93	91 (97.8)	50.2 (-)	양성평등주간 행사 참여자 수(명) (달성)	
	(내역사업)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578	578	514 (89.0)	32.4 (32.4)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참여기관 수(개)(달성)	
예산	여성사전시관	2,411	2,411	679 (28.2)	50.2 (50.2)	여성사전시관 관람객 수(명) (달성)	
예산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지원	11,796	11,796	11,693 (99.1)	(성인지정책과정) 49.5 (65.7)	교육실적(명) (달성)	
					(성별영향평가과정) 49.5 (65.7)		
					(전문역량과정) 49.5 (64.0)	교육 효과성 지수(점) (달성)	
					(사이버교육) 49.5 (57.6)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대상 (수혜)	성과지표 (달성여부)	비고*
예산	여성인재 양성 및 사회 참여 확대	606	606	550 (90.8)	100.0 (100.0)	여성인재 DB 활용도(%) (달성)	
예산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4,054	4,054	3,865 (95.3)	- (-)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과제 이행률(%)(달성)	
예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내역사업)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841	1,931	1,763 (91.3)	58.5 (75.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건)(달성)	
	(내역사업)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재발방지	140	140	140 (100.0)	42.3 (41.3)	성희롱방지 조직문화 진단사업 참여기관수(개)(달성)	
	(내역사업)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및 정책확산	110	110	110 (100.0)	50.2 (50.2)	여성폭력방지 정책 국민 체감도(점)(달성)	
	(내역사업)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707	707	707 (100.0)	98.3 (98.6)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수료자 수(명)(달성)	
예산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5,518	5,518	4,634 (84.0)	- (-)	성범죄자 정보제공 효과성(점) (달성)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만족도(점) (달성)	
예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6,425	16,425	16,425 (100.0)	100.0 (100.0)	생리용품 지원 신청률(%) (달성)	
예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내역사업) 청소년지도사 양성	312	312	312 (100.0)	73.4 (48.3)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이수자 수(명)(달성)	
예산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내역사업)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2,070	2,070	2,029 (98.0)	- (-)	가족친화인증 기업, 기관 수(개) (달성)	
예산	가족역량강화 지원						
	(내역사업)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590	1,590	1,291 (81.2)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만족도(점)(달성)	
예산	아이돌봄지원	475,028	475,028	474,975 (100.0)	48.8 (48.6)	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가구) (달성)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대상 (수혜)	성과지표 (달성여부)	비고*
예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내역사업) 가족친화지원사업	830	830	830 (100.0)	- (-)	가족친화직장교육 지원기업, 기관 수(개) (미달성)	
예산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28,730	28,730	28,730 (100.0)	68.6 (85.2)	양육비 이행률(%) (미달성)	
예산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87,713	87,713	87,439 (99.7)	100.0 (100.0)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율(%)(달성)	
						새일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달성)	
예산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	11,481	11,481	11,233 (97.8)	100.0 (100.0)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타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건수(건) (달성)	
예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및기념사업	1,045	1,045	923 (88.3)	50.2 (50.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상담 모니터링 1인당 평균 지원 건수(건)(달성)	
예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지원	1,002	1,002	934 (93.2)	38.7 (38.7)	AA 적용 사업장 여성고용률(%)(달성)	
기금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내역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4,932	4,932	4,932 (100.0)	48.7 (50.2)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천명)(달성)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자 만족도(점)(달성)	
기금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30,387	30,387	30,378 (99.9)	48.7 (49.1)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의 성별만족도(여성)(점)(달성)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의 성별만족도(남성)(점)(달성)	
기금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33,079	33,079	32,540 (98.4)	48.0 (48.8)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의 가정복귀 및 자립률(%)(달성)	
기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9,037	19,037	19,021 (99.9)	100.0 (100.0)	성매매피해자 취업 및 진학 실적(건)(달성)	
						성착취 피해청소년 지원 서비스 만족도(점)(달성)	
기금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3,167	43,167	42,701 (98.9)	(상담소 상담건수) 73.7 (73.7)	1366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달성)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대상 (수혜)	성과지표 (달성여부)	비고*
					(입소자 지원건수) 89.7 (89.7)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실적(천건) (미달성)	
					(유관기관 연계건수) 91.5 (91.5)		
기금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	8,123	8,123	8,071 (99.4)	100.0 (100.0)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점수)(달성)	
						폭력피해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 포함) 지원 실적(건수) (달성)	
기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52,833	552,833	552,825 (99.9)	(전체) 69.0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만족도(점) (달성)	
					(모자가족) 100.0 (100.0)		
					(부자가족) - (-)		
					(조손가족) - (-)		
기금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723	2,723	2,711 (99.6)	87.5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만족도(점) (달성)	
기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145,197	145,877	145,394 (99.6)	50.0 (50.0)	가족센터(건가센터 포함) 이용자수(천명)(달성)	
계	예산 24개사업 기금 9개사업	1,509,512	1,511,292	1,505,110 (99.6)		성과지표 평균달성률 86.4%	

자료: 성평등가족부

[참고자료] 8. 2022년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교부·정산·반납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피보조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A)	집행액	교부액	계획현액	집행액(B)	불용액	실집행률(B/A)	정산보고일	잔액반납일	잔액반납액
1	서울	34,001	34,001	34,001	34,001	30,501	3,500	89.7%	'23. 2. 9.	'23. 8.22.	3,500
2	부산	32,700	32,700	32,700	32,700	30,015	2,685	91.8%	'23. 1.30.	'23.12.26.	2,685
3	대구	22,920	22,920	22,920	22,920	20,996	1,924	91.6%	'23. 2. 6.	'23.12.27.	1,924
4	인천	33,452	33,452	33,452	33,452	31,850	1,602	95.2%	'23. 2. 3.	'23.12.27.	1,602
5	광주	19,024	19,024	19,024	19,024	18,000	1,024	94.6%	'23. 2. 7.	'23.12.28.	1,024
6	대전	15,268	15,268	15,268	15,268	14,178	1,090	92.9%	'23. 2. 1.	'23.12.22.	1,090
7	울산	10,160	10,160	10,160	10,160	9,642	518	94.9%	'23. 1.30.	'24. 1.22.	518
8	경기	91,872	91,872	91,872	91,872	86,370	5,502	94.0%	'23. 1.31.	'24. 2.27.	5,502
9	강원	14,872	14,872	14,872	14,872	13,919	953	93.6%	'23. 2.15.	'23.12.28.	953
10	충북	15,856	15,856	15,856	15,856	15,136	720	95.5%	'23. 2. 1.	'23.11. 8.	720
11	충남	18,144	18,144	18,144	18,144	17,441	703	96.1%	'23. 2.13.	'24. 6.17.	703
12	전북	23,664	23,664	23,664	23,664	22,306	1,358	94.3%	'23. 2.10.	'24.12.3.	1,358
13	전남	18,168	18,168	18,168	18,168	16,995	1,173	93.5%	'23. 2.17.	'24. 8. 5.	1,173
14	경북	25,518	25,518	25,518	25,518	24,008	1,510	94.1%	'23. 2.13.	'24. 1.12.	1,510
15	경남	35,142	35,142	35,142	35,142	33,708	1,434	95.9%	'23. 2. 6.	'24. 5. 8.	1,434
16	제주	8,352	8,352	8,352	8,352	7,796	556	93.3%	'23. 2. 8.	'23.12.11.	556
17	세종	2,092	2,092	2,092	2,092	1,991	101	95.2%	'23. 1.31.	'23. 9. 1.	101
	계	421,205	421,205	421,205	421,205	394,852	26,353	93.7%			26,353

자료: 성평등가족부

[참고자료] 9. 2023년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교부·정산·반납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피보조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A)	집행액	교부액	계획현액	집행액(B)	불용액	실집행률(B/A)	정산보고일	잔액반납일	잔액반납액
1	서울	37,949	34,024	34,024	34,024	30,393	3,631	80.1%	'24. 2.27.	'24. 8. 9.	3,631
2	부산	37,748	33,851	33,851	33,851	31,194	2,657	82.6%	'24. 2.23.	'24.12.11.	2,657
3	대구	26,404	23,754	23,754	23,754	21,995	1,759	83.3%	'24. 2.23.	'24.12.30.	1,759
4	인천	39,876	35,791	35,791	35,791	33,400	2,391	83.8%	'24. 2. 8.	'25. 1. 3.	1,921
5	광주	22,948	20,186	20,186	20,186	18,780	1,406	81.8%	'24. 2.22.	'24.12.26.	1,406
6	대전	17,684	15,906	15,906	15,906	14,773	1,133	83.5%	'24. 2. 8.	'24.12.16.	1,133
7	울산	12,232	10,998	10,998	10,998	10,436	562	85.3%	'24. 2.14.	'24.11. 8.	562
8	경기	108,160	97,373	97,373	97,373	92,152	5,221	85.2%	'24. 2. 8.	'24.12.18.	5,221
9	강원	17,440	15,680	15,680	15,680	14,566	1,114	83.5%	'24. 2. 6.	'25. 1. 3.	1,114
10	충북	19,040	17,126	17,126	17,126	16,160	966	84.9%	'24. 2. 8.	'24.12.19.	966
11	충남	21,968	19,761	19,761	19,761	18,652	1,109	84.9%	'24. 2.21.	'24.12.30.	651
12	전북	28,016	25,125	25,125	25,125	23,385	1,740	83.5%	'24. 2.29.	'25. 4.14.	873
13	전남	21,296	19,155	19,155	19,155	18,357	798	86.2%	'24. 3. 4.	-	-
14	경북	30,232	27,188	27,188	27,188	25,695	1,493	85.0%	'24. 2.15.	'25. 2. 7.	1,493
15	경남	42,592	38,304	38,304	38,304	36,162	2,142	84.9%	'24. 2. 7.	'25. 4.22.	2,122
16	제주	9,808	8,818	8,818	8,818	8,418	400	85.8%	'24. 2. 5.	'24. 7. 2.	400
17	세종	2,464	2,225	2,225	2,225	2,150	75	87.3%	'24. 2.26.	'24.10.14.	75
	계	495,857	445,265	445,265	445,265	416,668	28,597	84.0%			25,984

자료: 성평등가족부